발 간 등 록 번 호
71-7530000-000094-14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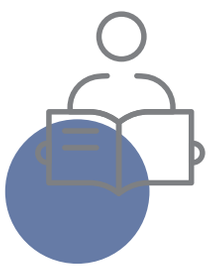

학원 업무 편람

2024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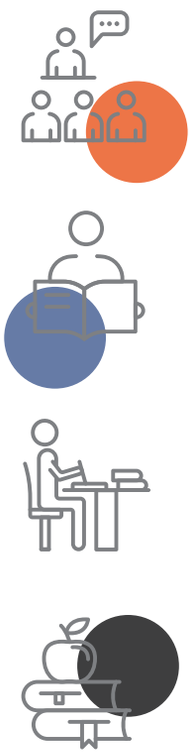

학원 업무 편람

2024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일러두기

□ 이 편람은 학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본 편람의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의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구체적 자료와 사례는 교육부의 「질의·회신 사례집」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학원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근거 법령 등은 항상 확인하고, 각 영역별 참고 자료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 1
학원 관계 법령 ····· 2
학원 등록 등 민원 처리기준 ····· 3

제1장 학원

1. 학원 설립·등록 ····· 7
가. 설립·등록 ····· 7
1) 학원의 정의 ····· 7
2) 학원의 종류 ····· 7
3) 학원 등록 처리 절차 ····· 8
가) 제출 서류 ····· 9
나)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 10
다) 건축물 용도 및 직통계단 ····· 11
라) 학원의 교습과정 ····· 17
마) 규모 및 일시수용 능력인원 ····· 19
바) 시설·설비 기준 ····· 22
사) 교육환경 유해업소 ····· 26
아) 소방시설 기준 ····· 31
자) 전기안전점검 확인 ····· 34
차) 학원의 명칭 ····· 36
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 38
가) 제출 서류 ····· 38
나) 등록 기준 ····· 38
다) 재학생 교습 제한 ····· 39
5) 원격교습학원 등록 ····· 40
가) 정의 및 등록기준 ····· 40
6)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 41
가) 신청 및 확인 서류(시행규칙 제5조) ····· 41
나) 심사 기준 ····· 41
다) 학원시설·설비 완성 보고 ····· 42
7)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및 이의신청 ····· 43
가)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 43

나) 이의 신청 ····· 44
8) 기타 학원 행정업무 ····· 45
가) 면허세 납부 ····· 45
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 45
다) 사업자등록 ····· 46
라) 통학차량 안전관리 ····· 47
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50
바) 집단 급식소 신고 ····· 51
나. 설립·등록 업무 실무 ····· 52
1) 실무 서식 ····· 52
2) 결격사유 및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 56
3) 출장복명 ····· 60
4) 설립·운영 등록 수리 ····· 63
5) 조건부 등록·수리 ····· 75
6) 보완 및 반려 ····· 78

2. 학원 변경 등록 ····· 81

가. 학원 변경 등록 ····· 81
1) 제출 서류 ····· 81
2) 학원의 위치 변경 ····· 82
가) 신청서 접수 (처리기간 7일) ····· 82
나) 소방시설 확인 의뢰 ····· 82
다) 현지 확인 ····· 82
라) 출장 보고 (출장복명서 작성) ····· 82
마) 변경 등록 검토서 작성 및 학원 등록 수리 ····· 82
바)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재교부 ····· 82
3) 학원의 교습과정 변경 (처리기간 7일) ····· 83
가) 신청서 접수 ····· 83
나) 학원 변경 등록 수리 ····· 83
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재교부 ····· 83
4)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처리기간 7일) ····· 83
가) 신청서 접수 ····· 83
나) 결격사유 조회 실시 ····· 83
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실시 ····· 83
라) 학원 설립 · 운영자 변경 수리 통보: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교부 ····· 83
5) 학원의 시설·설비 변경 (처리기간 7일) ····· 84
가) 신청서 접수 ····· 84
나) 현지 확인 ····· 84
다) 출장 보고 ····· 84

라) 학원 시설 변경 수리 통보 ····· 84
6) 학원의 명칭, 정원 및 일시수용인원, 교습과목, 법인 임원 변경(통보) ····· 84
가) 신청서 접수: 학원변경통보서,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첨부 ····· 84
나) 학원의 명칭, 정원 및 일시수용인원, 교습과목, 법인 임원 변경 통보
-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교부 ····· 84
나. 학원 변경 등록 실무 ····· 85
1) 학원의 위치 변경 ····· 85
2) 학원 교습과정 변경 ····· 91
3)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 94
4) 학원 시설 변경 ····· 98
5) 학원 명칭 변경 ····· 101

3. 학원 휴원·재개원·폐원 신고 ····· 104
가. 학원 휴원·재개원·폐원 신고 ····· 104
1) 제출 서류 ····· 104
2) 휴원 ····· 104
3) 재개원 ····· 104
4) 폐원 ····· 104
나. 학원 휴원·재개원·폐원 신고 실무 ····· 105
1) 휴원 신고 ····· 105
2) 재개원 신고 ····· 108
3) 폐원 신고 ····· 110

4. 학원 강사 ····· 114
가. 학원 강사 채용 및 해임 ····· 114
1) 제출 서류 ····· 114
2) 자격 기준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3] (2024.5.7. 개정) ····· 114
3) 외국인 강사 채용 통보 ····· 117
나.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실무 ····· 121
1) 채용 통보 ····· 121
2) 해임 통보 ····· 122

5. 교습비 등 ····· 123
가. 교습비 등 운영 규정 ····· 123
1) 교습비 등의 정의 ····· 123
2) 교습비 등 운영 규정 ····· 123
3) 교습비 등 반환 기준 ····· 125
4) 교습비 등 조정 절차 ····· 127

나. 교습비등조정위원회 ····· 128
1) 교습비등 조정 절차 ····· 128
2) 교습비 등 등록 신청 ····· 131
3) 교습비 등 조정 ····· 132

6. 학원 질의응답 ····· 141
가. 학원 설립·등록과 운영 ····· 141
나. 교습행위, 교습과정과 대상 ····· 155
다. 설립자와 강사의 자격 ····· 166
라. 학원 시설과 건축물 ····· 185
마. 유해업소 ····· 195
바. 학원의 명칭 ····· 196
사. 교습비 등 ····· 198

제2장 교습소

1. 교습소 설립 신고 ····· 209
가. 신고 수리 ····· 209
1) 교습소의 정의 ····· 209
2)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 절차 ····· 209
3) 신고 요건 ····· 210
가) 제출 서류 ····· 210
나) 교습소 설립·운영자 자격 ····· 210
다) 건축물 용도 및 교육환경 등의 정화 ····· 212
라) 교습과목, 교습시간, 시설 및 학습자의 수, 보험가입 ····· 212
마) 교습소의 명칭 ····· 213
나. 교습소 설립 신고 실무 ····· 214
1) 실무 서식 ····· 214
2) 출장복명 ····· 217
3) 교습소 신고·수리 ····· 220

2. 교습소 변경 신고 ····· 225
가. 교습소 변경 신고 종류별 절차 및 제출서류 ····· 225
1) 제출 서류 ····· 225
2) 교습자 변경 신고 절차 ····· 226
3) 교습소 위치 변경 절차 ····· 227

4) 교습소의 명칭 및 과목 변경 절차 ····· 227
5) 교습소 설립 운영(변경) 신고 통지 의무 ····· 227
나. 교습소 변경 실무 ····· 228
1) 교습자 변경 ····· 228
2) 교습소 위치 변경 ····· 231
3) 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목 변경 ····· 233

3. 교습소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 236
가. 교습소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236
1) 제출서류 ····· 236
2)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신고증명서 재발급 ····· 236
나. 교습소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실무 ····· 237
1) 휴소 ····· 237
2) 재개소 ····· 240
3) 폐소 ····· 243
4) 재발급 ····· 246

4.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신고 ····· 248
가. 임시교습자의 채용 ····· 248
나. 보조요원의 채용 ····· 248
다.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신고 실무 ····· 249
1) 임시교습자 채용 통보 ····· 249
2) 보조요원 채용·해임 통보 ····· 251

5. 교습소 질의응답 ····· 254
가. 교습소 설립 신고와 교습자 자격 ····· 254
나. 교습과목과 교습대상 ····· 260

제3장 개인과외교습자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269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269
1)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269
2) 신고 절차 ····· 269
3) 신고 요건 ····· 270
가) 제출서류 ····· 270

나) 개인과외교습자 자격 ····· 270
다) 교습가능 장소 ····· 271
라) 신고 제외 대상 ····· 272
마) 신고 사항 ····· 272
4)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272
가)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272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272
5) 신고 수리 의무 ····· 272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실무 ····· 273
1) 실무 서식 ····· 273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수리 ····· 274
3)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 280
4)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 283
5)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 284
6)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 286

2. 개인과외교습자 질의응답 ····· 287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 ····· 287
나. 교습 장소 ····· 296

제4장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 304
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304
1) 지도·점검 업무처리 절차 ····· 304
2) 행정처분 ····· 306
가)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 306
나) 청문에 의한 행정처분 ····· 309
다) 행정처분 기준 (교육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 ····· 315
라) 학원 등 불법 운영 사례 ····· 318
3) 과태료 ····· 327
가) 과태료 부과 절차 ····· 327
나) 과태료 부과 기준 ····· 330
다) 과태료 징수업무 흐름도 ····· 336
라) 재산압류 절차 흐름도 ····· 337
마) 체납처분 세부 흐름도 ····· 338

4) 고발 ····· 339
가) 무등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 339
나) 벌칙 ····· 340
다) 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 341
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무 ····· 342
1) 지도·점검 계획 ····· 342
2) 행정처분 ····· 350
가) 지도·점검 결과 보고 ····· 350
나) 행정처분 사전 통지 ····· 352
다) 청문에 의한 행정처분 ····· 362
3) 과태료 ····· 376
가) 과태료 부과 ····· 376
나) 재산압류 및 해제 ····· 389
4) 무등록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 399
5) 신고포상금위원회 구성 ····· 403

2. 지도·감독 질의응답 ····· 410

제5장 법령 해석 및 판례

1. 법제처 법령해석 ····· 417
2. 행정심판 사례 ····· 436
3. 법원판례 사례 ····· 456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구 분	학 원	교 습 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수	• 동시 10인 이상	• 동시 9인까지 (피아노는 5인)	• 동시 9인까지
건축물용도 (교습장소)	•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판매시설(예외적 허용) • (500㎡이상)교육연구시설	•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판매시설(예외적 허용) • (500㎡이상)교육연구시설	• 학습자의 주거지 (주택) • 교습자의 주거지 (주택) • 입주민교육시설
시설규모	• 조례 [별표1]에 따른 시설 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 없음
명칭사용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해당 없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9항
성범죄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조회 • 강사, 직원 : 설립·운영자	• 교습소신고자 :교육지원청 조회 • 보조요원: 교습자	• 개인과외신고자 : 교육지원청 조회
강사 채용 가능 여부	• 강사 채용 가능	• 강사 채용 불가 • 임시교습자(출산,질병 등) 및 보조요원 1명(교습불가) 채용 가능	• 강사 채용 불가
교습비등 표시, 게시, 고지	• 적용	• 적용	• 적용
일시수용 능력인원	• 강의실 1㎡당 1인 이하 • 열람실 1㎡당 0.8인 이하 • 실습실 1.5㎡당 1인 이하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 1㎡당 0.3인 이하 (9인 이하 / 피아노교습의 경우5인 이하)	• 9인 이하
교습비등 조정명령	• 적용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함)	• 적용	• 적용
교습비등 영수증발급	• 적용	• 적용	• 적용
교습시간 제한	• 적용 – 초·중·고 재학생 : 5시~22시 – 독서실은 해당 없음	• 적용 – 초·중·고 재학생 : 05시~22시	• 적용 – 초·중·고 재학생 : 05시~22시
교습과목 및 대상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 1인 1개소 1과목 (초·중·고, 시험준비생 지식·기술·예능교습)	• 여러 과목 (초·중·고, 시험준비생, 지식·기술·예능 교습)
교육 환경정화	• 적용 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함)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 해당 전용면적 190㎡ 이하 제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학원 관계 법령

법 규 명	학원관련 사항	비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법'), 시행령, 시행규칙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 시행규칙 (이하'교육규칙')	학원 기본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자정부법, 시행령	민원 처리 절차 행정정보공동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이의제기 과태료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기본법	처분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행정절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민법	건축물 용도 확인 임대차(전대차) 계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환경 유해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안전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단급식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전기안전점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광고물 화재보험가입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 강사 자격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어린이 통학버스 학원차량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등록(신고),변경 시 면허세 납부 과태료 부과, 체납, 징수 사업자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의 지정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수집・이용	

학원 등록 등 민원 처리기준

민원 처리기준표의 고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민원 사무명	법정처리기간	비 고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	8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7일	
학원 변경 등록 신청 (위치)	7일	
학원 휴원 신고	1일	
학원 폐원 신고	1일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 신청	7일	
학원시설·설비완성 보고	7일	
교습소 신고	8일	
교습소 변경 신고 (위치포함)	8일	
교습소 폐소 신고	1일	
교습소 휴소 신고	1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5일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5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1일	

민원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관한 법률 제19조)

구 분	처리기간 계산
5일 이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 계산 (1일 8근무시간), 공휴일, 토요일 산입 아니 함.
6일 이상	“일”단위 계산,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아니 함.
주·월·년	첫날 산입,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 준용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 · 경유 · 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 · 검사 · 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장

학원

1. 학원설립·등록
2. 학원 변경 등록
3. 학원 휴원·재개원·폐원 신고
4. 학원 강사
5. 교습비 등
6. 학원 질의응답

01 학원 설립·등록

가 설립·등록

1) 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됨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학원의 종류

구 분	유 형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등 조정	교육환경 정화	보험
학교교과 교습학원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학생(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적용	조정	적용	가입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외에 평생교육·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미적용	자율적	미적용	가입

Q&A

1.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함

2.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①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 (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②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③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④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초·중등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참조)

3) 학원 등록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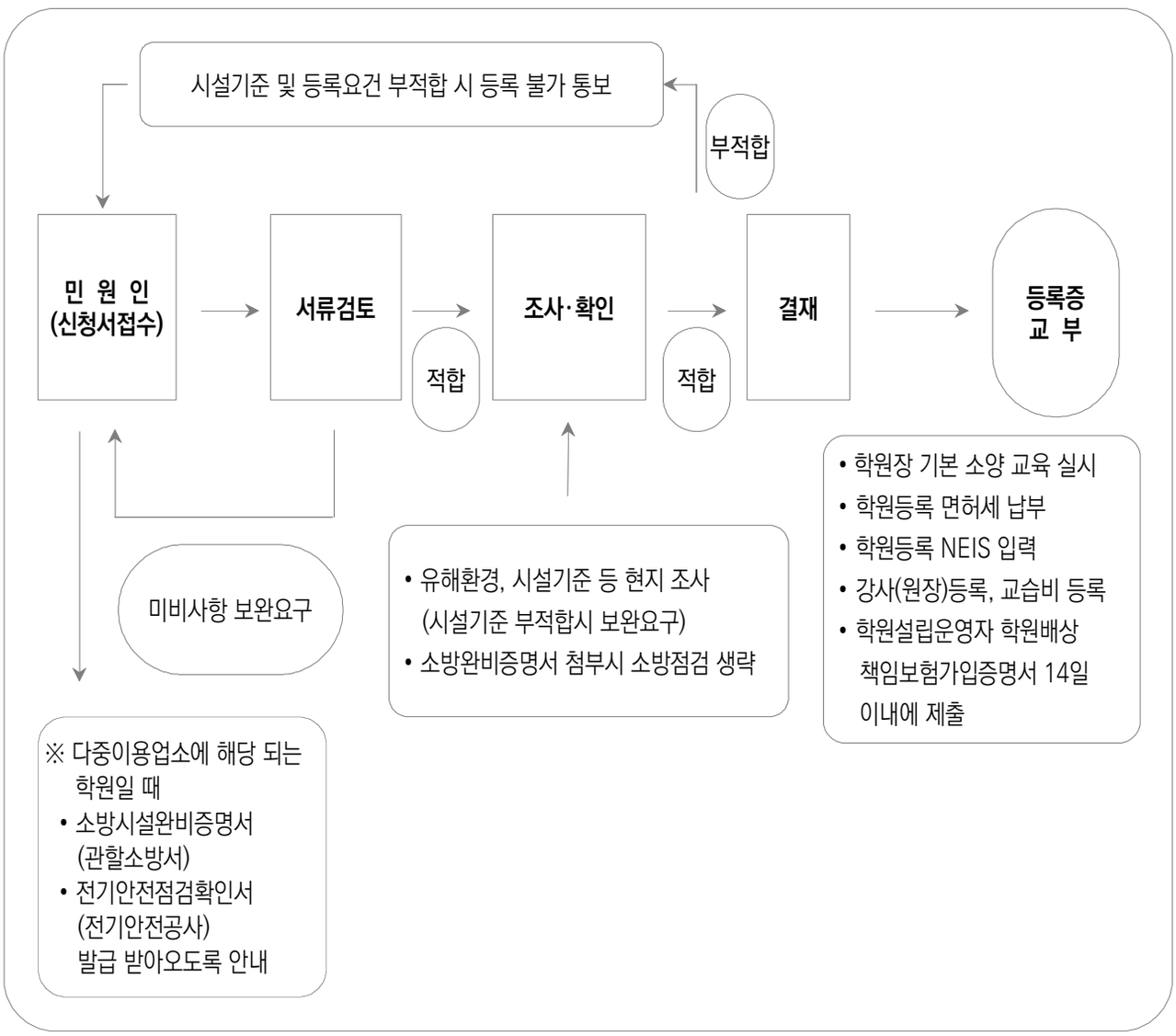

등록 요건

학원설립 운영자 자격	p.10	시설·설비 기준	p.22
건축물 용도 및 직통계단	p.11	교육환경 유해업소	p.26
학원의 교습과정	p.17	소방시설 기준	p.31
규모 및 일시수용 능력인원	p.19	학원의 명칭	p.36

가) 제출 서류

①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② 학원 원칙 1부
③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1부
④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동의서 1부, 본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지참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낙서 제출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의 동일인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기간과 학원 설립 신청서 작성일 비교 확인

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법인 임원 포함)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⑥ 정관 (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생-상법 제292조)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회의록 (×)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개인, 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여권사본 1부
-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해당할 경우에만) 1부
  (외국인투자최소금액 1억원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②))

▸ 설립·등록 후, 비자 발급 확인 (개인: 무역경영(D-9), 법인: 기업투자 (D-8))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외국인투자신고 최소금액 등
- 예외적으로 외국환 투자없이 외국인의 학원설립이 가능한 경우

※ 제출 생략 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① 학원의 건축물 (일반/집합) 대장 (표제부, 전유부) - 동의 없이 열람 가능
② 주민등록등 (초)본 (개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가능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정관목적사업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단, 민원인이 부동의 하는 경우 상기 서류 제출하여야 함)
④ 전기안전검사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나)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과 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학원 운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등록의 효력이 상실됨(학원법 제9조)

※ 학원법 제9조제1항의 결격사유 중 학원 등록의 효력 상실 예외 경우(학원법 제9조제2항)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 결격사유 조회

결 격 사 유 (학원법 제9조제1항)	확인 방법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결격사유 조회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NEIS 결격설립자 목록 확인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사, 감사) 중에 학원법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제6호의2(①~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 조회 & NEIS 결격설립자목록확인

⊙ 취업제한 제도

구 분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전력자
내 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음
제한기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등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등 ※ 개인과외교습자는 해당 없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전력) 조회 확인 방법

대상 / 절차·방법	학원 설립 · 운영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모두)
조 회 자	교육장	학원 설립 · 운영자
조회시기	설립·운영 등록 시	강사, 직원, 보조요원 채용 전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서 •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 학원 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조회방법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신청서 작성 후 해당시설(기관)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첨부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제출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이용가능 (https://crims.police.go.kr)
회신방법	관할 경찰서에서는'범죄경력(전력)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 ×) 만을 확인하여 회신함	

※ 개인과외교습자 - 아동학대 전력조회는 해당없음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본인이 경찰서에 신청 후 회신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수 있음)

다) 건축물 용도 및 직통계단

◎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4조, [별표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학원**(임대한 경우 임차인별로 산정)

※ 독서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 : 법제처 법령해석 19-0162(2019.5.20.)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2020.1.23.시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학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 판매시설에서의 학원 설립은 예외적 허용〔근거: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9(2020.1.10.),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9(2020.1.14.)호〕

• 교육연구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구분 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야 함

※ 교육연구시설 변경 예시 **(소유주(임차인)이 동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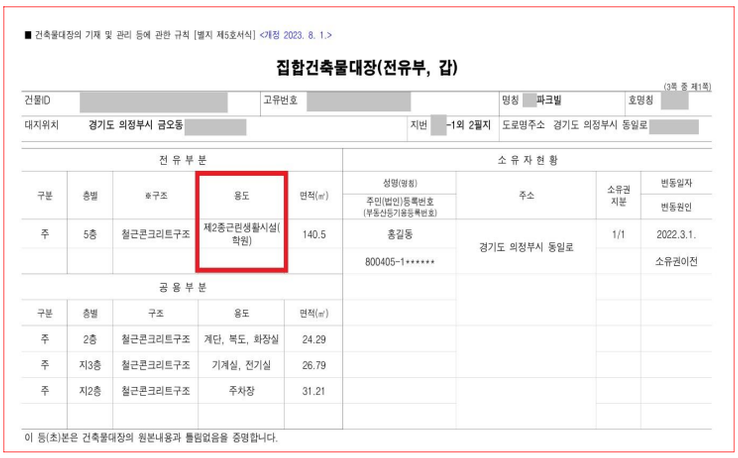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3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파크빌	호명칭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지번 -1외 2필지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전 유 부 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140.5

소 유 자 현 황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 변동원인
홍길동 800405-1******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1	2022.3.1. 소유권이전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 복도, 화장실	24.29
주	지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실, 전기실	26.79
주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31.21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

3층 : 학원예정지 바닥면적 200㎡
2층 : 보습학원 바닥면적 150㎡
1층 : 음악학원 바닥면적 200㎡

∴ 학원 바닥면적 합계 : 550㎡

따라서, 학원예정지의 건축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주로 신도시 등) 내에는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건물이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이 아니면 학원 설립이 불가할 수 있음 (시·군·구청 문의)

Q&A

1.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누가하는가?** 학원업무 담당자 (전자정부법에 의한 공부 조회)

2. **용도변경 신청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인도 가능, 임대차(전대차)계약서와 위임장 첨부)

3. **당해 건축물의 학원 바닥면적이 500㎡미만의 상태에서 학원 신설로 바닥면적이 500㎡이상이 될경우 용도변경 범위는?**
   기존 학원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4.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공용으로 쓰이는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비례 배분하여 합산함 (단, 주차장 면적은 제외)

◎ 학원 설립이 제한되는 용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하 "건축 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 제①항과 관련하여 도·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및 확인을 요함(아래 표는 참고)

〈 용도지역 분류에 따른 학원설립 가능 여부(참고) 〉

용도지역 / 건축물 용도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4층이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4층 이하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근린생활 시설(학원)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교육연구 시설(학원)	불가능	불가능	가능	기술계 학원만 가능	불가능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등 상기 내용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여 처리

◎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3층 이상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판매시설(예외적 허용) 중 **3층 이상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1]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설립 · 등록이 가능함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

※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 4호에 의거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해야 함

- 직통계단 요건
  1. 직통의 구조
  2. 피난층[2] 또는 지상까지 연결
  3. 보행거리 규정 30m 이내
  4.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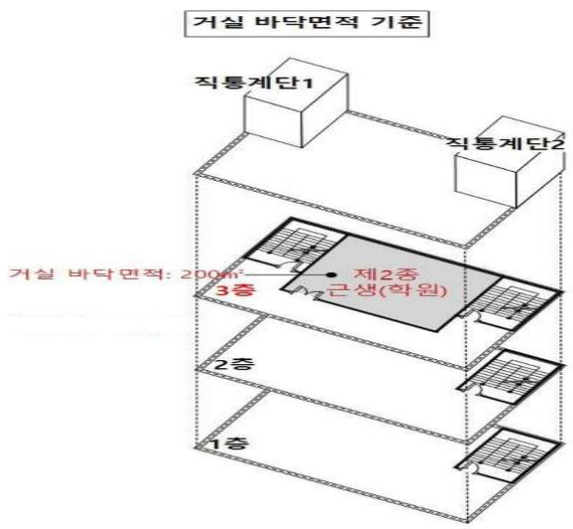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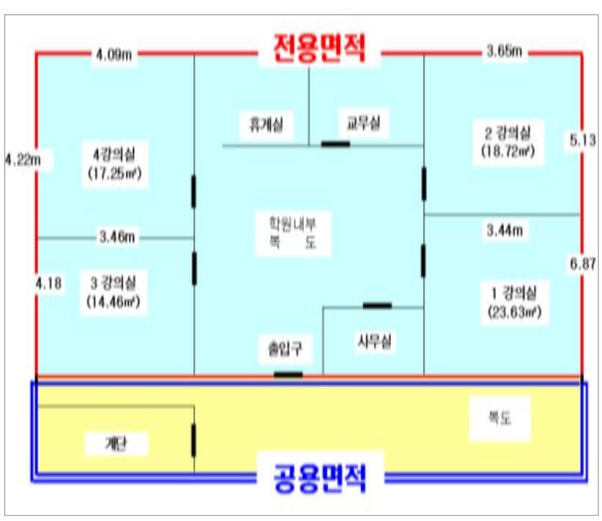

※ **전용면적**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 내부 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임

※ **공용면적**은 건물의 면적 중에서 입구, 현관, 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장,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불특정인 다중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말함

---

1) 건축법 제34조2항2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학원 ·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과 준초고층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옥상은 피난층이 아님)

예시

5층			
4층	**A학원 (120m²) [기존]**		**B학원 (130m²) [신규]**
3층			
2층			
1층			

※ A 학원은 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m² 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 (4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m² 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Q&A

1. 법 개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은?

2003.2.24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 법령에 의하여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부칙 (제17926호, 2003.2.24)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이 1개소라 하여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등록 가능 (단, 종전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용도변경 시 현행 법령 적용)

※ 상기 내용은 2003.3.24. 이전에 당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교육연구 시설 (학원)용도로 되어 있을 경우 부칙이 적용되므로, 시설군의 같은 군이라도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음식점)로 되어 있을 경우 적용이 안 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2. 엘리베이터나 완강기는 직통계단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음

3.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①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 중 어느 하나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어느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200㎡에 미달하더라도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 200㎡ 이상이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층으로써 동 규정에 나열된 것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200㎡ 이상인 것에 적용하는 것(질의 요지 중 ②의 경우)으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어야 적용하는 것은 아님 (국토교통부 건축기획팀-7152(2006.12 5.))

Q&A

4. 임차인 A가 B에게 임차물을 학원 (교습소)로 전대가 가능한지?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함.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민법 629조~632조)

임대(인) ➢ 임차(인)

전대(인) ➢ 전차(인)

임대차계약 조건	확인 사항	비 고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학원설립자의 가족이 건물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	
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이고 건물소유자가 1인인 경우	학원설립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 계약자로 서명	
학원설립자가 1인 이상이고 건물소유자가 2인인 경우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 계약자로 서명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 (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	

관련 규정

- 건 축 법 제2조(정의) / 제19조(용도변경)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4조(용도변경) /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라) 학원의 교습과정

◎ 학원의 교습과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2)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 · 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 · 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 · 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 · 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 ·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 자연	인문사회 · 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교습과정의 등록은 [별표2]에 의하여 등록하되, 해당 교습과정이 없을시 교습하고자 하는 내용과 가장 유사한 「별표2」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함
- 학원설립 · 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음 (단, 각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함)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등록

※ 대법원 판결(2015두 48655)에 따른 댄스스포츠(무도) 관련 학원설립 · 등록 업무처리 방안

①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려는 자가 학원법 제6조에 따라 학원 설립·등록 요건을 갖추어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용'교습과정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댄스'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평생교육과-7695 2018.7.27.)**

* 댄스스포츠: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국제표준무도로서 댄스스포츠로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왈츠, 탱고, 퀵스탭,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②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직업교육(취업)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댄스(댄스스포츠 포함) 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특수교육 교습과정 등록 시 유의 사항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07.5.25)되고 (구)「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특수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던 **'치료교육'을 특수학교 교육과정 ('08.2.고시)에서 제외**하고, 교육과정 외로 교육이 아닌 전문'치료사'가 치료 지원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참조)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가능하며, **"치료교육"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은 등록이 불가능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97(2010.2.3.))

간호조무사 학원 등록 시 유의사항(간호조무사학원 지정 평가제 실시)

① 「의료법」 제80조 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받아야함. 간호조무학원 개원 문의 시 관련 내용 및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확인토록 안내

② 관할 교육지원청은 간호조무사학원의 신규등록, 위치변경, 설립자(대표자)변경, 폐업 및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공문발송

Q&A

1. 학원에서 성인과 학생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할 때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 중 어느 종류의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 학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해서 별도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교습비등 조정명령, 심야교습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초·중·고교생을 성인과 함께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한다면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함 (단, 직업기술 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고등학생이 성인과 함께 수강하는 경우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마) 규모 및 일시수용 능력인원

◎ 학원의 규모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1)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와 같음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 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 비고 :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 강의실은?

1. 순수하게 강의에 제공되는 공간만을 의미함

   강의실 외의 공간 (사무실, 교무실, 원장실, 상담실, 복도 등)은 강의실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2. 복도와 분리되어야 함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강의실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로 이동 시에는 강의실 불인정

강의실 면적 계산

-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시행규칙 제7조)
  (강의실 내부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은 제외)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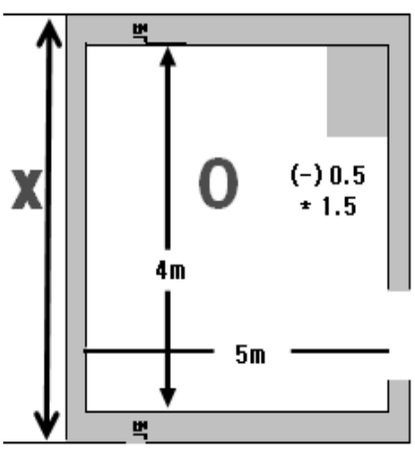

(4*5)-(0.5*1.5)=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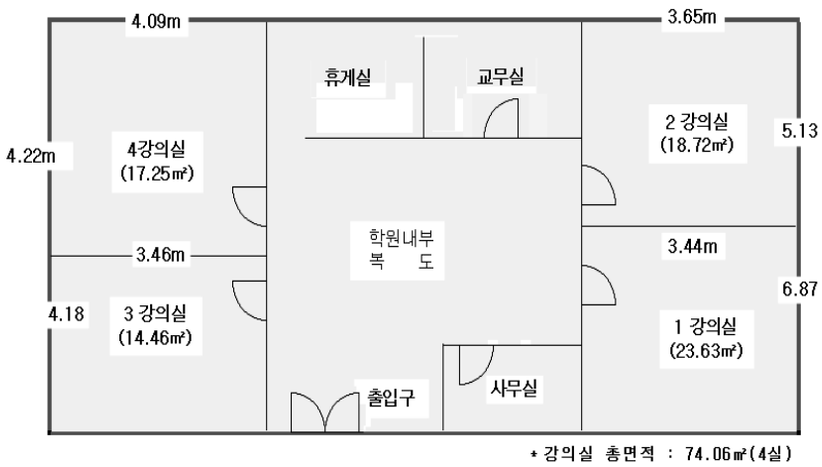

* 강의실 총면적 : 74.06㎡(4실)

※휴게실, 교무실, 사무실, 복도 등의 면적은 강의실의 총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면적 산출 포함

- 책상 높이의 고정 거치대가 있더라도 아래 공간에 수납 공간 등 항시 활용이 가능한 경우
- 고정되지 않아 이동이 가능한 가구 등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포함

• 면적 산출 제외

- 기둥·붙박이장·고정거치대 등 바닥에 고정되어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경우
- 학습자의 교습과 관련되지 않은 물품이 놓여져 있는 경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980(2020.7.7.)】

실험 실습실 면적 인정기준 처리방안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8479(2011.5.13.)】

- 음악학원(교습소)의 실습실 인정 기준

• **해석기준 상이** ※ 갑설, 을설, 병설로 분류함

- **갑설** : 개별실습실 칸막이 내 면적만을 실측하여 계산
- **을설** : 개별실습실 + 내부통로 + 로비홀 - 가상복도면적
- **병설** : 개별실습실 + 내부통로 + 로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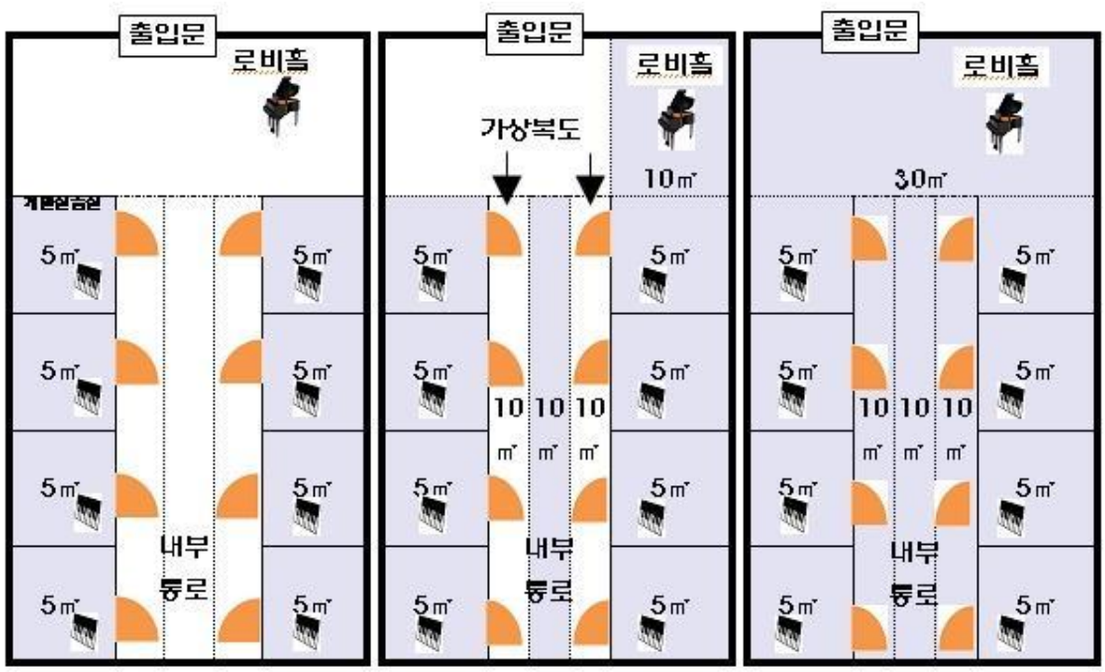

[갑설 : 40㎡] [을설 : 60㎡] [병설 : 100㎡]

• **실험·실습실 면적 기준 처리 : 위 병설로 처리**

- 실험·실습실의 면적기준에 한하여, 피아노 교습 등 교습과정의 특성상 소음 등의 문제로 학습자 상호간 방해가 되는 경우에 개별실습실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내부통로** 및 **소위 로비홀의 공간에서 공동 실습 및 이론수업을 할 시에는 실험·실습실 면적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내부통로 및 로비홀에 있어서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며, 이동 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가상의 이동공간을 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일시수용능력인원 (시행령 제10조, 조례 제3조, 제6조)

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에 교습하는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단위시설 수용기준

1. 강의실 : 1㎡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열람실 : 1㎡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실습실 면적 1.5㎡당 1명 이하로 함

※ 단,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바) 시설·설비 기준

학원시설 (조례 제2조)

구 분	학원시설 기준
학원 목적 실현에 필요한 시설 (필수시설)	① 강의실 또는 열람실 - 단,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③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④ 화장실·급수시설 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⑥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학습자 편의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임의시설)	① 강당·회의실·사무실 ② 학습자료실·도서실 ③ 상담실 ④ 컴퓨터실 ⑤ 방송·통신시설 ⑥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⑦ 체육시설, 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단위시설 (조례 제3조)

단위시설이란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층 최저 시설 기준을 말하며,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가능

구 분	단위시설 기준
강의실	- 면 적 : 30㎡이상~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 - 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 칸 막 이 :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열람실	- 면 적 : 60㎡이상 -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 칸 막 이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실험·실습실	- 면 적 : 45㎡이상 - 수용인원 : 1.5㎡당 1인이하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 칸 막 이 :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 :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화장실 : 조례[별표 8]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남·여 별도)
환기, 채광, 조명, 습도	조례[별표 9]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방음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학원설립 가능여부 판단: 학교교과교습학원/보습 기준 면적 60㎡ 이상[강의실 단위시설 30㎡이상]

상황 1) 층을 달리하는 경우

층수	강의실면적(㎡)	학원설립가능여부	강의실면적(㎡)	학원설립가능여부
3층	30	가능	25 (기준미달)	불가능
2층	45		28 (기준미달)	
1층	30		35	

상황 2) 동일 층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강의실면적 (㎡)				학원설립 가능여부	강의실면적(㎡)				학원설립 가능여부
40	계	단	30	가능	50	계	단	20 (기준미달)	불가능

상황 3) 동일 층에서 동일 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 (칸막이로 구분 설치)

※ 강의실의 총면적이 75.16㎡ 로 강의실의 시설규모 60㎡이상을 충족하므로 학원설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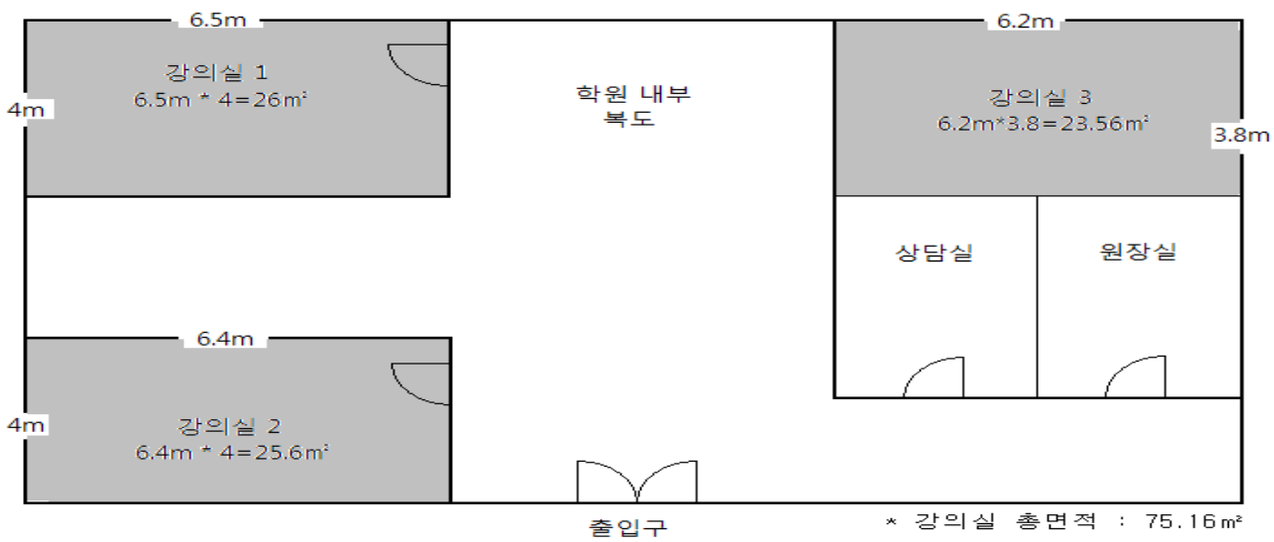

상황 4) 지하실의 경우 (조례 제4조 제4항)

※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Q&A

1.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강의실 면적이 기준 면적에서 1㎡정도가 부족한 59㎡일 때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강의실 기준 면적을 확보해야만 학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면적이 부족할 경우 학원 설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2. 보습과정과 원어민을 채용하는 외국어 학원을 한 개의 학원으로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면적은 얼마인가?

한 개의 학원에서 두 개의 교습과정을 교습할 경우 각각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보습·외국어 교습을 위한 종합학원을 설립할 경우, 보습에 해당하는 강의실 60㎡와 어학원에 해당하는 강의실 90㎡를 각각 갖추어야 하므로 총 150㎡의 강의실 면적이 필요함

3. 지하실에서 학원설립이 가능한지?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급수시설 및 화장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4. 학원의 강의실, 실습실, 사무실 등은 반드시 동일건물에 있어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원의 시설(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등)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다른 층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의 단위시설기준에 따른다[강의실(30㎡), 열람실(60㎡), 실험·실습실(45㎡)에 한함].

※ 단,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은 그 실험실 또는 실습지(장)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장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규칙 제2조제2항)

환기, 채광, 조명, 습도

①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②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 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조례 제4조 제3항 별표 2)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1. 기계 (1-1. 기계공작, 정비)	가. 설계실 : 60㎡ 이상 나. 실습공장 : 60㎡ 이상 다. 설비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1. 기계 (1-2. 기계제도, 설계)	가.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CAD시스템(PC, 프로그램) 10조 이상 2)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1 기계공작 정비는 동일 교습과정으로 별도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불필요

※ 1-1 기계공작 정비와 1-2 기계제도 설계 동시 운영 시는 각각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확보

사) 교육환경 유해업소

◎ 유해업소 제한(학원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연면적1,650㎡ 미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됨
- 연면적1,650㎡ 이상: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이 들어설 수 있음

☞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유해업소와 학원의 설립가능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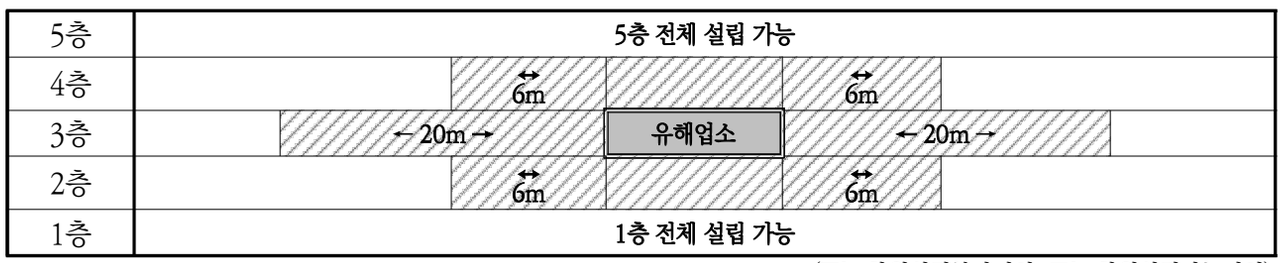

(▨는 학원설립불가지역, □는 학원설립가능지역)

-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설립·등록 할 수 없음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간에 중복될 경우 : 유해업소 적용 받음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2024.2.6.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 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 · 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021. 9. 24.〉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3. 4. 18.〉

Q&A

1. 당구장, 만화방, PC방은 유해업소에 해당되나?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인터넷 PC방)는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성인용 게임방은 유해업소에 해당함

※ 게임제공업: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2. 치킨이랑 호프를 파는 호프집 또는 휴게음식점(다방 등)은 유해업소에 해당되나?

일반음식점(음식, 한정식, 호프집 등)이나 휴게음식점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유해시설 종류 예시

조항	교육환경 유해시설의 종류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	가축분뇨배출 / 처리 / 공공처리시설
제4호	분뇨처리시설
제5호	악취배출시설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제8호	가축사체 / 오염물건 /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제9호	회장시설 / 봉안시설
제10호	도축업시설
제11호	가축시장
제12호	제한상영관
제13호	전화방 / 화상대화 / 성기구취급업소 / 키스방 / 대딸방 / 전립선마사지 / 유리방 / 성인PC방 / 휴게텔 / 인형체험방
제14호	고압가스 /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 저장소
제17호	(감염병) 격리소 / 요양소 / 진료소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제19호	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제21호	무도학원 / 무도장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 경주장, 장외매장
제23호	사행행위영업
제24호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ex. DVD방) / 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
제26호	단란주점 / 유흥주점
제27호	숙박업 / 호텔업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취급시설

아) 소방시설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처리방안</th></tr>
<tr><td colspan="2">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
당해건물이 11층 (지하층 제외)에 해당될 경우 (방염)</td><td rowspan="2">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민원인이 관할소방서에서
발급받아 교육지원청에 제출</td></tr>
<tr><td rowspan="2">학원면적 190㎡이상 ~
570㎡미만
(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및
다중이용업소 현황에 따라
달라짐)</td><td>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거나 동일건물에 운영권자가 다른 학원이 있을 경우 각각의 학원면적을 합하여 570㎡이상이 되는 경우</td></tr>
<tr><td>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미해당 되거나 동일건물에 운영권자가 다른 학원이 있을 경우 각각의 학원 면적을 합하여 570㎡미만이 되는 경우</td><td rowspan="2">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td></tr>
<tr><td colspan="2">학원면적 190㎡미만, 독서실면적 900㎡ 미만</td></tr>
</table>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참고]

각 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인 600㎡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table>
<tr><th>관 련 법</th><th>업 종</th><th>면 적 제 한</th><th>비 고</th></tr>
<tr><td rowspan="2">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td><td rowspan="2">학 원
(독서실포함)</td><td>수용인원
300인 이상</td><td>※ 수용인원 산정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별표 7”참조</td></tr>
<tr><td>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3. 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있는 학원</td><td>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td></tr>
<tr><td>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td><td>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td><td>지상 100㎡이상
(지하 66㎡이상)</td><td>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직접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것은 제외함</td></tr>
<tr><td colspan="3">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td></tr>
<tr><td>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9호</td><td>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운영업</td><td>지상 100㎡이상
(지하 66㎡이상)</td><td>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직접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것은 제외함</td></tr>
<tr><td>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16호 가목 나목 및 라목</td><td colspan="3">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td></tr>
<tr><td rowspan="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td><td rowspan="2">목욕장업</td><td>수용인원 100인 이상</td><td>같은 법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의 목욕장 중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영업장(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td></tr>
<tr><td colspan="2">같은 법 제2조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td></tr>
<tr><td>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td><td colspan="2">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td><td>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는 제외함)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는 제외함</td></tr>
<tr><td>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td><td colspan="3">노래연습장업</td></tr>
<tr><td>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td><td colspan="3">산후조리업</td></tr>
<tr><td>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td><td colspan="3">권총사격장
(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td></tr>
<tr><td>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호</td><td colspan="3">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td></tr>
<tr><td>의료법 제82조 제4항</td><td colspan="3">안마시술소</td></tr>
<tr><td>화재안전등급이 시행령 11조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td><td colspan="3">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td></tr>
</table>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예시

①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학원이 있는 경우 A학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3층	A (학원) (198㎡)	B (학원) (120㎡)	C(학원) (175㎡)
2층	D (학원) (250㎡)		E (학원) (243㎡)
1층	소매점	사무실	서점

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3층 영업장 면적만 합산 (A+B+C)

⇒ 198㎡+120㎡+175㎡ = 493㎡

☆ 수용인원 300인 (570㎡) 미만으로 제외

나. 층별 방화구획이 안 된 경우

○ 3층 전체 영업장 면적과 2층 학원면적 (D+E) 합산

⇒ 493㎡ + (250㎡+243㎡) = 986㎡

※ A(학원), D(학원), E(학원) 다중이용업소 해당됨

☆ 수용인원 300인 (570㎡)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 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문의

②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B학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3층	A (학원) (230㎡)	B (학원) (210㎡)	
2층	C (PC방) (440㎡)		
1층	소매점	약국	사무실

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3층 영업장 면적만 합산 (A+B)

⇒ 230㎡+210㎡ = 440㎡

☆ 수용인원이 300인 (570㎡) 이하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안 됨

나. 층별 방화구획이 안 된 경우

○ 3층 전체 영업장 면적과 2층 영업장 (다중이용업소) 면적을 합산

⇒ 수용인원 300인 (570㎡) 이상으로 B학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 A(학원), B(학원), C(PC방) 모두 다중이용업소 해당됨

☆ 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문의

③ 방화구획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기존학원 (140㎡)	신규학원 (220㎡)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셔터) 설치	방화문(셔터) 설치	방화문 (셔터) 설치
	엘리베이터	

☆ 위 예시와 같이 신규학원 (220㎡)의 경우 층별, 영업장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학원 및 일반음식점과 면적 합산이 되지 않으며, 신규학원의 영업장 면적이 570㎡미만으로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문의

관련 규정

- 법 제8조 (시설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자) 전기안전점검 확인

학원·독서실의 시설을 운영하려 하거나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시설의 등록신청(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시행령 7조)

대상 시설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570㎡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접수(학원에서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해당 지사)에 신청
- 신청시 구비 서류
  -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전기설비 단선 결선도 1부

※ 점검 범위 :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로 한다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제4조)

-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https://safety.kesco.or.kr)
  - [민원신청] - [전기안전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점검결과	점검전기설비		
	점검 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정	적합	

기타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점검신청인 귀하

210㎜×297㎜[백상지(80g/㎡)]

차) 학원의 명칭

① 고유명칭 + 학원 (독서실)

②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

※ 유치원 유사명칭 사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069, 2016. 10. 19.)

구분	유치원		학원	
	외국어	한글식 표기	외국어	한글식표기
한자	幼稚園	유치원	學院	학원
영어	kindergarten(Am)	킨더가튼	educational institute	에듀케이셔널 인스티튜트
	preschool(Brit)	프리스쿨		
	nursery school	널서리스쿨		
	kids school	키즈스쿨		
독일어	kinderschule	킨더슐레	konservatorium	콘서바토리움
프랑스어	'ecole maternelle	에콜 마테흐넬	institut	인스티튜
중국어	幼稚園	유치유안	学院	세이유안
일본어	ようちえん	요우치엔	がく-いん	가꾸잉

※ 유치원의 '외국어'및'한글식 표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음.

③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④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⑤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예시) 깊은생각학원, 고려학원, 한샘학원 등은 사용 불가

⑥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 예시) study학원, Academy학원 등은 사용 불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문서 작성의 방법)

문서는「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⑦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영어 대문자 이니셜 (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 (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 이앤비(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 외국어학원)
- **영어를 한글로 풀어서 사용** :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 리더스 (leaders) 보습학원 등 〉〉 leaders 보습학원은 등록 불가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 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 (21C학원)

⑧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 “상표”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관련 규정

-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교육규칙 제3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가) 제출 서류

① 학원운영계획서 1부
② 학원의 시설평면도 및 시설 배치도 1부
③ 시설·설비계획서
④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⑥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 (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⑦ 기타 학원설립의 가능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⑧ 담당공무원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⑨ 주민등록초본 (개인)
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⑪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나) 등록 기준

숙박시설

① 위치 : 강의실과 같은 건물 또는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미터 이내의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함
②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함
③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보건·위생적으로 적합하여야 함
④ 방음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함
⑤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함
⑥ 화장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함
⑦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함
⑧ 생활지도 담당인력 : 1명 이상 배치
※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급식시설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

다) 재학생 교습 제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Q&A

1.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등록할 경우 강의실동이 아닌 300미터 이내의 기숙사동의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원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의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있으므로, "숙박시설인 기숙사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에 확인

2. 소유주가 동일한 건물에서 1층은 급식소, 2층은 기숙사, 3층은 강의실로 되어있는 경우 학원의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학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학원 관련 법령 등의 운영이나 해석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기숙사가 학원법에 따른 학원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학원에 해당함

관련 규정

• 법 제6조 제2항 (학원설립 운영의 등록)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 · 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 · 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 조례 제5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5) 원격교습학원 등록

가) 정의 및 등록기준

①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의미함.
(학원법 제2조)

②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조례 제5조의2)

③ 원격교습학원은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학원법 제24조)

④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 원격교습학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14.10.14.자 개정을 통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 '학원'에서 '원격교습학원'은 제외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다고 해석함

⑤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학원 설립 등록 제출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9페이지 설립등록 제출서류 참고)

- 서버사용 확인서(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이용대금 납입증명서, 영수증 등)
  ※ 운영자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 명시
  ※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컴퓨터 1대 이상 구비
-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 콘텐츠 임대 계약서 1부(원본 지참) - 콘텐츠 임대시
- 촬영기자재(카메라 등) - 직접 촬영한 콘텐츠로 원격 교습 하는 경우

⑥ 교습과정 등록: 교습과정 전체 등록

6)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가) 신청 및 확인 서류(시행규칙 제5조)

1. 신청 서류
①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 신청서
• 첨부 서류
-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② 시설·설비계획서

2. 확인 서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심사 기준

-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음
-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자세한 시설·설비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심사기준 참조

Q&A

1. 학원설립 예정 건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혹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닐 경우 용도 변경을 전제로 조건부 등록이 가능한지?

학원설립 예정 건물의 용도와 학원 시설·설비 요건은 별개인 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물 용도는 조건부 등록 대상이 아님

다) 학원시설·설비 완성 보고

• 학원 설립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시설·설비 완성보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학원시설 · 설비완성보고서 1부
- 학원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확인: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 심사기준
- 조건부 등록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다음 사항이 적합하여야 함
  ► 장소 요건, 건물 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 시설·설비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관련 규정

• 법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조 (학원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 · 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 설립 · 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 · 확인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5조 (조건부 설립)

7)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및 이의신청

가)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학원의 설립·운영 신청에 따른 민원서류 검토결과 또는 현지 조사확인 결과, 시설·설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민원서류를 반려하여야 함

• 민원서류의 보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
- 보완 요구는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요구
- 보완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 민원인의 보완 요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되,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제한
- 행정기간의 보완 요구기간 및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기간 내에 보완 미이행 시 다시 보완을 요청하되, 기간은 10일로 함

• 민원처리기간의 연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 할 수 있음

  ※ 연장 시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을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 민원서류의 반려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 민원의 종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 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등

관련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 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나) 이의 신청

행정심판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 재결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단,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행정소송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판 (관할지방법원) ➜ 항소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관련 규정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8) 기타 학원 행정업무

가) 면허세 납부

-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세납부 여부를 확인 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함

※ 학원 및 교습소의 면허 종별 내용 및 적용 세율

종 별		건축물 연면적 기준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그 밖의 시 (동)	군 (읍·면)
학원	1종 34호	1,000㎡ 이상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34호	500㎡이상 ~ 1,000㎡미만	54,000원	34,000원	18,000원
	3종 35호	300㎡이상 ~ 500㎡미만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 34호	300㎡미만	27,000원	15,000원	9,000원
교습소 (5종 12호)		교습소	18,000원	7,500원	4,500원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34조 (세율) /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 /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험사나 공제회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이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 시기

유 형	수강생당 배상금액	수강생당 의료실비	1사고당 배상금액	가입범위	가 입 시 기	가 입 처
학 원	1억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학원 내외에서 운영자 등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포함	1.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 개시일 이전	일반보험 회사, 학원안전 공제회

관련 규정

• 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

③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 ·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조례 제12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교육규칙 제13조 (보험 등의 가입)

다)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구비서류 (개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 (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법인 및 외국인일 경우는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안내를 참고할 것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라) 통학차량 안전관리

◎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의거 학원 및 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분		관계법령	법령 내용
대상시설		「도로교통법」 제2조23호	▸ **학원 및 교습소**
통학버스 신고 (경찰청)	차량신고 기관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제2항	▸ 학원 및 교습소 교습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신고가능 차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	▸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인으로 봄)
	신고요건	「도로교통법」 제52조3항, 같은 법 시행령 31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 및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9인승 이상의 자동차(제2조32호), 황색도색·보호표지·정지표시장치(제19조), 좌석안전띠(제27조), 승강구(제29조), 표시등(제48조), 광각실외후사경(제50조), 후방카메라 등(제53조의2)
	미신고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7호	▸ 미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과태료에서 제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	▸ 직접(공동소유포함)소유 9인승 이상의 자동차 ▸ 학원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운행 가능
			▸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9년 ▸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 연장가능: 최장 11년 ▸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
통학 목적 전세버스 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학원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해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 가능
안전의무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3조	▸ 보호자 탑승 의무(교육시설의 종사자 등)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 의무 적용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 미탑승 시 3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154조제3의2호) ['20.11.27.시행]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및 제출 의무화['20.11.27.시행]** **안전운행기록(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확인 기록)을 작성·보관, 매 분기 교육장에게 제출** **※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160조제2항제4의2호)**
		「교통안전법」 제55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구분		관계법령	법령 내용
		「도로교통법」 제53조의4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 시 정보제공*의무화['20.5.26.시행] *경찰서장→교육 감독기관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 정보 홈페이지 게재['20.5.26.시행] (경찰서장 및 교육감독기관의 장)
안전의무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호~4호	▸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 ▸ 출발·도착 시 안전한 승·하차 확인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160조제2항제4의2호)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호	▸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 시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 미작동 운전자 3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단,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제154조3의4호) ['20.11.27.시행]
		「도로교통법」 제53조제6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동승 운행 시 "보호자 동승 표지" 부착 할 수 있음['20.5.26.시행] ※ 거짓 부착 시 3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4조3의5호)
		「도로교통법」 제154조3의3호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 미확인 운전자 30만원 이하 벌금 부과['20.11.27.시행]
		「도로교통법」 제53조의5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 의무 ※ 학원은 15인승 이하일 경우 '17. 1. 29.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 교습소는 '22. 11. 27.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규교육은 운영·운전 전, 정기교육은 2년 이내)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 교육 이수자 교육확인증 발급, 시설·자동차 내 비치 ※ 미이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http://schoolbus.ssif.or.kr) 학원, 차량, 교육, 보험 등 정보 입력 및 수시 변경

◎ 학원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학원법 제17조제1항제11호, 2항7호, 경기도학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도로교통법 제53조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동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등록말소 / 폐지**

*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2023.4.18.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과태료 부과 기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시·도경찰청장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시·도경찰청장
	▸ 안전운행기록 미제출(법 제53조제7항)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시·도경찰청장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
일반 운전자	▸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교통안전법(2024.1.23.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만원)			과태료 부과 기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통학버스 운영자	▸ 운행기록장치 미장착(법 제55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 어린이 통학버스 유상운송 허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103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자가용자동차"라 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불가, 다만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으로 허가 받은 경우는 운행 가능

→ 관할 시·군·구청에 유상운송 허가 신청(경찰서에 신청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별도로 신청)

①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 않는 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로서(실질적으로 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 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

② 차량 신규 등록은 차령 6년 이내, 기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 차령 9년 이하(안전요건 충족 시 최대 11년)

⊙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신고시 승인(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경유차량은 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 단,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운행된 경유차는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운행 가능하며,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경유차의 신규사용만 제한

※ 주요사례 등은 평생교육과-456 (2024.1.9.) 「2024년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임시허용 사항 등 안내(학원,교습소)」 공문 참고

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위반 시 처분사항 - 소득세법 제81조의9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함)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교육학원, 컴퓨터 학원 등
그 밖의 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바) 집단 급식소 신고

-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대상인원 50인 이상)을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급식시설은 학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학원 외 시설로 관리되어야 함

-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집단 급식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하며, 1회에 50명 이상이란 시간을 달리하더라도 급식 대상인원이 50명 이상임을 의미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제95조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나 설립·등록 업무 실무

1) 실무 서식

- 상담체크리스트 (☞ P.53 참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P.54 참조)
- 위임장 (☞ P.55 참조)
- 결격사유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기안(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P.56 참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의뢰 기안 (☞ P.57 참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P.58 참조)
- 소방시설 안전점검 의뢰 기안 (☞ P.59 참조)
- 현지조사 출장복명 기안 (☞ P.60 참조)
- 현지조사서 (☞ P.61 참조)
- 시설 및 설비 조서 (☞ P.62 참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수리 기안 (☞ P.63 참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검토서 (☞ P.64 참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 P.65 참조)
- 학원 원칙, 독서실 원칙 (☞ P.66, 72 참조)
-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 P.68 참조)
- 수강생 대상, 직원명부 (☞ P.69 참조)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P.70, 71 참조)
- 학원 면허부여 통보 기안 (☞ P.73 참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수리 알림 기안 (☞ P.74 참조)
-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서 (☞ P.75 참조)
-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수리 기안 (☞ P.76 참조)
-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수리 알림 기안 (☞ P.77 참조)
- 신청서류 보완요구 기안 (☞ P.78 참조)
-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알림 기안 (☞ P.79 참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반려 기안 (☞ P.80 참조)

학원설립·등록 상담 체크☑리스트

○○교육지원청 담당자(상담자) :_____(서명)

구 분	내 용	확인	비고
1.학원종류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2.설립자자격	▶ 결격사유 해당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공무원이나 미성년자는 학원 설립할 수 없음 ※ 학원의 직권폐원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음		
3.건물요건	▶ 건축물 주소 :　(*지하층 학원 설립 불가(예외적 허용), 산업기술단지 내 설립 불가)		
	▶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의'용도'부분을 통해 확인) - 현재 용도 : - 적합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예외적 허용)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이 차지하는 바닥면적(공용부분 포함)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해당사항 없는가? **- 건축물대장 공용부분 또는 해당 전유부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설립 불가(집합건축물) / 일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표시되어 있을 경우 설립 불가** **- 공유면적 불법전유 사용 시 설립 불가**		
	▶ 유해업소가 없는가? (성인대상 학원 제외) ※별첨 '안내문' 참조 **- 기재사항:** **- 건물의 연면적 1,650㎡ 미만인 경우: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설립 불가** **- 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인 경우: 유해업소 저촉 여부 확인(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학원설립 등록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조사. 확인 시 유해업소 저촉이 되면 학원설립 등록 수리 불가		
	▶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독서실포함) 등 건축법 제34조2항2호(14p. 참조) 해당용도의 전용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합니다.(승강기 제외)**		
	▶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합니다.** **(폐원, 위치변경 처리완료 후 설립 가능)**		
4.임대계약	-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여야 함.		
5.학원시설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 기재사항 :** **- 보습 : 60㎡, 외국어 : 90㎡, 음악·미술·무용 : 60㎡, 독서실 : 90㎡ 이상** * 강의실면적에 사무실·복도등은 해당이 안되며, 최종 내부 실측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안됨, ***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기준 면적 확보** *** 강의실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는 구조 인정 불가**		
	▶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 **- 기재사항 :**		
	▶ 소방법을 충족하는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관할소방서에 문의 (○○소방서 : 031)○○○-○○○○)		
	▶ 건전기안전점검확인 대상 학원 여부 확인		
6.학원명칭	▶ 적합한 학원명칭 확인 *** [고유명사 + 학원]. 중복명칭·금지어 확인, 한글 원칙(영문 병행 표기 가능)**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 "상표"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안내**		
7.기타안내	▶ 구비서류 안내 및 설립 안내문 수령 여부		
	▶ 홈페이지 안내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마당 -〉 학원/평생교육시설		

상담일시 :　　년　　월　　일　　시　~　분

【위와 같이 학원 설립.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안내 받았음 】 민 원 인 :_____(서명) ☎_____

※ 위 상담내용은 상담 받은 날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추후 발생될 건물상의 변동(학원, 교습소 설립 및 폐원, 유해시설 설치)에 의해 상담된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8.〉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민원사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 결격사유 및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

---

1. 관련:민원-1000(20○○.○.○.)호

2. 학원의 설립·운영 등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이 름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비고
1	홍길동	800101-1000000	00도 00시 00로 00	운영자 변경

나.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학원 설립·운영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파산선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수형사실
		○	○	○	○

끝.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20○○.○.○.) 접수 ( )

우 경기도 00시 00로 00 / http://www.000.go.kr

전 화 /팩스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경기) 설립·운영 예정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라. 민원-1000(20○○. ○. ○.)호
2.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원 설립·운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학원 설립·운영 예정자 현황

학원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고
경기학원	홍길동	800101-1******	010-1234-5678	신규등록

붙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20○○.○.○.) 접수 ( )

우 경기도 00시 00로 00

전 화 /팩스 / http://www.000.go.kr / 비공개(6)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 등으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소방서장 (예방과장/현장지휘과장)
제 목 학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협조 요청 (○○학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자로 접수된 학원설립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의뢰하오니,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리기일 내에 수리하여야 하는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20○○.○.○.까지 안전점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면적
○○학원	홍길동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010-1234-5678	○○㎡

붙임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평면도 각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6)

3) 출장복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개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주무관		

(가칭)○○학원 현지조사 출장 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학원 설립 등록 신청이 접수(민원서류 제○○호(20○○.○.○.))되어 현지를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합니다.

1. 출장목적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2. 출장일자 : 20○○.○.○.
3. 출 장 자 : 주무관 ○○○, 주무관 ○○○
4. 출 장 지
   가. 학원명 : (가칭) ○○학원
   나. 설립자 : 홍길동
   다.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5. 조사내용
   가. 교육환경의 정화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적합
   나. 시설기준 (학원법 제8조, 경기도 조례 제2조) : 적합
   다.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 적합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라. 시설 및 설비 : 적합 (붙임 2 참조)
6. 출장자 의견 : 민원인이 제출한 구비서류에 의하여 현지조사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관련 법규에 적합함

붙임 1. 현지조사서 1부.
2. 시설 및 설비조서 1부.
3. 평면도 1부. 끝.

[붙임 1]

현 지 조 사 서(예시)

민원인 **홍길동**의 **○○학원** 신규 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일자 : 20○○.○.○.

2. 조사장소 :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3. 조사내용 :

가.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없음

※【참고사항】 각 층별 현황

구 분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현 황	기계실	약국	병원	임대 중	**본 학원**	임대 중

나. 시설 및 설비 : 적합

구 분	기 준	현 황	결과	비고
강 의 실	강 의 실 : 60㎡이상	강 의 실 : 70㎡(3실)	적합	
설비 및 교 구	■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1㎡당 1인 ■ 소방시설 ■ 화장실 남,여 구분 유무 및 급수시설(상수도),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일시수용인원 : 70명 ■ 소방시설 : 소화기 2대, 유도등 2개, 화재감지기 4개 ■ 화장실 : 남1개소(소변기2 ,좌변기1) 여1개소(좌변기2) 급수시설(상수도),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시설 및 설비 완비됨	적합	
기 타	■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시설 등 완비됨	적합	

4. 조사자 의견 : 위 학원설립·등록 신청장소는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없고, 화장실, 급수시설, 환기·채광, 조도, 실내온도 및 습도, 방음시설 등 시설·설비가 완비되었으니 소방시설 안전에 대해 소방서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후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 사 자 : 직 주무관 성명 : ○ ○ ○ (서명)

직 주무관 성명 : ○ ○ ○ (서명)

[붙임 2]

시설 및 설비 조서

○○학원

1. 시 설

시설명	기준	현보유		적합여부
		실수	면적(㎡)	
강 의 실	60㎡			적합
사 무 실				
기 타				
합 계	60㎡			

2. 설 비

구 분	기 준	현보유 및 상태
화장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 8】	적합
급 수	상수도사용의 경우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규정	정수기 ○대
냉·난방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제5호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채 광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 9】	적합
조 명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 9】	적합
환 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 9】	적합
방 음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	적합
소 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소화기 ○대, 유도등 ○개, 직통계단 ○개소

3. 기 타

구 분	기준	현황	적합여부	비고
칠 판	조	조		적합
책상 및 의자	조	조		

4) 설립·운영 등록 수리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설립·운영 등록 수리

---

1. 관련: 민원접수 제○○호 (20○○.○.○.)

2. 민원인"홍길동"이(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하였기에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 등이 관계법령에 적법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설립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800101-1******)

나. 설립자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다. 등록 수리 사항

1) 목적: ○○교육

2) 명칭: ○○학원

3) 위치: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4) 교습과정: ○○

5) 정원 : ○○명 (일시수용능력인원 : ○명)

6) 규모 : ○○㎡ [강의실-○○㎡ (○실)/사무실-○○㎡(○실)]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검토서 1부.
2.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1부.
3. 학원원칙(안) 1부.
4. 현지조사서, 시설 및 설비조서, 평면도 (관련문서 참조) 각 1부.
5. 소방시설 점검확인서(전기안전 점검확인서) 1부.
6.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비전자)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교육국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6)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검토서

1. 신청개요

학원명	설립자	설 립 위 치	신청내용	비 고
○○학원	홍길동	○○시 ○○로 ○○번길 ○○ ○층	학원설립등록	

2. 검토내역

번호	검 토 사 항	검토 결과	적합여부		비 고
			가	부	
1	**서류검토** -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적 정	○		민원서류검토조서 참조
2	**설립자 자격**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이상없음	○		결격사유조회:**이상없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이상없음** 직권폐원 : **무**
3	**유해업소** - 학원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상없음	○		현지조사서 참조
4	**건축물용도** - 건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적 합	○		건축물대장 참조 **(교육연구시설)**
5	**직통계단** -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였는가? (단,2003.2.24.이전 건물은 해당 시·군청에 확인)	적 합	○		**4층에 위치함** **직통계단 2개소 설치**
6	**소방시설 -** 소방시설완비증명서첨부 또는 소방시설안전점검결과 적합여부	적 합	○		**○○소방서 확인** (소방특별조사서 참조)
7	**이중등록** - 학원설립예정지가 기존에 다른 학원이 등록되어 무단폐원한 곳은 아닌지?	이상없음	○		학원등록(변경) 대장확인
8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적합한가? (강의실 면적 등)	적 합	○		출장결과보고서 참조
9	**원칙** - 원칙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적 합	○		원칙참조
10	**인원** -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은 적정한가? (강의실 1㎡당 1명 이하, 실습실 1.5㎡당 1명 이하, 열람실 1㎡당 0.8명 이하, 중장비 실습장 30㎡당 1명 이하)	적 정	○		**○○명**
11	**명칭** - 동일교습과정의 학원과 명칭이 동일하지는 않은가?	이상없음	○		학원등록(변경) 대장확인

3. 검토결과 : 적합

20○○. ○. ○.

작성자 직 : 주무관 성명 : ○○○

[붙임 2]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1. 10.〉

제0000호

학원설립 · 운영 등록 증명서

1. 목적: **보통교과교육**

2. 명칭: **○○학원**

3. 설립자: **홍 길 동**

4. 위치: **경기도 ○○시 ○○구 ○○로 ○, ○층**

5.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 보습**

6. 정원: **○○명**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 유의사항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붙임 3]

학원 원칙 (안)

제1조 (목적) 이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원은 ○○학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학원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체 에 둔다.

제4조 (일시 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 이 학원의 수강생 일시 수용능력 인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계 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정 원	비 고
				강 의 실			
				○ ○ 실			
				강 의 실			
				○ ○ 실			
		계		명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교습과정 및 수료기간과 교과목별 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교 과 목		비 고
				과 목 명	총 이수시간	

※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총 이수시간란은 1개월 이상 교습과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 (입원자격) 이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입원자격

제7조 (휴강일) ①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 ○일

②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변, 특별한 사유,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강할 수 있다.

③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습비 등) ① 이 학원의 교습비 등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1.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이 등록 말소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습비 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해당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

제10조 (장부의 비치) ①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비치 · 관리 한다.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		준영구
2. 학원설립 · 운영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5.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6. 직원 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제11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 등에게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② 학습자 또는 강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원의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는 불특정 다수인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목적을 별도로 명시하여 동의를 받는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습비 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카드(현금) 영수증에 수강생이름, 교습과목, 교습기간 기재시 교습비등 영수증 대체하여 보관 가능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 10.〉

직원 명부

일련 번호	직명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담당 업무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일반용 예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table>
<tr><td colspan="5">1. 목적 : 학원 수강, 상담, 학습정보 제공, 공지사항 및 소식지 전달</td></tr>
<tr><td colspan="5">2. 수집 항목</td></tr>
<tr><td rowspan="4">필수정보</td><td colspan="4">다음 항목은 학원 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u>학원 수강을 위한 목적</u>으로만 사용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td></tr>
<tr><td>이 름</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연락처
(전화/휴대전화)</td><td></td><td>학교 및 학년</td><td></td></tr>
<tr><td>(수강과목)</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선택정보</td><td>휴대전화</td><td></td><td>전자우편</td><td></td></tr>
<tr><td>주 소</td><td></td><td>성 별</td><td></td></tr>
<tr><td>(관심과목)</td><td></td><td>학부형
연락처</td><td></td></tr>
<tr><td colspan="4">다음 항목은 학원생의 <u>상담, 학습정보의 제공, 공지사항 전달, 소식지 전달 등의 목적으로</u> 사용하며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 목적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td></tr>
<tr><td colspan="2">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td><td colspan="3">- 수집된 개인정보는 학원 퇴원 후 6개월(1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합니다.(즉시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선택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할 경우 학원 수강중이라도 해당 정보는 삭제합니다.</td></tr>
</table>

※ <u>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학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u>

<table>
<tr><td colspan="2">[법정대리인 동의서]본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학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td></tr>
<tr><td>법정대리인 성명</td><td>(인 / 서명)</td></tr>
<tr><td>법정대리인 연락처</td><td></td></tr>
<tr><td>법정대리인과의 관계</td><td></td></tr>
</table>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원에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이름 : (인)

○ ○ 학원 귀하

[홍보용 예시]

_____학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_____학원은 **학원 홍보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7조 및 제22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학원 성과 홍보
   - 학원 홈페이지 : www.△△△.co.kr
   - 현수막 부착 장소 : *(예시) 학원 차량, 학원 벽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출신학교, 입학예정 (대)학교
   (필요 최소한의 항목으로 작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홍보물 게시 종료까지, 학원 퇴원일로부터 6개월 (1년) 등 이용기간 명시
   (필요 최소한의 항목으로 작성)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셔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학원에서 제공하는 (예)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학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본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학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 /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년 월 일

이름 : (인)

○○ 학원 귀하

독서실 원칙 (안)

제1조 (목적) 이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 장소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독서실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독서실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체 에 둔다.

제4조 (일시 수용능력 인원) 이 독서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총 ○○○명(남 ○○명, 여 ○○명)으로 한다.

제5조 (휴관일) ① 이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휴관일
2. 개관 기념일 월 일

②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변, 특별한 사유,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1. 학습자가 독서실로부터 격리된 경우, 독서실이 등록 말소되거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독서실 운영자가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2. 독서실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제7조 (장부의 비치) ①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비치 · 관리한다.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		준영구
2. 학원설립 · 운영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준영구
3.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5.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6. 직원 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제8조 (시행세칙) 이 원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독서실의 설립·운영자가 이를 결정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시장 (세무과장)

제 목 ○○학원 면허부여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3. 지방세법 제3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면허부여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받은 자	성명(대표자)	홍길동	주민(법인)등록번호	800101-1000000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주소	
면허의 종 류	명 칭	○○학원 (등록번호 제○○○호)		
	규 모	시설규모 : ○○㎡, 정원 : ○○명 (일시수용능력인원 : ○명)		
면허의 부여 연월일		20○○.○.○.		
그 밖의 사항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시 ○○로 ○○번길 ○○)
제 목 ○○학원 설립·운영 등록 수리 알림

---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청○○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등록면허세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3.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원 관련 각종 민원서식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번 게시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원칙 1부.
3. 학원설립·운영자 준수사항 (자체 안내자료 활용)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6)

5) 조건부 등록·수리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6. 18.〉

학원설립 · 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설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교습비등		
	시설 · 설비계획	붙임: 시설 · 설비계획서와 같음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 · 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시설 · 설비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수리

---

1. 관련: 민원접수 제○○호 (20○○.○.○.)
2. 민원인"**홍길동**"이(가) **○○학원**의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였기에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조건부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설립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

나. 설립자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다. 조건부 등록 수리 사항

1) 목적: ○○교육

2) 명칭: ○○학원

3) 위치: 경기도 ○○시 ○○로 ○○번길 ○층

4) 교습과정: ○○

5) 정원: ○○명 (일시수용능력인원 : ○명)

6) 규모: ○○㎡

7) 조건부등록기간: 20○○.○.○. ~ 20○○.○.○.

붙임 1.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검토서 1부.

2. 학원원칙 1부.

3. 출장복명서, 시설 및 설비조서, 평면도 (관련문서 참조) 각 1부.

4. 소방특별조사서 1부

5.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서(비전자)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경기도 ○○시 ○○로 ○○번길 ○○)

제 목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수리 알림

---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의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등록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과 설비의 조건을 기한 내에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건부 등록 수리 사항

1) 목적 : ○○교육
2) 명칭 : ○○학원
3) 위치 :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4) 교습과정 : ○○
5) 정원 : ○○명 (일시수용능력인원 : ○명)
6) 규모 : ○○㎡

나. 조건 및 보고사항

1) 조건 : 20○○.○.○.까지 미비한 시설(_____) 완성
2) 개강 예정일 : 20○○.○.○.
3) 완성보고기한 : 20○○.○.○.

붙임 1. 학원 원칙 1부.
2. 학원 설립·운영자 준수사항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6)

6) 보완 및 반려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경기도 ○○시 ○○로 ○○번길 ○○)

제 목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류 보완 요구

---

1. 관련: 민원접수 제○○호(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상이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오니,
3. 정당한 소유자와 임대차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임대차 (전대차)계약서를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민원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경기도 ○○시 ○○로 ○○번길 ○○)

제 목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알림

---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수번호	제○○호		접수일		20○○.○.○.
민원명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당초 처리기간			처리 예정기한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담당자	소속	경기도○○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제 목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반려

---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 (교습과정:○○)의 설립·운영등록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강의실 실측면적(○○㎡)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교습과정:○○-◎◎㎡이상)에 미달되어 20○○.○.○.까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를 반려하오니,
3.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서류(비전자)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 ( ) - / 비공개(5,6)

02 학원 변경 등록

가 학원 변경 등록

1)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위치 변경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원칙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기관으로 공문 발송) 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민원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 건축물 대장(일반/집합)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 해당 학원)
교습과정 변경	• 학원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원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원칙 • 교습비 변경 신청서(내역서, 해당 시)	•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설립·운영자 변경	[공통]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신청서 1부 • 인수·인계 확인서 1부 [인계자] •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원칙 [인수자]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법인 정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시설·설비 변경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시설·설비) 1부 • 변경 후 시설 평면도 1부 •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기관으로 공문 발송) 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민원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 해당 학원)
명칭, 정원 및 일시수용인원, 교습과목, 법인 임원 변경 등	• 학원 변경 통보서 1부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원칙 • (법인 임원 변경일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임원 변경의 경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 첨부

2) 학원의 위치 변경

가) 신청서 접수 (처리기간 7일)

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민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소, 임원 확인)
-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물의 용도, 건물 사용 면적 확인
  - 해당 층이 3층 이상이고 동일 층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인지 확인
  - 직통계단 2개 관련 ※ 2003. 2. 24.이전 건물은 ☞ P.15. Q1. 참조
  - 해당 건물 용도 확인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 대상 여부 관련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확인

② 시설평면도, 시설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인 경우

나) 소방시설 확인 의뢰

-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관할소방서에 회신 요청
- 학원 설립·운영자의 성명, 영업장소재지 (연락처), 대상, 목적, 건물구조 (시설평면도 첨부)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다) 현지 확인

- 교육환경 확인: 동일건물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유해 시설물 확인
- 해당층이 3층 이상이고 동일 층 해당용도(건축법 제34조2항 2호)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이상 확보 여부 확인
- 강의실, 실습실, 기타실 실측
- 시설물 확인 – 화장실 등
- 설비 확인

라) 출장 보고 (출장복명서 작성)

마) 변경 등록 검토서 작성 및 학원 등록 수리

- 최종적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 검토서를 작성하여 출장보고 결과,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서 또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등록 수리

바)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재교부

3) 학원의 교습과정 변경 (처리기간 7일)

가) 신청서 접수

- 교습과정 변경 시 시설기준과 설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시설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교습과정을 변경등록 하여야 함
- 교습과정을 2개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도 추가 시설 및 설비부분에 대한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함

나) 학원 변경 등록 수리

- 출장보고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등록 수리

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재교부

4)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처리기간 7일)

가) 신청서 접수

- 인계자의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인수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함
- 학원의 시설변경 여부 확인
- 인수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확인

나) 결격사유 조회 실시

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실시 (법인인 경우 임원 [이사, 감사] 모두 해당)

라) 학원 설립 · 운영자 변경 수리 통보: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교부

- 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 시에는 인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인수자에게 인계자의 행정처분이 승계됨을 알리며, 등록되어 있는 학원 강사에 대해 재 채용, 해임 여부 및 제장부 등 비치 서류에 대해 인수 시 확인할 것을 안내
- 학원 신규 설립 · 운영자와 동일하게 학원의 유의사항 안내

Q&A

1.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시 행정처분 승계여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는 학원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인이 아닌 학원에 대한 처분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인수자가 당해 학원의 모든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도 당연 승계한 것임

5) 학원의 시설·설비 변경 (처리기간 7일)

가) 신청서 접수

- 소방시설 확인 의뢰 실시 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징구
- 학원 시설·설비 변경이 소방법상 설비요건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해당서류 징구 ※ 단순한 칸막이 제거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평면도

나) 현지 확인

다) 출장 보고

라) 학원 시설 변경 수리 통보

6) 학원의 명칭, 정원 및 일시수용인원, 교습과목, 법인 임원 변경(통보)

가) 신청서 접수: 학원변경통보서,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첨부

나) 학원의 명칭, 정원 및 일시수용인원, 교습과목, 법인 임원 변경 통보 –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교부

☞ 각종 변경 시 시청 (군청) 통보 사항은?

구 분	시청 (군청) 세무과 통보	면허세 납부 여부
설립·운영자 변경	○	○
위치 변경	○	△(경우에 따라 부과가능)
명칭 변경	○	×
교습과정, 교습과목, 시설, 정원 및 일시수용인원, 법인 임원 변경	×	×

나 학원 변경 등록 실무

1) 학원의 위치 변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1. 신청인 정보

설립·운영자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000000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연락처: 031-000-0000, 010-1234-5678)

2. 신청내용

	학원명: ○○학원	등록번호: 제○○○호
	위치: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부	(연락처: 031-000-0000)
변경사유 변경사항	학원 학장으로 인한 이사	
	변경 전: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부	
	변경 후: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부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승인	→	공문발송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임의서식]

학원(교습소) 등록(신고)증 분실 사유서

1. 학원(교습소)명	○○학원	2. 등록(신고)번호	제○○○○호
3. 설립·운영자 (교습자)	홍길동	4. 생년월일	1980.01.01.
5. 위치	○○시 ○○로 ○○번길○○ ○층, 전부	6. 전화번호	031-000-0000, 010-1234-0000
6. 분실 사유	청소 중 분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증 (신고증명서)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교습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임의서식]

재 산 (건물) 사 용 승 낙 서

소유자	주소	○○시 ○○ㄹ ○○번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0.01.01.
사용자	주소	○○시 ○○ㄹ ○○번길○○		
	성명	이순신	생년월일	1980.12.31.
재산사용 승낙사항	1. 재산소재지	○○시 ○○ㄹ ○○번길○○ ○층, 201호 전부		
	2. 사용면적	○○㎡		
	3. 사용조건	무상		
	4. 사용용도	○○학원 또는 ○○교습소		
	5. 사용기간	2년(20○○. ○. ○. ~ 20○○. ○. ○.)		

본인 소유의 재산을 위와 같이 학원 (교습소)으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위치 변경 등록 수리(○○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20○○.○.○.)

2. ○○학원 위치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 실사한 결과, 시설기준·기타 설비 및 교육환경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기에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학원명 : ○○학원 (등록번호 : 제○○○호)

나. 변경 등록 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위치		○○시 ○○로 ○○번길 ○층	**○○시 ○○로 ○○번길 ○○, ○층**
면적	강의실	77.53㎡	**62.25㎡**
	교무실	16.34㎡	**11.94㎡**
	기타	6.28㎡	**44.25㎡**
	계	100.15㎡	**118.44㎡**

붙임 1. 학원 변경 등록 검토서 1부.

2.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3. 학원원칙 1부.

4. 시설평면도 및 시설·설비 현황 각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 ○○○귀하

제 목 학원 위치 변경 등록 수리 알림 (○○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한"○○학원"위치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 변경 등록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청 ○○과에 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면허세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아래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관계법규 및 제반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시어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원칙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학원 (위치) 변경 등록 검토서

1. 신청개요

학 원 명	설립자	설 립 위 치	신 청 내 용	비 고
○○학원	홍길동	○○시 ○○로 ○번길 ○층	위치 변경	

2. 검토내역

번호	검 토 사 항	검토 결과	적합여부		비 고
			가	부	
1	**서류검토** -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적 정	○		민원서류검토조서 참조
2	**유해업소** - 학원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상 없음	○		출장보고서참조
3	**건축물용도** - 건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 500㎡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적 합	○		건축물대장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4	**직통계단**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였는가? (단,2003.2.24.이전 건물은 해당 시·군청에 확인)	적 합	○		**4층에 위치함 직통계단 2개소 설치**
5	**소방·전기시설**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등,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적 합	○		○○소방서 확인
6	**이중등록** - 학원설립예정지가 기존에 다른 학원이 등록되어 무단폐원한 곳은 아닌지?	이상 없음	○		학원대장확인
7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적합한가? (강의실면적 등)	적 합	○		출장보고서참조
8	**원칙** - 원칙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	적 합	○		원칙참조
9	**인원** -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은 적정한가? (강의실 1㎡당 1명 이하, 열람실 1㎡당 0.8명 이하 실험·실습실 1.5㎡당 1명 이하, 중장비 운전 교습과정 30㎡당 1명 이하)	적 정	○		○○명

3. 검토결과 : 적합

20○○. ○. ○.

작성자 직 : 주무관 성명 : ○○○ (인)

2) 학원 교습과정 변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1. 신청인 정보

설립·운영자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000000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연락처: 031-000-0000, 010-1234-5678)

2. 신청내용

	학원명: ○○학원	등록번호: 제○○○호
	위치: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부	(연락처: 031-000-0000)
변경사유	교습과정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실용영국어	
	변경 후: 보습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승인	→	공문발송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변경 (교습과정) 등록 수리 (○○학원)

1. 관련: 민원접수 제○○호(20○○.○.○.)

2. 귀하께서 제출한 "○○학원"교습과정 변경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학원 변경 (교습과정)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학원명: ○○학원 (등록번호: 제○○○호)

나. 변경 등록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교습과정	실용외국어	**보습**

붙임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원칙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운영자 귀하

제 목 학원 (교습과정) 변경 등록 알림 (○○학원)

1. 관련: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원”교습과정 변경 통보에 대하여 등록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3.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원 관련 각종 민원서식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번 게시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원칙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3)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6. 18.〉

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인계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수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전자우편:)
	주 소		(전화번호:)
학 원 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변경 사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 · 운영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 · 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학원(교습소) 인계·인수서(예시)

학원(교습소)명 : ○○학원

1. 시설 : 붙임도면과 같이 인계·인수로 갈음

2. 비치장부 및 서류 인계·인수 내역

비치 장부 및 서류	보존기간	수량	비고	비치 장부 및 서류	보존기간	수량	비고
1. 원칙	준영구	1		4.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5년	1	
2. 등록증	준영구	1		5. 수강생 대장	3년	1	
3. 현금출납부	5년	1		6. 직원명부	계속	1	

3. 설비 및 교구

내역	규격	수량

내역	규격	수량

4. 학원(교습소)운영시 인계·인수일로부터 과거 1년간 행정처분 내역

행정처분일	행정처분내역	행정처분사항	비고

※ 인수전 인계한 학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행정처분은 인수한 학원장에게 승계됩니다.

5. 학원 인수·인계 확인 사항

강사, 생활지도사	승계□ 해임□	인계자확인□ 인수자확인□
기존 수강생의 교습비등 환불 요구시 **인수자 승계**(환불)	인수자확인□	

※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인수자가 당해 학원의 모든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인수전 반드시 기존 수강생 교습비등 환불문제, 행정처분, 시설 등에 관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수자 유의사항

가.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학원강사 게시표, 교습비 등 게시표, 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인수 · 인계로 인한 강사의 채용 (15일이내) 및 해임 (15일이내)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단지 및 인터넷 등 학생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 사업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시설, 명칭, 원칙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가 끝난 후 교육지원청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교습소는 강사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강사채용 시 - 직권폐소)

사. 기타 유의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원 (교습소)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인수 · 인계합니다.

20○○년 ○월 ○일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변경 (설립자) 등록 수리 (○○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20○○.○.○.)

2. 학원에서 신청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에 대하여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원 설립자 변경 등록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성 명	홍길동 (800101-1******)	**김영희 (900101-2******)**

붙임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장 유의사항 1부. 끝.

TIP!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통보
- 설립자 변경 시 시설 변경여부 및 강사 채용·해임 여부 확인
- 학원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학원 제장부 및 학원장 준수사항 안내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운영자 귀하

제 목 학원 변경(설립자) 등록 수리 알림 - ○○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의 설립·운영자 변경 신청에 대하여 **등록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청○○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3.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원 관련 각종 민원서식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번 게시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설립·운영자 준수사항 (자체 안내자료 활용)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4) 학원 시설 변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1. 신청인 정보

설립·운영자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000000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연락처: 031-000-0000, 010-1234-5678)

2. 신청내용

	학원명: ○○학원	등록번호: 제○○○○호
	위치: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부	(연락처: 031-000-0000)
변경사유	상담실 설치	
변경사항	변경 전: 강의실 6실(117.63㎡)	
	변경 후: 강의실 5실(103.47㎡), 상담실 1실(10㎡)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승인	→	공문발송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시설 변경 등록 수리 (○○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원"시설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학원 시설 변경 등록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학원명 : ○○학원 (등록번호 : 제○○○호)

나. 변경 등록 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	강의실 6실 (117.63㎡)	**강의실 5실 (103.47㎡), 상담실 1실 (10㎡)**

붙임 1. 학원변경 등록 검토서 1부.
2. 시설평면도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운영자 귀하

제 목 학원 시설 변경 등록 수리 알림 - ○○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의 시설변경 신청에 대하여 등록·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3.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원 관련 각종 민원서식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번 게시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설립·운영자 준수사항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5) 학원 명칭 변경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6.11.30.〉

학원 변경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학원명	○○에스케이학원	등록번호 제 ○○○ 호
위치	경기도 ○○시 ○○로 ○○번 번길 ○층 전부 or 일부 (전화번호: 031-000-0000)	
설립 · 운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800101-1○○○○○○
	주소 경기도 ○○시 ○○로 ○○번 번길 ○층 전부 or 일부 (전화번호: 031-000-0000 , 010-1234-5678)	
변경사유	학원 명칭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에스케이학원	○○케이투학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보고인(학원 설립 · 운영자) 제출서류	학원설립 · 운영 등록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명칭 변경 수리 (○○학원)

1. 관련: 민원접수 제○○호(20○○.○.○.)

2. ○○학원 명칭 변경 통보에 대하여 서류검토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학원명 : ○○학원 (등록번호 : 제○○○호)

나. 변경 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칭	○○에스케이학원	○○케이투학원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원칙 1부. 끝.

TIP!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통보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 ○○○귀하 (○○시 ○○로 ○○번길 ○○)

제 목 학원 명칭 변경 수리 알림 (○○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 명칭변경 통보에 대하여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1부.
2. 학원원칙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03 학원 휴원·재개원·폐원 신고

가 학원 휴원·재개원·폐원 신고

1) 제출 서류

- 휴 원 :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 1부
- 재개원 : 학원 재개원 신고서 1부 (학원변경 등록서 첨부)
- 폐 원 : 학원 휴원·폐원 (✓) 신고서 1부

2) 휴원

-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휴원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가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학원 휴원 시 기존강사는 자동 해임 처리되므로 재개원 시 학원변경 등록서(강사채용)를 제출하며, 교습비 등 변경여부, 보험가입 등 학원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 검토

※ 휴원기간 중 학원의 설립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재개원 할 수 없음
※ 학원 휴원시 강사 해임 통보서를 함께 제출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유지와 관련된 서류 확인 필요

3) 재개원

- 학원이 휴원만료로 자동 재개원되거나 휴원사유 소멸로 인하여 휴원기간 중에 재개원할시에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육지원청에 학원 재개원 신고서 제출
- 재개원시 채용 통보서 제출

TIP! 기존강사를 재 채용할 시에 구비서류는 기존서류로 대체 가능하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다시 실시

4) 폐원

- 학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학원의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폐원 신고

Tip: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음〈신설 2023.4.18.〉

관련 규정

- 법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시행규칙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학원 휴원·재개원·폐원 신고 실무

1) 휴원 신고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9.〉

학원 [√]휴원 [ ]폐원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학원설립 · 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강생 현황		정원	현재 인원	비고
( )휴원	기간			
	사유			
( )폐원	연월일			
	사유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원/폐원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신고인(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휴원 신고 수리 (○○학원)

1. 관련: 민원접수 제○○호 (20○○.○.○.)

2. ○○학원 휴원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학 원 명 (등록번호)	설립자	주 소	학 원 위 치	휴원 기간	휴원사유
○○학원 (제○○○호)	홍길동	경기도 ○○시 ○○로 ○○번길	경기도 ○○시 ○○로 ○○번길 ○층 전부	20○○.○.○. ~ 20○○.○.○.	건강악화

끝.

TIP!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알림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귀하 (○○시 ○○로 ○○번길)

제 목 학원 휴원 신고 수리 알림 (○○학원)

1. 관련: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 휴원 신고에 대하여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유의사항

가. 휴원을 연장코자 할 경우, 휴원 기간 내에 또는 휴원 기간 만료후에 개원을 할 시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휴원 연장 신고 없이 2월 이상 무단 휴원 시에는 행정처분(등록말소)과 과태료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2) 재개원 신고

[임의서식]

학원 재개원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학원명	○○학원	등록번호 제○○○호
위치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부	

학원설립 · 운영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800101-*******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APT *000-000* (전화번호:031-000-0000, 010-1234-5678)	

휴원기간	20○○.○.○. ~ 20○○.○.○.
재개원연월일	2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원 신고하였던 위 학원의 재개원을 신고합니다.

20○○년 ○월 ○일

신고인 (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학원안전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재개원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가입 후 14일 이내 제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귀하(○○시 ○○로 ○○번길)

제 목 학원 재개원 신고 수리 알림(○○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원 재개원 신고에 대하여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학원 재개원에 따라 강사채용등록, 학원보험가입, 학원 운영 관련 구비서류 등 학원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건전한 학원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설립·운영자 준수사항 (자체 안내자료 활용)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3) 폐원 신고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9.〉

학원 [ ]휴원 [√]폐원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학원설립 · 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강생 현황		정원	현재 인원	비고
( )휴원	기간			
	사유			
( )폐원	연월일			
	사유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원/폐원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신고인(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폐원 신고 수리 (○○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학원 폐원을 신고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학 원 명 (등록번호)	설립자	주 소	학 원 위 치	폐원일	폐원사유	수강생(직원)에 대한 조치
○○학원 (제○○○호)	홍길동	경기도 ○○시 ○○로 ○○번길	경기도 ○○시 ○○로 ○○번길 ○층	20○○. ○.○.	건강악화	타학원 소개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귀하 (○○시 ○○로 ○○번길)
제 목 학원 폐원 신고 수리 알림 (○○학원)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학원 폐원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존에 설치하였던 학원 간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학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폐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시(구청)장(세무과장)

제 목 학원(○○학원) 폐원 통보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원의 폐원 신고를 수리하여,
2. 지방세법 제38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면허 폐지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받은 자	성명(대표자)	홍길동	주민(법인)등록번호	800101-1○○○○○○
	상호(법인명)	○○학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시 ○○로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면허의 종류	명칭	○○학원		
	규모			
면허의 폐지연월일	20○○. ○. ○.			
그밖의 사항	학원 폐원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04 학원 강사

가 학원 강사 채용 및 해임

1) 제출 서류

① 학원 강사 채용통보서 1부
②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채용 전 발급받은 것)
③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학위증 등)

※ 등록 시기 : 채용·해임 후 15일 이내에 통보

※ 교습가능시기 : 강사요건 (자격기준, 성범죄 조회 완료)을 갖춘 상태에서 교습(채용) 가능

※ 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 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것으로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학원법 제5조의2)

2) 자격 기준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3] (2024.5.7. 개정)

구 분	자 격 기 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 ('95.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 안됨

구분	자격기준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평생직업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9호와 관련하여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각각 "별표 2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본다.

경기도교육감 인정 강사 자격기준

① 사무관리계열 학원강사 자격 (경기도교육청 평체 81700-104, 2000.1.25)

- 능력 위주로의 자격 기준 완화
- 사무관리계열 상 실무 경력 불필요
- 동 계열 자격증 취득 시 학력 제한 없음

분야	계열	교습과정	인정범위	비고
경영실무	사무관리	부기	3급 이상	※ 기술자격의 검정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실무 수행 능력
		주산	3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속기 (한글, 영문)	3급 이상	
		비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② 바둑학원 강사 자격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 12777, 2014.12.12.)

계열	교습과정	인 정 범 위	비 고
예능	바둑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 (사)대한바둑협회에서 발급한 바둑보급 지도자 (1급~3급) 자격증 소지자 2. (사)한국바둑협회에서 발급한 바둑지도사 (1급~3급) 자격증 소지자	

Q&A

1. 학원에 채용되어 원생들에게 교습을 하나, 아르바이트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 주당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제공) 채용할 경우 강사에 해당되나?

강사는 학원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학원에 채용되어 원생들에게 교습을 하는지 여부가 강사의 판단 기준임. 교습행위를 하는 강사는 모두 강사채용, 해임 통보 대상임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3]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제2호에서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바…

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으나 대학에 재학중인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에 재학중인 자도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

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함(법제처질의회신 2007.12.28.)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7 (2008.01.08.)]
- 학점인정에 의한 강사채용 통보 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에서 말한 2학년 교육과정 전부 이수자라 하면,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인정한 학점을 취득한 2학년 수료자를 말함 (2학년 수료증명서 확인)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2년 수료자는 강사 등록 불가

3) 외국인 강사 채용 통보

◎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기준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관련)

가)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①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②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외국인강사 채용 등록 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0조의2)

가) 채용등록 신청서

나) 국적국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E-2체류자격자 제외

- 국적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다) 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국제화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입증자료를 말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중이고 외국어 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①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②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③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확인

④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았을 것(영별표2 중 국제화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라) 학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E-2체류자격자 제외

①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②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취득증명서

③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

④ 소속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로서 국적국 정부, 국내 국적국 공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서류(시행령 별표3에 따라 외국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

※ F계열 외국인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여부는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university·college만으로 4년제 여부를 판단 못함)

마) 여권,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

① 여권: 유효할 것. 다만, 영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일 것.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③ 그 밖의 신분증명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신분증명서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았을 것

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국내 체류자의 경우)

E-2 (회화지도)는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 **영어 :** Canada, USA, UK,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South Africa

체류 자격별 취업활동 범위

체류자격	체류자격 설명	학원 취업활동 범위
E-2(회화지도)	회화지도 능력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 학원 강사 가능
E-6(예술흥행)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모델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① 학원 강사 ② 학원설립 가능 (취업범위에 창업 포함) ③ 개인과외교습 가능
F-2(거주)	영주 (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F-4(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F-5(영주)	일정한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1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체류를 인정한 사람	
F-6(결혼이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D-8(기업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사하려는 전문인력	학원설립 가능
공통사항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외국소재 대학 출신 국내 강사 학력 검증

① 영사확인(공증)을 해주는 국가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 해당국가 소재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

② 영사확인(공증)을 해주지 않는 국가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 외국의 국·공립 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 (인증서) 요구

- 외국의 국·공립 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공문서이므로 자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해 당해국가가 발행하는 Apostille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

• 외국의 사립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 (인증서) 요구

-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사문서 이므로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에 대해 당해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을 거친 후 Apostille(인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③ 사설 공증을 받은 외국 소재대학의 학위·졸업증명서는 검증 효력이 없음

다만, 중국대사관의 위탁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발급한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서"는 예외적 인정 (중화인민공화국 주 대한민국대사관 교육처 회신 2012.4.13.)

아포스티유 협약, 범죄경력증명서

①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1년 헤이그국제 사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7.14.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 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았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음

※ 가입국 : 128개국 (2024.6.5.기준)

• 대 상 : 성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https://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

※ 아포스티유 확인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 문서발급 (필요한 경우 번역 및 공증) →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제출 → 아포스티유 부착 → 한국기관에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은 문서의 발행 국가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절차임

• 해외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당국의 주소지 및 연락처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문의.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의 해외주재공관을 클릭하면 찾아갈 수 있음

②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 공적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확인

Q&A

1. 비자와 여권의 차이는?

비자는 사증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여행허가서이고, 여권은 홍길동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신분증임. 여권만 있으면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단기간 (15일~6개월, 나라별로 다름)에 한해 모두 갈 수 있음

2. F-2, F-4, 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들이 일반학원 또는 영어학원에 강사로 취업이 가능한가?

취업에 장애가 없으므로 가능함. 그러나 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항, 제4항〉

3. 타학원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외국인 (E-2 비자 소지자)을 다른 학원에서 채용이 가능한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으면 채용이 가능함

4. 외국인이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체류자격이 F-2, F-4 외국인의 경우 교습소나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그 동안 학원 등에서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E-2 (회화지도), F-4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이 있어야 했으나, 동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배우자 자격 (F-2-가), 난민인정을 받은자 (F-2-나), 영주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F-2-다)는 체류자격 외 별도의 허가없이 취업이 가능토록 한 것임. 따라서 상기 체류자격 소지자가 외국어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동 체류자격 외 별도의 허가 없이 강사 활동이 가능함 (평생학습정책과-477, 2005.10.) 학원법령에 교습소 설립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에 준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학원 강사 자격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동 기준에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봄.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의 투자제외업종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봄.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가 직접 주거지에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투자와 거리가 있으며, F-2, F-4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법령에서 취업에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봄

관련 규정

- 법 제13조 (강사 등) / 제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 시행령 제12조 (강사) / 제12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 시행규칙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 제10조의2 (외국인 강사의 채용)
- 조례 제8조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나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실무

1) 채용 통보

■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준용

☐강 사
☐영 양 사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통보서

처리기간
2일

학 원 명	○○학원	등록번호	제○○○호
설립·운영자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8

통 보 내 역

연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력 / 소지자격증	채용일자 / 담당업무	경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결 과
1	김선달 / -	경기도○○시 ○○로○○번길 ○○, ○○APT 000-000	대졸	2023.02.01. / 국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아동 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됨)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2) 해임 통보

■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준용

☐강 사 ☐영 양 사 ☐생활지도담당인력	해임 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학 원 명	○○학원	등록번호	제○○○○호
설립·운영자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8

통 보 내 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해임일자	사 유
1	김선달	1990.01.01	국어	2023.01.01.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05 교습비 등

가 교습비 등 운영 규정

1) 교습비 등의 정의

•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말함 (법 제2조 6항)

- 기타경비의 범위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1.10.25〉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항목	내용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 ·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차량비 등록 시 제출 서류 (예시)

① 교습비 등 변경 등록 내역(산출내역 등 증빙자료) 1부.

②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1부.

③ 전세버스 계약서 1부.(학원설립자와 계약) *(3,4 중 해당되는 서류)*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1부.

※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유상운송 허가증 1부.

2) 교습비 등 운영 규정

•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

•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 · 게시 · 고지하거나, 표시 · 게시 · 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 · 신고한 교습비 등을초과한 금액을 징수 금지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①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② 등록 또는 신고번호, ③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④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학원법 제1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 인쇄물·인터넷 등: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볼펜, 부채, 메모지 등의 판촉물과 현수막 활용 광고 시는 제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879(2018.3.23.)]

※ **(교습비등 표기)** △원칙: 전부 표기, △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 교습비 게시는 학원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외부에 게시할 경우 시설 사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를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게시함

- 학원 · 교습소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 학원 · 교습소의 외부 (주 출입구, 보조출입구,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로, 건물외벽 등)

- 교육감 (교육장)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Q&A

1.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요약) 광고 표시 사항은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학원법 제 15조제3항에서는 게시 사항으로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의 표시사항으로 교습비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이하 '광고 표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할 사항은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동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법 제15조제3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여 표시·게시·고지해야 할 사항 중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게시의 경우, 제15조제3항에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습비 등 또는 그 반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만 게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의 경우, 동조항에서 '교습비등과 광고 표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광고 표시 사항'은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5조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당연히 부과될 수 없을 것입니다.

Q&A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의 제2호 카목은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서술되어 있어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외에 '광고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견이 있으나, 동법 제23조제2항에서는 동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모법인 법률의 위임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될 것입니다.

3) 교습비 등 반환 기준 〈시행령 개정 2020. 3. 31.〉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 금액</th></tr>
<tr><td colspan="3">학원의 사유
(제18조 제2항 제1호, 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td><td>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또는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나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td></tr>
<tr><td rowspan="6">수강생의 사유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의한 경우)</td><td rowspan="4">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td><td rowspan="3">독서실 외</td><td>교습 시작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td><td>반환하지 아니함</td></tr>
<tr><td rowspan="2">독서실</td><td>학습장소 사용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td></tr>
<tr><td>학습장소 사용 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td></tr>
<tr><td colspan="2" rowspan="2">교습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교습 시작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td></tr>
<tr><td>교습 시작 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
</table>

※ 비 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Q&A

1. 학원 영업상 학원의 교습비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징수한 경우 학원비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서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 다만 원격학원 수강 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면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미수강 부분에 대해 환불을 해주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례 15-0260, 2017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 학원의 종류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된 독서실내 성인 학습자에 대한 교습비등 자율운영 가능 여부?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독서실교육협의회, '10.6.18)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된 학원에 성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성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4506(2010.06.24.)호]

3.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수강생 또는 보호자가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학원장에게 고지한 시점을 기산하여 반환함 (관련 근거: 민법 제111조)

4. 학원에서 징수한 교습비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가 동일하나 등록된 교습비등과 다를 경우는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과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징수한 교습비등과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 동일한 경우는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표시·게시·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과 다른 경우에는 '교습비등의 변경 미등록'에 해당할 것입니다.

※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의 판단 기준

구체적 사례

[①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②징수 교습비등 ③교육감 등록·신고 교습비등]
1. (①=②)〈③ ⇒ 거짓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2. (①=②)〉③ ⇒ 거짓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초과징수(○)
3. (①〈②)〈③ ⇒ 거짓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4. (①〈②)〉③ ⇒ 거짓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초과징수((○)
※ 거짓 표시·게시·고지(○), 초과징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 방법
- 「학원법」 제17조제1항제7호는 교습비등을 초과로 징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고,동법 제23조제1항제7호는 거짓 표시·게시·고지,동조제1항제7의2호는 초과징수에 대한 과태료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중 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두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하므로 어느 하나에 대해 선택하여 부과가 가능하나 '초과징수'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또한 동일한 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017년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사례집]

Q&A

5.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5일이라는 것이 영업일 기준인지?

학원법 제18조, 동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교습비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반환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학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 6. 13.]

6. 학원에서 서적(교재) 판매가 가능한가?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 외에는 일체 징수 할 수 없으므로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교재를 판매할 수 없음. 따라서 학원과 별도 시설에 서점업으로 신고한 후에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하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각 시,군,구청에 출판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법률에 따라 교재의 정가를 표기한 후 간행물로 발행하여 판매해야 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원법 시행령제3조의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2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

4) 교습비 등 조정 절차

- 교육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 등이 과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별로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 법 제15조 (교습비 등) / 제18조 (교습비의 반환 등)
- 시행령 제17조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 제17조의2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 / 제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
- 시행규칙 제15조 (교습비 등의 게시 등)
- 교육규칙 제8조의2 (교습비 게시·표시) / 4조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 제4조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 (조정위원회 운영 등)

나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법 제15조제6항)

1) 교습비등 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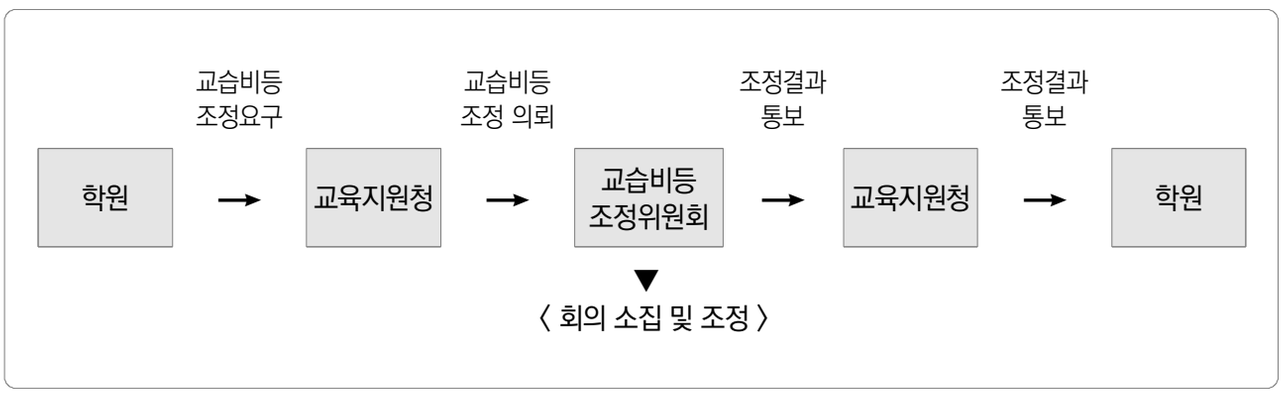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17조)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함
-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함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②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③ 학부모 또는 학부모 · 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④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교습비등 개별 조정 절차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교습비등(변경) 등록 접수	• 교습비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증빙자료 요구: 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 안내
⇓	
교습비등 조정 서류 제출 및 검토	• 학원 등 : 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 • 교육청 : 제출된 서류 검토
⇓	
공인회계사 검토 (필요시)	• 공인회계사 선정 및 회계검토
⇓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개최(심의)	• 조정위원회 소집: 회의 7일 전에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 • 교습비등 적정성 검토 •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 교습비 산정
⇓	
교습비등 조정명령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명령 • 위원장은 심의·조정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
⇓	
결과 통보 및 의견 제출 안내	• 조정 명령받은 금액으로 교습비 등록

※ 교습비등 개별 조정 증빙자료 요구 목록(예시)

1) 학원 수익 분석을 위한 증빙자료

①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②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③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④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예시)

- 사업장현황신고서(개인사업자만 해당)
- 부가가치세신고서(겸업사업자만 해당)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 세무조정계산서 등

2) 학원 원가 분석을 위한 증빙자료

- 과정별 원가명세서
- 과정별 강사 명단 및 직원 명단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강사 및 직원 연말정산 및 급여 서류)
- 설립운영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교습비등 개별조정 증빙자료 검토 사항(예시)

1) 학원 수익 분석 증빙자료 검토 사항
   - 통보된 교습비와 징구된 자료의 교습비와 동일한지 여부
   - 지나치게 낮은 수강률이 분석되는지 여부(소수정원운영 등)

2) 학원 원가 분석 증빙자료 검토 사항
   - 원가 구성 항목이 적정한가 여부
   - 등록된 강사 외 강사료 지급여부
   - 강사료, 임차료 이외 경비가 지나치게 높은지 여부
   - 본사의 공통경비 안분 금액이 큰 경우
   - 지나치게 높은 원가 구성
   - 고가의 강사료, 고가의 임차료, 고가의 기타경비 등

2) 교습비 등 등록 신청

[임의서식]

학원변경 (교습비 등)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기간 7일

학원명	○○학원	등록번호	제 000 호
위치	경기도 ○○시 ○○로 ○○번길 ○층 (전화번호:031-000-0000)		
설립 · 운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000000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APT 000-000 (전화번호:031-000-0000, 010-1234-5678)		

교 습 비

교습과정	교습과목(반)	교습기간	총교습시간(분/월)	정원	교습비
보습	수학(초)	1월	60분 * 주5회 * 4.2주 = 1,260분	40	150,000
	수학(중)	1월	"	30	174,000
	영어(초, 중)	1월	"	40	180,000
			이 하 빈 칸		

기타경비

교습과목(반)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신청인(학원 설립 · 운영자) 유의사항	1. 학원설립 · 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2. 교육장은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및 시행령17조의2)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직급) 성명) (인)	

3) 교습비 등 조정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구성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붙임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구성(안)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구성 (안)

□ 목　적

○ 교습비 등 등록을 위한 조정기준 마련 및 교습비 등의 조정에 관한 심의

○ 교습비 등의 등록을 통한 투명한 학원 운영 및 교습비 등 안정 도모

□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 구　성 (7~11명)

○ 위 원 장 : 1명

○ 부위원장 : 1명

○ 위　원 : 7명

-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소속공무원 1명
- 물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1명
-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 1명

○ 간　사 :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1명

□ 기　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 교습비 등의 조정

○ 그 밖의 교습비 등에 관하여 교육장이나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및 운영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교육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 하거나, 질병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처 참조

제 목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지원청 학원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위원회 구성에 적합한 관계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붙임 승낙서를 첨부하여 20○○.○.○.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 대상자

기 관 명	추 천 기 준	추 천 인 원	임 기	비 고
○○시청	물가담당공무원	1명	2년	1명이상
○○초등학교	학부모	1명	"	2명이상
공인회계사(세무사)연합회	공인회계사	1명	"	1명이상
○○시학원(교습소)연합회	학원장, 교습소장	2명	"	2명이상
시민사회단체	소비자관련부서장	1명	"	1명이상

나. 추천서식

소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붙임 승낙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시장,○○초등학교장,공인회계사(세무사)연합회장,○○시학원(교습소)연합회회장, ○○시민사회단체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승 낙 서

본인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구성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 교습비 등의 안정관리와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위촉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직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성 별	위촉기간	비 고
위원			○○○			20○○.○.○.~ 20○○.○.○.	
위원			○○○			20○○.○.○.~ 20○○.○.○.	
위원			○○○			20○○.○.○.~ 20○○.○.○.	
위원			○○○			20○○.○.○.~ 20○○.○.○.	

붙임 1.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1부

2. 위촉장 ○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경기도○○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비 등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라 한다.

제3조(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제4조(구성) ① 위원장은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② 위원 (위원들이 부위원장 호선)

1.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소비자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 공무원 중 1명
2.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원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1명
4. 소비자관련 시민단체 1명
5.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② 교습비등의 조정
③ 그 밖에 교습비등에 관하여 교육장이나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결과처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처 참조

제 목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 귀하께서는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촉장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20○○.○.○.(2년)

년 월 일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06 학원 질의응답

가 학원 설립·등록과 운영

공유 지분 건물의 학원설립

저는 학원 건물을 임대해주려고 하는 건물주입니다. 저의 건물은 소유주가 3명인데 지분의 2/6는 제가, 3/6은 동생이, 1/6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 지분 1/6에 대한 건물 임대 계약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원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민법에 따르면 두 사람 지분 5/6이므로 임대 계약도 동생과 제가 하고 인감증명서도 두 사람 것만 첨부하면 학원 설립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공유물의 관리라 함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가 이에 속하며 이러한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통설이며 공유자간에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지분에 대한 관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648 2002. 10. 24.

폐원 미신고 학원 장소에 신규 학원 설립 가능 여부

6개월 전 경매로 근린시설을 낙찰 받아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학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려고 하니 전 학원 운영자가 폐원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 장소에서 학원 운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 학원 설립·운영자의 소재 파악 및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데 학원운영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위치에 학원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학원을 등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학원법령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학원 설립·운영자가 고의

또는 미숙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하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학원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신문고 2006. 09. 08.

북아트 교습과정 학원 설립 여부

북아트를 하려면 책표지 제작부터 책 내용을 쓰기까지 여러가지 많은 것이 교육되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다 보니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교육청에 문의드렸드니 학원으로 등록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학원으로 등록이 안되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안된다고 하시구요. 학원으로 설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북아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1항 및 [별표2]에 의한 교습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교습과정의 등록은 이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역시 동조 제3항에서 한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응답사례집 15 2006. 09. 01.

의료 행위 교습과정 (스포츠마사지) 학원설립 가능 여부

스포츠마사지 학원설립 가능 여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습과정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스포츠마사지 교습과정은 없으므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교육부 소리함 번호 16834

체육시설업의 학원설립·등록 여부

체육시설업상의 체육도장업, 태권도학원, 검도학원이 학원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되는 관련법이며, 체육시설업상의 체육도장업, 태권도학원, 검도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교습대상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체육시설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07. 23.

명상 교육 학원설립 가능 여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교육하고 싶은데 학원으로 등록가능한지요?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학, 의학, 철학 등 신체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거나 심오한 이론과 정치적 응용방법을 요하는 교습과정은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399 2001. 06. 05.

교습시간 제한 대상

성인만 남아서 수업을 할 경우에도 심야교습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 (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제16조 (지도·감독 등)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제한을 정한 시·도에서는 교습시간 제한 이후에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6. 19.

학원 설립 가능한 수업일수

A라는 민원인이 학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학원의 교과 과정은 1주일에 한 번 학원에 출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수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시수는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번이나 1번 수업을 하여도 학원등록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원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이므로 장기간이라도 반복적 혹은 교습과정 운영이 30일 이상 지속된다면 학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04. 17.

학원법의 진학지도상담(입시컨설팅)의 범위

학원법에 규율되어 있는 “상급학교 진학목적을 위한 진학지도/상담의 교습과정을 선택하여 학원을 개업(등록)하고자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목적의 입시컨설팅은 꼭 고등과정에서 대입으로 가는 입학전형절차에 대한 컨설팅만을 의미하는지요?

학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진학상담·지도가 있으며, 이 과정은 대입에 필요한 진학상담·지도만이 아닌 지식·기술·예능에 관하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상담·지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 04. 16.

지자체 설립, 민간업체 위탁운영 중인 평생학습시설의 학원시설 전환 등록

“영어마을”이라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민간법인이 위탁받아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 운영한 경우에도 교육청에 해당 시설을 학원 시설로 수정 등록해야만 하는 것인지?

등록의무가 있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면 현재 위탁받은 시설물이 학원시설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 제재 등의 발생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환등록 유예기간 적용에 따라 현 위 수탁협약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금년 중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 위탁협약 기간이 유예기간에 포함됩니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인이란 자연인과 사법인을 포함 하는 개념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운영 중인 영어마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였다면 학원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 12. 03.

학생대상 평생교육시설 학원으로 전환

1. 백화점 문화센터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학원법 적용 제외시설로 인정여부?
2. 백화점 센터에서 학생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할 때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제한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일 때에만 학원등록대상인지 여부
3. 백화점문화센터에서 학생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할 경우,
   - 학교의 학생 또는 유아의 인원을 9명 이하의 대상이거나 30일 (회) 미만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한다면 현행대로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학생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그 교습내용이 학교교육과정이건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건 간에 모두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생교육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나목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한 취지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자체에서 제외하여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서 학원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보더라도,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하고, 동 시설에서 학생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9인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교습소로 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9명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한다면 교습소로 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9명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한다면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04. 06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육 사업 시 학원설립 유무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육 사업을 장기간 (10인 이상 수강생 모집에 30일 이상 교육)에 걸쳐 할 경우 학원 설립을 안 하고도 가능한가요.

학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7조에 따르면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9. 09. 22.

지하 학원설립 여부

현행법상 학원 등록은 지하엔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사무로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 등 학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급수시설 및 화장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의 시설로 사용 가능하기도 하오니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도 조례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어 학원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0. 06. 04.

9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 여부

한 달에 성인 10인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 신고 없이 교습이 가능하나, 같은 시간에 8명 이하의 성인을 2~3회 수업하여 한 달에 10인을 초과하여 교습한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교습소"란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이 9인 (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시간에 9명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0. 02. 11.

교구매장 회원 대상 무료 강좌가 학원법 적용 대상인지

교구매장에 부모학교 상호를 걸고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차원으로 자녀와의 대화법, 양육태도 돌아보기, 효율적인 부모 역할 등에 대하여 무료 강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식인력평생교육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2조에 의하면“학원”이란 사인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습과정을 평생교육시설으로 신고하여 운영한다면 학원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9명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율업으로 하시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9. 12. 30.

유아대상 학원설립 및 교습과정 문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부분은 유아대상 영어교육과 놀이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에 1,2층은 외국어학원을 설치하여 오전에는 학원 수강료를 받고 영어교육을 하며, 3층은 놀이서비스 공간으로 꾸며 학원이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 후 오후시간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놀이서비스란 현재 시중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처럼 교구를 가지고 놀며 한글, 인지,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등을 도모하는 형태의 사업장입니다.
인허가 관련 법률을 살펴보던 중“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니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저희가 준비한 교습과정으로 학원을 등록하고자 알아보니 해당하는 교습과정이 없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데, 만일 학원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수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또는 놀이를 통해 지식 또는 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목적이 라면 학원법령에 따라 외국어학원 등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놀이서비스가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9. 10. 23.

성인대상 기숙학원의 설립 가능 여부

PEET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은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으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 생물 등 4과목을 시험칩니다. 일종의 약학대학입학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학원분류상 검정고시 분야로 봐도 되는지요? 또 이와 관련하여 기숙학원을 설립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정되며, 학원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초· 중등교육법」 상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인·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ET과정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 12. 05.

요일을 달리할 경우, 취미반일 경우 학원법 적용 받는지

학원법 관련 10명이상 초중고에 대한 월, 수, 금 운영 후 나머지 일수에 대한 성인대상 수업일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받는지요? 교습과정이 아닌 운동, 취미수업일 경우의 10명이상수업 시 학원법 적용을 받는지요?

학원의 정의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월·수·금 동시 교습인원 5명, 화·목·토 동시 교습인원 5명일 경우 교습소로, 월·수·금 동시 교습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학원으로 운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 교습인원 9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 시 교습소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교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교 입학 시험 준비생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9인 이하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 또는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교습과정의 등록내용은 별표 1의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 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교습 대상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무용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대무용 등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취미반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0. 12. 02.

재즈댄스가 학원등록 대상인지

재즈댄스와 힙합댄스가'학원'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른 업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업태변경을 꼭 해야 하는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제2조의2에 의하면 교습대상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2조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의 필요와 필요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별표 1」에 의하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예능계열 무용 교습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기예계열) 전통무용·현대무용 교습과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힙합댄스, 방송댄스, 재즈댄스 등 각종 댄스를 교습할 경우 「학원법」제2조의2에 의한 교습 대상에 따라 학교교습 교습학원의 무용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대무용 등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06. 03.

오픈마켓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학원등록 대상 여부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상품 등록이나 광고하는 방법 등 주로 판매자 영업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므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 전부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달 교육일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불과 며칠로 단기입니다. 판매자들을대상으로 오픈마켓 회사가 교육하는 것이 소위 학원법의 적용대상인지와 교육내용이 지식이나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2항에 따라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합니다.

민원인이 교습하고자 하는 소속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 방법 관련 강의는 학원법상의 교습과정에 유사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과정이 없으며, 학원의 정의“불특정 다수”와“지식·기술·예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 06. 18.

온라인 학원의 오프라인 평가(시험) 가능 여부

온라인 학원 운영에 있어 온라인상에서 강의나 수강은 사용자 편의성으로 진행이 원할 할 수 있지만, 자체 시험이나 평가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해야만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오프라인 강의장을 통해서 업무 제휴 또는 파트너 계약을 준거하여 진행하고자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 등록 시 시설, 설비 및 건축물 대장 제출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및 학원으로 등록될 장소의 면적을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학원법 제24조에 따라 원격교습학원은 학생들의 집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업소, 시설 기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습학원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교습을 하는 학원으로 한정하며, 학습자를 집합하여 이루어지는 교습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 12. 16.

방문미술 (유아 ~ 성인대상) 교습의 학원설립 여부

방문 미술 교습을 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세무소에 면세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했더니, 학원 설립을 먼저하고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문 미술하는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업을 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각각의 선생님들이 개인과외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건물에 강의실면적 및 교구, 교육환경을 갖추고 학생이 방문하여 교습을 받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방문미술교습을 하는 강사를 관리하는 시설은 학원의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방문교습을 행하는 강사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문의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4. 03. 12.

학원의 휴원 및 폐원에 대한 질문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을 1개월이상 휴원 (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원 및 폐원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의 휴원과 폐원은 어떻게 다른지 학원법 소관중앙 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원은 학원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학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운영중단의 사유가 종료되면 기존 시설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원은 기존시설에서 더 이상 학원운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장소 변경하지 않고 학원 시설을 종국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4. 06. 11.

학원설립 제한지역 (원격학원 포함)

산업기술단지 내 학원 (원격학원) 설립 가능여부?

산업기술단지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 거점을 말하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 및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에 학원법상 학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학원 설립의 제한을 받습니다.

원격학원의 경우도 용도제한은 없으나 이 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내 설립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5. 01. 1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기능사교육실시 가능 여부

우리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80호)에 따라 지정된 비계, 거푸집 등 기능습득교육기관이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입니다. 본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학원법 제6조에 의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계 또는 거푸집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여도 되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에서는 학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바. 이 중 마목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의 범주에서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9. 01. 28.

유학원 등록 여부

유학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무슨 법령에 의거 어디에 등록을 해야 하는가요?

유학원은 교습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알선'하는 곳으로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에 등록을 한 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학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유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9. 05. 01.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의 학원 설립자 등록 가능 여부

형사사건으로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이 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제1항 제3호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한 동법 제9조(결격사유 등) 제2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5. 5. 13.

등록말소 후 학원설립 · 운영의 등록 가능 여부

학원법 제6조제6항과 관련하여 학원이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의 정지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이 가능한지 ①동일 설립 · 운영자가 해당 장소에서 다른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② 다른 설립·운영자가 해당 장소에서 동일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동일 설립·운영자인 경우 등록 불가, 다른 설립·운영자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가능할 수 있음

학원법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또는 동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동일 설립·운영자가 해당 장소에서 다른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6의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고 둘째, 다른 설립·운영자가 해당 장소에서 동일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이 거부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동법 제6조제6항은 등록 거부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9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시도별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2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다르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별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면 다른 건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주 간에 협정에 의해 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동이 맞닿아 건축되고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형태는 동일한 건축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건축물 주소가 다르고 각각 건축물대장이 다르면 다른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학원법」상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 시행령의 동일한 건축물 범위와 규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2007.4.13. 법제처 해석). 건축물의 주소가 다르고 별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건물이라면 학원법상 '동일한 건축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맞벽으로 건축되어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학원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 5. 2.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
-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사안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3년이 지나야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 이를 달리 해석하여 전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 따라서,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5-0196 2015. 5. 12.

공단 운영 시설의 원어민영어강좌 프로그램

00구시설관리공단 구립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원어민영어강좌 프로그램의 학원법 위반 여부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0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학원법 제2조의 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 또한 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00구시설관리공단'의 구립체육시설에서 운영하려 하는 원어민영어강습프로그램은 사인이 아닌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원법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학원법 위반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교습행위, 교습과정과 대상

자습의 교습행위 해당여부

○ 교실에서 강사 없이 학생만 자습하는 것은 학원법상 교습행위로 분류되어 교습비 징수 가능한가?
○ (교습행위 아니라서 교습비 징수 불가능 하다면) 교습행위가 아니면 10시 넘어서 자습만하는 것은 합법인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법 제8조 (시설기준)에 따르면'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 (지도·감독 등)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혼자 자습하는 것은 교습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실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원법 제2조의 학원 정의 및 같은 법 제16조의 교습시간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5. 23.

대입 수시 논술 캠프의 교습행위 해당 여부

고3 및 재수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측의 협조로 학교 시설 (강의실)을 이용하여 4일간(09:00~18:00) 대입수시논술 특강을 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에 의거 민원의 조치 및 제재 (단속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학원의 위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인 교습활동을 하는 것은 학원의 위치와 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08. 26.

교습행위 범위

수학, 역사 등의 교습과정을 강사가 놀이, 스토리텔링(동화구연), 체험활동을 통해 사고력, 표현력 등 확장, 통합적 사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학원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시설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이 이루어진다면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수업방식을 동화구연,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 06. 10.

체육교습의 학교교과교습 해당 여부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되는지?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7360 2009. 12. 16.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학원 교습과정 해당 여부

영유아 대상 창의놀이 프로그램 (요미요미), 유아 미술 퍼포먼스 교육프로그램 (미술,재미) 등 운영이 학원 관련 법령에 의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수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 (학습방법)를 통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원법령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임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으면 될 것임

[참조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년도 3654 판결의 사례는 2007.3.2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전 판례로, 학원법 개정으로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유아를 포함함. 창의력, 사고력은 교육의 목표 (모든 보통교과의 목표는 창의력, 사고력 신장임)이지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이 아님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 5704 2009. 10. 15.

음악학원에서 피아노와 성악 등 2개 교습과목 운영 가능 여부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음악학원으로 등록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성악과 피아노를 교습하는 것이 가능한지?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3의 별표 2와 같으므로, 교습하는 피아노 및 성악이 "초·중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 음악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봄

교육과학기술부 6284 2009. 11. 13.

학원 교습과정 분류 관련

1. 진학지도계열의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별도의 시설면적 추가 확보 없이 입시학원에서 "진학상담지도" 과목 추가만으로 교습비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2.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A, B 둘 이상의 교습과정 등록·운영 시 A 교습 과정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B 교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A 교습과정 시설면적만으로 B 교습과정 강의가 가능한지 여부

학원법 제8조 (시설기준)에 따르면,"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르면"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할 것인 바, 입시학원에서 '진학상담 · 지도'교습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진학상담 · 지도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시설면적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이란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자이고, 학원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원에서 행하는 교습행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원법에 따른'학원'에 해당되어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04. 25.

SAT의 실용외국어 해당 여부

현재 교과부에서 정한 실용외국어 항목에 일선 교육청에서 SAT를 포함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또한 교과부에서 SAT를 실용외국어로 정의하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학원법상 실용외국어의 범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및 별표 2에 의한 학교교과 교습학원 국제화 (분야) - 외국어계열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 등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습과정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상 교습과정의 범위, 위반, 규정 등 관련 :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 학교교과 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인 (개인 또는 사법인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한다면 비교과활동이라 하더라도 학원법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설립·운영등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등록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종류는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하였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6. 18.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습 시 교습과정 분류

어학원이라 하면 보통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습학원의 경우는 어느 곳에 속하는지 애매합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습대상과 상관없이 어학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성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은 과연 무엇에 속하는 것인지요? 어떤 학원에 속하는지 교육청에서도 혼선이 있는듯합니다.

어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 성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 어느 학원으로 신청해야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육청에 알아봤으나 명확히 답변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 어느 학원으로 신청해야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육청에 알아봤으나 명확히 답변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한국어 교습이 어느 교습과정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교습과정의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국제화분야에 속하며 동 교습과정에 한국어를 포함하여 등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의 설립·등록 및 지도 감독은 교육감 소관에 해당하므로 실제 등록에 관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07. 27.

학원 교습대상 범위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을 보면 외국어, 독서실 계열의 교습대상에'유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몇 세를 말하는 건가요? 또한 예능과 기타계열, 특수교육의 경우 교습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원법상 유아의 범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에 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표에서 예능, 기타는 교습대상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았으나, 학원법상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초·중등학생 모두가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11. 08.

학원 등록 대상자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 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초·중등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고자 한다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12. 05.

간호조무사 학원 입학 대상

간호조무사 학원 입학 시 고3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생 및 동등이상의 학력 소유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만이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나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학생은 입학이 불가능한가요?

지난 '11. 7. 25.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 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 기술분야에 속하는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하여 학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09. 23.

경락 관리 등 의료분야의 교습행위 법 저촉 여부

발 관리나 경락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시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발 관리와 경락 관리 교습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교습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요? (시술행위가 아니라 교습행위에 대한 질의임. 교습행위가 학원법에 저촉되는지 유무)

반영구 화장이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질의 (2004) 답변서를 보아서 알았습니다. 또한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 시술행위는 불법이나 교습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학원에서 교습하는 행위는 가능한지요? 2004년 교육부 답변서를 보면 의료분야는 학원분야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교습 불가라고 되어 있던데, 현재도 그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 분류표에서 반영구 화장법 교습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 반영구 화장법은 실습과 이론을 겸해야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이를 교습만 허용할 경우 법망을 피해 실습과정을 운영할 개연성이 높고 앞으로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는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11. 27.

학원 내 강의를 녹화하거나 실시간 송출할 경우 원격학원 등록 여부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에서 소속강사의 강의를 녹화 혹은 실시간 송출하여 해당 학원 강의실의 학습자가 교습을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운영해야 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등록된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습 방법에 대한 사항은 학원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학원에 등록된 강사의 강의를 녹화 또는 실시간 송출하여 학원 내 강의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습 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갖춘 강의실 내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 이러한 학원을 원격교습학원의 형태로 볼 수는 없으며 일반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의 일종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 8. 10.

독서실의 동영상 강의 또는 학습자료 제공 시 학원 등록 대상 여부

독서실에서 동영상 강의 또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독서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의 동영상 강의 제공시 단순한 학습장소 제공이라면 학원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나, 독서실에서 제작·제공하여 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원격교습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시설로 등록·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습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단순한 자료 제공이라면 학원법상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습이 이루어질 경우 학원으로 등록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학생대상 캠프 등에서 교습 행위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의 단기 방학캠프의 학원법 적용여부 및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캠프 형태로 교습이 가능한가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사인이 10명 이상 (9명 이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록 교습과정별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의 합계가 30일이 넘는다면 학원법 제2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교육감이 정하는 시설 · 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학원설립 · 운영자가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인 교습활동을 하는 것은 학원의 위치와 시설 ·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합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숙학원으로 등록·운영하려면, 같은 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5조의2에 따라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인이 30일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가 있는 사람·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지역교육청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교습소)으로 등록(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1. 05.

학원법에 저촉 여부

1. 일정 장소에서 일정한 인원(10명 이상)이 일정한 교육을 반복하는 행위를 학원법에서 학원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매주 1회, 정기적인 날짜에, 30명 정도의 인원이, 일정한 교육(뮤지컬) 강습을 하며 한 달 단위로 수강료를 받는 경우, 이는 학원 및 교습에 포함됩니까?

뮤지컬 강습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 단순 동호회 차원에서 실비수준에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실 경우라면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습과정별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라면 그 일수의 합계가 30일이 넘는다면 학원법 제2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습형태, 수강료, 교습장소,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9. 24.

보습 학원에서 외국어 자격증반 운영

외국어학원 시설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보습학원으로 교습과정을 변경하고 종전에 했던 외국어 과정 수업 성인/자격증반 수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습학원에서 일본어 능력 시험반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학원은 등록된 장소에서 등록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일본어과정은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강의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오나, 교과과정에 한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습은 외국어학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입시보습학원에서 성인을 교습하는 것은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니 자세한 행정처분 및 학원 관리에 대하여는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 12. 03.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병행 설치 가능 여부

성인과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원을 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럴 경우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외국어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어과정을 각각의 교습과정으로 보아 종합학원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 2에 따라 학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학원의 종류를 교습대상으로 구분하고, 유아 및 초·중·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심야교습시간제한, 교습비 조정명령 가능, 유해시설과 동일 건물 내 입점불가,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하나의 학원으로 등록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추후 학원법 개정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4. 04. 11.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영어캠프 운영 등

외부의 업체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하여 지자체의 영어사업을 위탁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초중등 대상(학원법상 학원등록이 필요한 과목)의 과정도 개설 할 수 있나요?

외부사설업체가 지자체 교육사업에 공모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평생교육법」제29조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각급 학교(대학 포함)의 장이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는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외부사설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현행,「학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2017년 교육부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대학 포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시하는 어학캠프에 한하여 초중고 학생대상 교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9. 03. 10.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보습학원에서 유치부(유아:만3세~7세) 교습과정 등록 및 교습행위가 가능한가요?

현행,「학원법」제2조의2 제1항제1호에서는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분류하면서 교습과목만 또는 대상을 포함한 교습과목으로 정의하고 있어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을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교습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아대상 교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9. 12. 10.

학원의 등록 가능한 교습과정 문의

법학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제2항에 의거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인문사회, 자연〉인문사회, 자연〉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의 교습과정이 있습니다.

- 말씀하시는 '법학 관련 내용'은 이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세한 사항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을 담당하고 있어 학원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20. 01. 10.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을 한 곳이고,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고등학생을 교육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대상이지만, 고등학생이 직업교육이나 취업을 위하여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학습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종류에 따라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2022년 전화문의

드론 교습과정에 대한 학원 등 설립(신고) 처리 안내

'드론' 교습과정에 대한 학원 등 설립(신고) 처리 안내

현행 법령 상 '드론'은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말하며, 이를 활용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무등록 운영 시 벌칙 부과)

* 농약살포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 조종교육 등

향후, '드론'을 활용한 조종교육 등 학생 또는 성인 대상 교습과정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으로 등록·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바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 3. 26.

미용학원의 교습과목 등록 여부

미용학원에서 의료법상 안마사의 업무인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등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교습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미용학원은 주로 국가자격의 일종인 '미용사'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서, 그 교습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미용업'의 정의인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영업' 행위 내의 지식, 기술을 교습하는 것이므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위한 물리적 시술 교습과정을 운영함은 부적절하리라고 보여집니다.

〈 '피부미용'과 '안마'의 구분 〉

구 분	피부 미용	안마
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목 적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
업 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 관리·제모·눈썹 손질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등을 통한 물리적 시술행위
교습시설	미용 학원	안마수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 7. 17.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성인반 별도 운영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성인반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별표2]에 따라 실용외국어 학원과 독서실은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된 대상이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전체 수강생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시설을 성인이 함께 수강을 하거나 이용하여도 주된 대상이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인 경우에는 성인반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2017 학원법 질의답변사례집

다 설립자와 강사의 자격

기간제 교원의 학원 설립 자격

학원 설립자 또는 강사를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임용할 수 있으며, 동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교직발전기획과 2007. 04. 12.

외국인의 학원설립 여부 및 절차

외국인이 학원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0호에 의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로 학원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등에 의하여 1인당 5천만 원 이상 투자 신고한 법인 설립 후에 법인명으로만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2. 개인이 5천만 원 이상 투자 신고한 후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외국인 투자 신고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법인 설립에 의한 학원설립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명이 표기가 됩니다.
2. 또한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에 의한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 직접 투자는 기본적으로 학원을 신규로 설립하실 경우 먼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송금한 투자자금을 환전한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하시면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학원 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의 형태로 학원을 설립 할 경우에도 회사 설립 등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업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0조2항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외국환은행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처리는 외국환은행 본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2007. 02. 06.

자격증 소지자의'실무경력'의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예를 들면 미용)에서 실무경력이란?

미용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용실 등 미용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교육부 소리함 번호 15544

러시아인 E-2 (영어회화 강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

영어 강사를 구하려 하는데,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였고 공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러시아 4년 영어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E-2 비자를 영어강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지요.

외국어 회화지도강사의 자격요건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 제한됨으로 러시아 사람의 영어영문학 출신은 회화 영어강사 자격요건 (러시아어 강사자격요건은 충족됨)에 해당되지 않음

출입국관리국 사이버 질의응답 번호 27819 2002. 02. 18.

필리핀인 E-2 (영어회화 강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

필리핀 영어 강사 채용 가능 여부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회화강사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회화지도는 언어구사능력뿐만 아니라 그 언어권의 사회, 문화, 관습 등을 익히는 교습활동이므로 양질의 외국어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 자격요건을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에 한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는 단순한 언어구사능력 외에도 그 언어권의 사회, 문화, 관습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만큼 원어민이 아닌 영어실력 능통한 자에 대한 회화지도 (E-2)사증발급은 현행법령상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입국심사과 2002. 10. 02.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 시 강사 가능 여부

학원 강사 채용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인 자입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한국인으로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지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이 됩니다.

문의하신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학원 강사 자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민원 2009. 02. 25.

새터민 (탈북자)의 강사 등록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강사채용 업무입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학원 등록을 하면서 본인이 학원의 강사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기에 북에서 넘어올 당시 아무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강사채용을 할 시에 어떤 확인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일반 강사를 채용할 시 (내국인) 주민번호, 주소, 성명,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졸이상)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합니다. 어떤 확인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새터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등에서 제반 사실을 확인하고 통일부 주관으로 일정 적응교육 등을 거친 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은 새로이 신고 또는 부여받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새터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 통일부에서 개인별로 학력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6. 07. 07.

미등록 학원 강사의 경력 인정

학원 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원장님이 지역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 경우 경력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학원 강사의 경우에도 경력 증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면 제 호봉 책정에 조금 손해가 있는 것 같아서 늦게라도 강사 채용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문 올립니다.

학원 강사 미등록으로 인한 사항은 민원인을 채용한 학원장의 확인 또는 기타 공적인 사실관계 증명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2007. 01. 15.

전공에 따른 강사 경력 인정율

전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학원 영어강사를 2년 이상 하고 있고 강사로 등록될 경우 후에 학교 교사가 되면 50%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학과 졸업자만 인정되는 것인지요. 저는 이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방통대영문과 재학 중이고 대학원 이수 후 임용준비하려고 합니다. 학원 경력 인정이 전공과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학원 강사 경력 환산율은 전공과 관련이 없으며 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로서 활동한 경력은 5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경력은 3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의 강사경력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국민신문고 2006. 07. 24.

강사의 경력 증명 발급

저는 작년에 한 보습학원에서 1년 넘게 강사를 했었는데 학원 강사 경력을 정식 교원이 된 다음에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학원의 경력증명서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가 있고, 교육청이 강사로 임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지역교육청에 임용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에 신고된 경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경력은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교육청에서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2006. 09. 08.

D-2 자격 소지자의 강사 가능 여부

D2 (유학비자)를 받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외국어 학원 강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채용허가가 가능한지요? 현재 국내 대학원생인 경우 학원 강사 채용을 불허하고 있으며, 유학 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 즉 S-3를 받았다하여도 대학원생의 신분이므로 강사채용이 불허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께서는 전화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www.moj.go.kr) 질의답변을 보면, 유학비자로 온 학생이더라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서 등의 일정요건을 가지면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회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의 답변과 법무부 답변이 상충되오니 이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요구 자료를 갖추어 S-3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법무부지침), 전공분야와 밀접한 분야의 외국어 강사 등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2006. 09. 08.

E-2 자격 강사의 근무 가능 학원 수

저는 사설 영어학원(강남구청 SDA)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 외국인 영어교사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원어민지원교사로 지원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인지 알고 싶고, 어떤 자격요건을 가져야 하는지, 또 필요한 서식도 (영문서식) 궁금합니다.

회화강사 (E-2) 자격소지 외국인강사 (학원 근무)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회화 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 근무처 추가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근무처 추가 신청서, 원 근무처인 학원장의 동의서, 출강계약서, 수수료 등을 지참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바랍니다

※ 설립자가 다른 사설학원에는 근무처 추가를 할 수 없음. 설립자가 같은 (회계 관리나 노무 관리를 같이 하는 학원) 학원에는 근무지 추가 신고를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하면 최대 2개 학원까지 근무가 가능함

법무부 2005. 01. 22.

F-2-1 자격 외국인의 학원 강사 가능 여부

2005.9.25부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되어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2-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체류 자격 외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리핀 여성이 F-2-1 자격으로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은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동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며, F-2-1 체류자격 소지자가 학원 강사로 활동할 경우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도의 취업활동 허가의 절차를 받아야 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학원 강사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 09. 08.

F-2-1 자격자의 취업 관련

저희 남편은 중국인으로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발급일자는 1월 29일이며,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초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2년제 대학졸업자입니다. (공증 받았음) 제가 알아본 바로 F-2-1 비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의 대학졸업자라는 개념은 2년제를 포함한 대학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인 교사 채용 규정에도 대학졸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음) 왜 동등한 자격을 가진 남편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기를 학위 (4년제)가 없어서 교육계에 종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지요

○○○님 배우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내국인 배우자로서 F2 비자를 얻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체류자격은 취업 자체가 제한되거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취업예정기관의 취업 허가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만의 취업이 제한되나, F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취업기관 및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외국민의 구분은 존재하므로 국내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외국인의 자격요건 (학원 강사의 경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외동포라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교원의 임용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교원자격을 얻어야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되므로, 중국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의 학교에 임용되기 위하여는 국내 대학에 진학하시어 교원자격을 얻어야 하며 다만, 각급 학교에서 방과 후 또는 특기적성을 위한 강사는 법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교육분야 및 특성에 따라 각급 학교 또는 담당 교육청에서 그 요건 및 자격을 정하여 임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04. 01.

예능분야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

일반 학원 강사의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시 학원은 괜찮지만 예능분야 학원 강사는 해당분야 전공자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피아노 학원 강사면 음대 졸업자이어야 한다든지 등 예능 분야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학원 강사 자격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학원 강사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 강사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예능분야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해당 시·도 조례 등에 교습과정별 학원 강사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학원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06. 09. 08.

재외동포의 강사 자격 기준

재외동포의 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현행 교육법상에서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은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으며 예외로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재외동포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강사 자격을 학원법에서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이 초·중·고 학생은 물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주요한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와 학습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강사의 자질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 (법무부) 및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내국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8. 04. 11.

보습학원의 E-2 자격 외국인 강사 채용 불허

일반보습학원에서 영어수업에 원어민 채용 (E-2) 불가에 관한 부당성

전 현재 영어보습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영어보습학원 운영 중에 외국인 채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학원법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학원법에 보면 동일한 영어를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더라도, 어학원은 원어민을 채용해서 영어강의를 할 수 있지만, 보습학원은 어떠한 형태로도 원어민을 채용해서 수업이나 기타 활동 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영어교육 방침 등으로 원어민이 없는 영어수업이라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정부나 사회로부터 홀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보습학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암암리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어수업을 하는 모든 학원에서는 원어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학원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원법상, 외국인 강사기준 (학원법 시행령 12조 제2항 관련 별표)에 따라,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법에서는 보습학원 등에 외국인 강사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어느 나라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학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학원법의 외국인 강사 자격을 충족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당해 교습활동에 관해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강사로 채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류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8. 04. 24.

재외동포 (F-4)의 학원 강사 자격 문의

재외동포가 학원 강사를 할 경우 학력이 외국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3학년 때 휴학을 하여 휴학증명서를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 (F-4)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원법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3학년 때 휴학한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07. 22.

무등록 학원 운영에 따른 벌금형 선고자의 강사 채용

무등록으로 불법학원을 운영하다 벌금형을 받아 1년간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타 학원의 강사로 채용될 수 있는지요?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 2]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 별도로 정한 학원 강사 결격사유는 없으나,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시 제한을 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며, 그 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 조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학원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07. 20.

방송통신대학 수료자, 산업체 위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강사 자격 유무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4년제로 2학년까지 수료하면 이곳도 일반 대학교처럼 2년제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입시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공업대학의 산업체 위탁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근로자가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졸업하면 이 또한 입시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대학 (산업대학 · 교육대학, 방송 · 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학원 강사 자격기준 2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산업체위탁생으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하였다면 학원 강사 자격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원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07. 05.

외국대학 학점 기준 강사 자격

학원 강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내의 학원 강사 기준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 또한 제적생은 80학점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 학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교육 체계가 2년제는 60~68 4년제는 120~130 학점을 이수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준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60점대 학점을 이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인정하는 80학점이상 이수를 하려면 3년을 다녀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학원 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학원 강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보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 강사 자격기준 제9호에 의거 외국인의 경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이수학점이 아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국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참고로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학력이라 함은 반드시 80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대학의 경우 2년 내지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평생학습정책과 2007. 08. 17.

대학 2년 중퇴 후 타 대학 1학년 수료자의 강사 자격 유무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있어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재학 중인 자도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던데요.
한 대학 2학년에 중퇴하고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여 1학년을 마쳤을 경우 두 학교의 학점을 합해야 80학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학원 강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또는 동등학력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며, 동등학력이라 함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 내지 3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이수라 함은 단순한 학점의 합산이 아니라 순차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학생의 경우 대학 2년을 중퇴하고 다른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후 80학점을 이수하였다 할지라도 동등학력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8. 01. 25.

4년제 대학의 2년 과정 수료의 의미

현재 강사 신고 기준에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교육청에 가지고 가면 강사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년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4년 과정 중 2년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는 강사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학점에 정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면 국내 대학마다 학점 이수기준도 틀린 상황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 강사 자격기준 (제12조 제2항)의 구분 6번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사용되는 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과정의 이수는 개별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의 학칙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동 기준을 만족하였다면, 현재의 신분이 재학, 휴학, 자퇴생 신분이어도 모두 강사자격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6호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라는 규정은 1995년에 강사자격 기준에 학력요건이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 졸업으로 강화되면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거나, 강사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따라서 95년 이전에 학원 강사를 하시고 그 당시 2년이상 전임의 교습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 10. 13.

강사 채용 시의 성범죄 조회 관련

1.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학원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성범죄 및 대상기관의 종류·적용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3. 단시간 (1일 강사, 1주일 강사) 근무자도‘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까?

2006.6.30 이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6.30 이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2006.6.30 이전의 성범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6.30일 이전의 범죄는‘없음’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제도는 지난 2006.6.30일부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5년 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8.2.4일 부터는 취업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2010.4.15일부터는 대상범죄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확대 및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 강사의 경우도‘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안내책자 2012. 07. 11.

성범죄 경력 미조회 해고자의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외국인 태권도 사범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 태권도 사범이 동의하지 않아 해고조치를 하였을 경우 동법 제54조 (과태료)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제5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됨

동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경력자에 대한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반드시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임

따라서 본건에서 체육시설의 장이 외국인 태권도사범을 채용할 당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도록 하였다면 이후 취업 중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44조 제3항“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성립되므로 원칙적으로

동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것임

다만, 법 제54조 제2항 과태료 규정이 2010. 1. 1.부터 시행되었고, 법 제44조 제3항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확인의무도 부과하고 있으므로 2010. 1. 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부과 여부가 달라질 것임

① 2010.1.1.이전에 태권도사범을 이미 채용한 상태였다면, 과태료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취업 중인”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동법에서는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확인의무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체육시설의 장이 2012년에 이르러 비로소 취업 중인 외국인 태권도사범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태권도사범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해고까지 한 것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임

② 2010.1.1.이후 채용한 것이라면,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 제44조 제3항 의무위반이 성립되고, 과태료 규정도 적용 가능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이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태권도사범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해고까지 한 것은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주지 못함)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012. 06. 14.

고등학교 졸업자의 강사 자격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속셈학원에서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자가 보습학원 강사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 강사의 자격은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중 제6호의 기준은 ’95.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들을 인정 (구제) 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이후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되며,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09. 13.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로 학원 강사 등록 가능 여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80학점을 취득하여 2008년 2월에 전문학사 취득 예정자인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를 가지고 학원 강사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같은 법에 따라 일정한 학점 (80학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학력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위수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에서 학점인정에 따른 학력인정절차와 학위취득절차를 구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기만 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취득 여부는 학력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11. 08.

대학 전임 교원의 연구 목적 학원 무임 강의

저는 현재 한 대학의 전임 강사 (산학협력전임교원) 입니다. 제의를 받은 학원은 초등 전문회화학원입니다. 프로그램과 교재를 편성 해 주었으며 회화 특강을 제안 받아 주 2회 정도 무임으로 출강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의하신 대학 교원의 학원 강의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대학 교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제도과 및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정책과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학 전임교원이 연구목적으로 무임으로 학원에서 강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외교습"이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해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교습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라면 회화 또는 교과목에 관계없이 교습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법령에 의거 근로청소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및 도서벽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교습하는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에 대하여만 예외로 정하고 있는 바,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학교원은 학원에서 강의할 수 없다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01. 20.

학원 강사 등록 조건

4년제 대학 2학년을 수료 학원 강사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사례집에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3학년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 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적 당시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전부 이수하였다면 강사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과정 이수 여부는 개별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시어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4. 13.

▌학원 설립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칭함)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원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보면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이 제한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서는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는 바,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고발조치는 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설립신청을 하였을 경우,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학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학원법 제9조 (결격사유 등) 제1항 제4호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선고 전에는 유죄로 확정되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학원설립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01. 20.

▌대학재학생 강사 자격

1.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으나 대학 재학 중인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 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11. 28.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내국인으로 외국대학 휴학 중입니다. 학원 강사등록이 가능할까요? 등록이 가능하다면 성적증명서나 수료증(수료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지요?

「학원법시행령」 제12조제2항[별표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2호에 의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대학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국인 강사 채용 관련 서류는 학원 등록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관련 지침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학원 등록 관련 권한은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있어 학원 강사 채용 및 관련서류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20. 11. 05.

외국대학 졸업한 한국인 강사의 신고 서류

안녕하세요.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학력증명서에 자국 정부의 확인 (apostille)을 받아서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강사에게도 해당 대학이 소재한 정부로부터 확인 (apostille)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강사도 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강사에게 적용하여야 할 법을 임의로 한국인 강사에게 적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다른 나라에서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 공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에서 그 졸업증명서에 대해 효력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공증을 통해야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7.1.자"외국서류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Apostille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나라간의 공문서에 대하여 간편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아포스티유 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약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및 효력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 영사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 07. 15.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운영자 (교습자) 자격이 되는지 해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습소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자라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기에 학원 강사 자격기준 제5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데, 자격증 (국가공인 한자 2급)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제5호 규정으로 볼 때도 공인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한자2급)은 동일 대우할 수 있는 개별법령이 없고, 제3호 및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볼 수 없어서 그 또한 안 된다고 하기에 동 규정의 해석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2] 3내지 5호에 의한 학원 강사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호에 의한 학원 강사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어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인 자격기본법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9. 09. 25.

▌재외동포 (F-4)의 학원 강사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

현재 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2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고,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외동포를 외국인으로 보면 4년제 대학학위가 있어야 하고, 내국인과 같이 보면 2년제 졸업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0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F-4 비자인 경우 2년제 졸업이상을 강사등록의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00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4년제 이상인 자를 등록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9호에 따르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 로 규정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재외동포 (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 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재외동포라 하더라도 학원법에 의한 자격 즉 대학 (4년제) 졸업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학원의 강사 자격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0. 03. 28.

학원 강사의 자격의 문제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한 지금 저의 학점이 75학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 강사로 취직이 가능한지요? 학원 강사 자격이 없다면 불법으로라도 취직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2에서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70조 제1항 및 1호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 학점 및 학사운영은 학교의 장이 정한 학칙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민원인께서 이수하신 학점이 2학년 과정을 수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어 학교에서 정한 2학년 수료 이수 학점을 안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0. 03. 11.

사설영어학원 강사 인적정보 공개해야

사설영어학원 강사에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허위 공개해놓고 강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설립 운영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학원법"」 - 제13조 (강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에 의하여 강사의 연령,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원법 제17조 및 각 시·도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은 학원장이 학원 강사의 학력을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학력을 게시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05. 20.

과외교습 중지명령 받은 경우 학원교습도 못하는지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인과외교습 뿐만 아니라 학원의 교습행위까지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뜻인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 제17조 (행정처분)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은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것이 학원법 제13조 (강사 등)에 의하여 강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학원법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에서도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과 별개의 문제로서 개인과외교습을 제외한 교습소 설립과 학원 강사로서의 자격은 가능하다고 보여짐 다만, 학원법 제22조 (벌칙) 제1항 제4목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동법 제9조 (결격사유 등) 제1항 제4목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은 제한된다고 사료됨

평생학습정책과 2011. 05. 19.

학원경력 및 강사등록 절차

학원경력관련 실무경력이 교습과목과 동일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인지요? 아니면 동일 하지 않아도 되는 3년이상 실무경력 인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호과 관련하여 별표 2 4.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바, 강사를 등록하고자 희망하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바, 인정받고자하는 실무경력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였던 경력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사업운영기간이 3년 이상으로 사업수행실적을 인정할만한 서류)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03. 31.

학원 강사 채용 가능 여부

ㅇㅇ신학교 (대학교가아님) 유아교육과 졸업자로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로서 2년~3년의 경력사항이 증명됩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 (유아, 초등 대상)의 학원 강사로 채용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강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4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바, - 동 조항에서 '실무경력'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강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하였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 인정이 된다면 학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적 당시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전부 이수하였다면 강사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과정 이수 여부는 개별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시어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2. 28.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제한

내국인 강사의 학력기준은 전문대학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의 경우 4년제 이상 마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졸업 이상이란 college와 university를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라마다 학년제가 다르고 college와 university만으로 학년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기준을 정확히 알려 주세요

외국인강사에 대한 대학졸업 이상이란 college와 university의 명칭을 떠나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 05. 02.

원어민 (중국인강사) 채용 시 구비서류

원어민 (중국인) 원어민 강사 채용 시 구비서류가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범죄사실 증명서 와 역시 공증 받은 졸업증서 그리고 한국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은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이 한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했다면 구비서류 중에 공증받은 졸업증서 대신 한국 대학원의 수료증서 및 수료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강진단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강사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했다면, 한국의 대학원 입학 시 중국에서의 대학교 졸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학원 수료증명서로 학력증명서를 갈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사의 채용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된 사항이오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 09. 17.

학원 강사 자격 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미술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강사자격이 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강사자격과 관련하여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3 에서는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강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항에,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원법시행령 제12조 학원 강사 자격기준 [별표 3] 제8호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법령에서는 기능과 예능을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시행령 제12조 학원 강사 자격기준 [별표 3] 7호의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으로 봄이 타당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미술대전에서의 입상실적은 기능대회 입상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4. 06. 12.

국립대 강사 학원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문의

국립대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학원 사업을 병행하고 싶은데, 강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원 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여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대학의 강사의 경우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원법」 제3조에 따라 대학의 강사의 경우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에도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학의 강사가 「학원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설학원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평생학습정책과 2019. 12. 04.

라 학원 시설과 건축물

실습실의 단위시설 기준 면적

컴퓨터학원의 실습실 기준이 60㎡이고, 동일건물 4층 50㎡와 3층 15㎡를 합하여 65㎡로 학원등록 가능여부 (실습실의 면적은 45㎡이상이나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나의 실습실은 채광, 환기 등 교육환경을 위하여 45㎡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칸막이는 벽면이 아니라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로 공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소음, 실습형태 등을 위하여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3층에 45㎡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433 2000. 10. 12.

유치원 건물 내 학원 설립 불가능 이유

유치원 건물 (4층짜리건물, 3층까지는 유치원으로 등록되었음)에 외국어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유치원 건물 안의 계단을 통해서 학원으로 올라가는 관계로 외국어학원 설립이 불가한 이유? (유치원은 임대 등이 불가함으로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4층 벽면에 계단을 설치하면 가능한지?)

유치원 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 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외) 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950 2002. 05. 01.

학원의 부대시설

미술학원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목적으로 주방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주방에 가스렌지를 설치하여 조리를 해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설치가능한 시설의 범위 안에 급식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부대시설은 학습자의 편의제공 시설로 강당, 사무실, 회의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실, 휴게실, 양호실이 해당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671 2002. 11. 02.

복도 없이 강의실을 통해 이동 시 학원 설립 여부

보통 단과학원이나 외국어학원의 경우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복도가 있어 복도를 통해서 강의실을 출입하는데 "복도가 없이"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로 가는 구조의 경우 학원의 인가가 날 수 있습니까? (면적은 기준이상)

학원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한 가지가 수강생의 입장에서 학습 환경, 안전 환경을

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을 출입하는 것은

1. 학습자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있습니다.
2. 화재 시 등 대피 시 미로구조로 인하여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원의 시설설비 규정에 소방시설에 맞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848 2002. 12. 11.

학원의 사무실도 건축법상 학원 용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동일건물 내에 5, 6, 7층을 학원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6, 7층은 강의실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 5층은 학원사무실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지?

5층을 사무실로만 사용한다 할지라도 학원교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5층도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 소리함 번호 3417 2003. 03. 13.

직통계단의 설치

5층에 각각 거실면적의 합계가 학원용도로 180제곱미터, 노인복지시설로 100제곱미터 시설을 할 경우 직통계단은 몇 개가 필요한지?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학원·아동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전체 280제곱미터가 되므로 직통계단 2개를 설치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질문모음 48 2003. 05. 26.

보습학원 내 랩실 (어학실) 설치 가능 여부

보습학원에서 영어교과를 가르치고 있을 때 영어교과에 말하기 듣기 등의 학습내용이 있는데, 말하기 듣기 교육을 위하여 보습학원에서 랩실(어학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법 제8조에 의거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어학실을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하여 갖출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은 수강생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3536 2003. 03. 28.

건축물 용도분류 시‘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 포함 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지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 (복도,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국토해양부 2009. 08. 27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으로 학원설립 가능 한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서"를 얻어 제출하였는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로 학원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학원의 건축물은 용도에 적합하고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해도 좋다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면 타 업체들의 입주 가능성 그리고 행정구청에서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먼저 등록한 후 건축물대장 등본을 제출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6. 11. 02.

건축물 용도 신법 적용 여부

구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학원에서 변경등록신청 (위치, 교습과정, 시설·설비 변경 등)시 "건축물 용도 등"을 신법에 의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위치, 시설·설비 외 건축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을 요하지 않으며,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11. 1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교육시설의 의미

입주민이 외부 사교육 전문업체에 영어마을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영어마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표시된 주민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지와 동 규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민교육시설"의 의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주민교육시설"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주민 자율의 외국어 등 교육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로서 질의에서의 영어마을이 동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주민교육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란 의미는 입주자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동 시설공간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2012. 12. 13.

학원이 전 층을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저촉 여부

가.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이란 복도, 계단 등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일반건축물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전용부분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 2층 전체를 임대해서 쓰는 학원이 2층의 엘리베이터 앞 홀 부분을 학원과 경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저촉 여부

가. 우선, 해당건축물은 각 층의 전유 / 공용부분의 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획하지 않는 일반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이용 및 관리상 필요에 따라 관련규정 허용 범위 내에서 실의 구획 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부분은 건축물대장 도면상 구획되어 있는 벽체를 해체해 2층 전체를 하나의 실로 변경하여 학원으로 사용하는 2층 전체부분과 엘리베이터홀 부분이 경계 없이 사용되는 사항으로서 해당 변경사항이 내력벽이 아닌 벽의 해체나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벽을 해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 2013. 02. 28.

건축물 용도 산정 방법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73호, '14.3.24) [별표 1]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 면적 산정방법이 변경 되었다고 들었습니다.'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과 집합건축물은, 구분소유자 (임대한 경우는 임차인으로 본다) 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각 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용도의 규모와 이용 상황을 감안한 것이므로,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하여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관련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②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아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674 2014. 05. 08.

학교시설을 이용한 학원 운영

학교시설 개방 관련 사무는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관에서 특정 학원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해서 학원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이나 여가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이나 동호회 등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특정 단체 (학원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16. 08. 30.

원격학원 설립 시 허용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 관련

14.10.14.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개정을 통해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 '학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되었음.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설립시 허용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고,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학원의 설립시 허용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현행 오프라인 학원의 건축물 용도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 07. 10.

학원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 가능 여부 질의

교습학원이나 음악학원에서 오전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법 또는 교육관련 법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간 임대 등 추가 사업자등록 및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학원법」의 소관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법」 관련 법령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학원의 시설내에서 다른 사업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20. 04. 20.

스터디카페 지도·감독 요청

중학생 여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그동안 독서실에서만 공부했던 아이가 시험기간에 친구들을 따라 스터디카페라는 곳으로 옮겼었는데 학습공간이 남녀구분이 없이 여학생 옆에 남학생이 앉을 수도 있는 제한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스터디카페는 현행법상 공간임대업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 등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학원이나 독서실등 「학원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도·감독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2022년 전화문의

참고

※ 스터디카페 불기소결정서

►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2017. 3. 20.부터 2017. 7. 17.까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 도서관'이라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중략)

- 하지만 피의자는 위 시설은 소위 '스터디 카페'로서 이용자들로부터 음료, 다과 등을 판매하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용자들은 공부, 영화, 음악 감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학습장소 제공만을 목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독서실은 운영자에 의해 학습목적으로 그 이용이 제한되는 반면 위 '스터디 카페'의 경우 ① 이용목적에 제한이 없는 점, ② 이용요금은 자유이용 또는 월정액제로 선택적인 점, ③ 이용고객은 학습 외 영화, 음악감상, 게임 등 다양한 목적의 고객인 점, ④ 지정좌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⑤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점, ⑥ 학습관리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객의 선택에 따라 학습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여 학원법 제정 당시 상정한 '학습목적으로 학습자에게만 제공되는 학습공간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서울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8399호 2017. 12. 6.)

참고 판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198 2023. 2. 2.]

【판시사항】

[1]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 연혁,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學院)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스터디카페 중 '스터디존'의 경우 좌석별로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이용자가 지정한 좌석에 대한 요금을 결제하면 일정 시간 그 좌석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70. 8. 3. 법률 제2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 3. 3. 대통령령 제12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항,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호)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 3. 24. 경 ○○스터디카페라는 상호로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를 처벌한다.

2)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을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교습행위 없이 학습장소로만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을 학원법상의 학원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다.

3) 그런데 학원법령은 학원의 종류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그 외 평생교육·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하고(법 제2조의2 제1항),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에 '교습과정, 강사명단, 개강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인 '원칙(院則)'에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며(법 제6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법 제13조 제2항),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법 제18조 제1항) '지식·기술·예능의 교습시설'을 전제로 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4) 학원법의 전신인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1961. 9. 18. 제정 당시 학원에 해당하는 '사설강습소'를 지식·기술·예능 전수 목적의 강습, 교습시설로 정의하였다가, 1970. 8. 3. 개정 시 '사설강습소'의 정의에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도 추가하였다(제2조).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 3. 3. 대통령령 제12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학원'을 '독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로,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로 정의하여(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학원'과 '독서실'을 명백히 구분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호)목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등도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5)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과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학습자의 이용 목적과 이용 실태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학원(學院)'의 사전적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원법은 학원의 정의에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 연혁,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學院)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 중 '스터디존'의 경우 좌석별로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이용자가 지정한 좌석에 대한 요금을 결제하면 일정 시간 그 좌석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시설에는 위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위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설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시설의 이용 요금은 2시간에서 24시간까지의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적인 '시간제 요금'과 28일 기준의 '4주 정기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권도 이용 기간은 30일 미만인 점, ⑤ 단속공무원이 이 사건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전체 좌석(95석) 중 6석이 '고정석'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 대부분은 일회적 이용 방식인 '시간제 요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마 유해업소

‘바’의 유해업소 여부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하려는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프집은 유해업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 (술먹는 곳으로 바텐더들이 있는 곳)가 호프집유형으로 들어가 유해업소가 아닌지 아니면 유해업소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학교보건법상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입니다. 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업종의 형태는 휴게음식점 (다방 등), 일반음식점 (음식, 한정식, 호프집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학교보건법의 적용이 되는 것은 이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바” (술먹는 곳으로 바텐더들이 있는 곳)가 노래를 하면서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유해업소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노래를 하면서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학교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술을 판매하면서 노래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형태라면 유해업소에 해당됩니다.

국민신문고 2006. 08. 22.

수평 거리의 측정 방법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서 “수평 거리”의 측정방법은?

1) “수평 거리” 측정 시 출발점은 학원의 출입문부터인지 아니면 학원의 칸막이 (벽체)로부터인지?
2) 수평 거리는 보통 물체 또는 사람의 이동거리라고 볼 때,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 “유해업소 (오락실) 출입구”까지로 측정 가능한지?

문의하신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측정”은 학원이 2층, 유해업소가 3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를 2층으로 수직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여 학원과 유해업소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06. 30.

초·중·고생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유해업소 제한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에 대해

가.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학교교과 교습학원만이 동법 시행령 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의거 유해업소 적용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속셈, 웅변 등 미성년자가 수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습한다고 할지라도 유해업소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분류된 기타계열에서 교습과정 내용을 보면,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데 여기서 뜻하는 교습대상이라 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혹, 교습대상이 초·중·고생을 의미한다면 초·중·고 생이 수강중인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속기, 웅변, 컴퓨터, 이미용, 바둑 등)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2] 교습과정 분류표상 일부 교습과정에 있어 그 교습대상 및 내용이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연히 동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04. 29.

바 학원의 명칭

▌학원명칭에 '국립' 사용가능 여부

저는 국립발레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학원을 설립하였는데, 명칭을 국립무용학원으로 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국립이라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명칭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국립발레단에서 정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립이라는 명칭사용이 안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설립한 학원이 국가에서 설립한 학원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립발레단을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가에서 설립한 것이므로 국립발레단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894 2002. 12. 20.

▌학원 명칭으로 형용사, '전문', 영문 사용 가능 한지

1) 학원명칭은 반드시 고유명사 + 학원으로 해야하는지? (형용사 + 학원은 등록 할 수 없는 명칭인지요?)
2) 학원 앞에 전문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는지요?
3) 학원명칭은 반드시 한글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학원의 고유 명칭은 학원을 일컫는 호칭, 이름으로 반드시 고유명사로 한정하여 해석할 사항은 아닙니다. 즉 학원의 명칭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 학원에서 사용하거나 법률에 위배 되는 사항 등은 행정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볼 때 형용사로 사용하는 학원의 명칭이 부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이라는 학원용어에 대하여는 타 학원은 전문학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학부모, 학생이 오해할 수 있는 이유, 과다광고 이유 등을 근거로 지도 감독권자가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영문명칭의 경우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983 2003. 01. 09.

학원 명칭으로 국호(대한민국) 사용 가능 여부

학원 명칭 사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원 명칭을 국호인 대한민국ㅇㅇ학원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국호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학원을 대표하는 표현이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용어 사용신청이 있을 시 관공서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인지, 대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314 2002. 08. 06.

학원 명칭으로 "영재교육원" 사용 가능 여부

학원 명칭이나 홍보물에 영재교육원이란 명칭 사용 문제

저는 학원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회사에서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경기도 지역에 있는 가맹학원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당사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로 운영 중인 "○○영재교육원"의 가맹학원이 해당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도 단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 내용인 즉, 학원 명칭이나 홍보에 "영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2.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프랜차이즈로서 사용해 왔던 것이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교육청에서"영재"나"교육원"이라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학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당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선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원"은 학원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학원 법령의 적용이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함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평생학습정책과 2007. 12. 18.

학원 명칭으로 학교 (School, Academy) 사용 가능 여부

학원 명칭으로 School, Academy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사 다음에 "학원"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등록된

학원으로 알고 명칭만 보아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런 취지로 보아“학교”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는“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914 2001. 09. 07.

학원명 및 학원시설 문의

학원이름을 정할 때 ㅇㅇㅇㅇ교실학원이라고 하고 싶은데 “교실”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인지 학원이름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로 학원 설립을 하려면 강의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강의실만 있어도 되는지요?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무실도 꼭 있어야 하나요?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습자 등으로 하여금 학원 이외의 시설로 오인하게 함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법규 위배 여부 및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하실 사례를 가지고 소관 교육지원청으로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 시설기준은 학원법 제8조에 의하여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관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5. 04.

사 교습비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수강료 자율 신고 가능 여부

학원 관련법이 개정되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어 평생직업교육과목의 경우 수강료가 신고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신고만하면 되는데, 교습대상 중에 학생 (초, 중, 고등학생)이 포함될 경우에는 수강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습과목 자체가 평생직업교육과목이라면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되겠지요?

학원은 학원법 개정으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수강료, 유해업소 저촉여부, 교습시간 등에 있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기타분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강료, 유해업소 저촉여부, 교습시간 등의 규제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원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교습과정의 재분류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상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12. 06.

무용학원에서의 작품비 징수 가능 여부

무용학원의 고가의 작품비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지도·감독청의 제재가능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와 실비인 기타경비를 학습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기타경비의 범위 (6종)를 정하였으며 이외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용학원의 작품비는 실비로 정산되어야 하는 기타경비의 개념과 맞지 않으며, 학원법에서 정한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습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품비 징수는 교육청의 지도·점검 대상이며 교습비 등 초과징수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 07. 10

가 (假) 등록금에 대한 전액 반환 여부

영국에 본원을 둔 와인 학교의 마케팅 팀 ○○○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정의 경우, 등록하기 전 가 (假) 등록제도 (10% 선급)가 있습니다. 가 등록제도는 수강하는 사람들이 강좌의 정원이 마감되기 전에 예약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록한 수강생들이 가 (假)등록금은 미리 지급한 후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어 강좌를 취소 요청하며, 가 (假)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가 (假) 등록금의 반환을 어디까지 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개강일 이나 개강 후 가 (假)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 측의 입장에서도 이미 가등록한 사람 때문에 다른 수강생을 받지 못하는 위험 부담 때문에 받는 금액이니 만큼 전액 환불은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학원의 수강료 환급과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 (假) 등록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 (假) 등록금은 학원 수강료에 포함되는 일부금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금액을 납부한다 할지라도 학원수강료에 해당되므로 동 법률의 환급규정에 따라야 수강개시 전에는 전액을 환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 및 대학, 전문학교에서 역시 수시등록 등을 통하여 예치금 (10% 이내)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학기개시 전에는 모두 환급토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06. 27.

학습자 모집을 위한 광고 시 수강료 표시 여부

학원 수강료 표시제에 대하여 이 제도가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전단지 뿐 아니라 벼룩시장이나 신문잡지 등에 줄 광고, 박스광고 전면광고를 하는 경우도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홍보에 대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학원법이 개정되어 2007. 09. 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강료를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 09. 23.부터는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광고할 경우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거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아닌 광고회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라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07. 20.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 교습비등

수강료 반환 기준일

학원 개강일은 9월 1일이고 제가 등록한 일은 9월 5일이라면 수강료 반환기준이 2/3, 1/2기준 시까지라고 하는데 개강일로 기준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제가 등록한 일로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학원법에 의한 반환기준의 교습개시 이후 수강료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 당해 “월”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의 월 기준에 따라 1월의 총 교습시간을 산정한 후 교습포기시점 교습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1/2 경과 전이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1/2를 반환하여야 하며, 1/2이 지났으면 미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09. 21.

프랜차이즈 학원 교재비 징수

학원사업을 하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원법이 개정되어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차량비, 급식비, 피복비, 기숙사비, 재료비)만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비는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교재 (가맹점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전용교재)이므로 일반 시중 서점 등에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하여, 우리학원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카드단말기 (교재비 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하며 본사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학원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11.10.25.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 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인터넷 또는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 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출판업체와 학원 설립·운영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에서는 교재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출판업체에서 제공한 카드 단말기를 학원 내에 설치하여 교재 판매 대행행위 (영수증 발급)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 (교재판매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4. 09.

학원 교재비, 차량비

> 개정 학원법에는 기타경비 항목에서 교재비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내 서점 사업자 신고등록 후 교재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차량비를 징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이 있나요?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원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 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차량비는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써 실비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경비 인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 및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12. 01.

학원 보충수업비 징수

> 학원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충수업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입시미술 학원들은 보충비를 징수해도 되는건지요?

'11.10.25.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외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첨삭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1. 12. 02.

학원 지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에 지로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원은 지로용지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일부 학원은 신용카드 결제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에 의한 별지 24호 서식에 의하여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습자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용카드영수증, 현금발급영수증, 지로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2011. 1. 28.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2012. 4. 9.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포기에 따라 같은 법상 소정의 권리가 소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사항이므로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이 불가함을 표시 (고지)한 경우 반환받지 못하며,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 불가를 미표시 (고지)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 범위 내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연기를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측이 잔여 수강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2013. 05. 28.

학원 환불 처리 기한 문의

학원법 시행령에 보면,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5일이라는 것이 영업일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휴가 겹치거나 할 경우에는 만약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 내 반환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원법 제18조, 동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교습비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학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4. 06. 13.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예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입상한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학원 측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소비자와 계약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시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20. 02. 06.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미용학원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정상가는 2,000,000원이나 할인된 가격인 800,000원으로 결제했습니다. 수강 중,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함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사업주 주장대로 중도 해지시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것이고, 따라서 기 이용료를 정상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개별약정 등으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을 완료한 경우라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22. 11. 11.

감면 교습비등의 교습비등 등록·신고 의무

형제·자매 할인, 장기수강생 할인 등 감면 교습비 등을 등록·신고 후 징수해야 하는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상 교습비 등의 감면은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습자나 학부모에게 이익이 되는 거이고, 교습비 등의 등록·신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며, 교습비 등의 변경 미등록·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교습비 등의

감면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습비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 학원 원칙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학원과 학생이 체결한 교습비등 반환 합의의 적법 여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학원과 학생사이에 별도로 교습비 반환에 관한 합의가 적법한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별표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합의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학습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0. 1. 23.

참고

※ OO교육지원청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회신 내용

1. OOOOOO(주)의 OOOOOOOOOO학원의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에 관한 귀 청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우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약관법상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산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결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그러나 현재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8조 및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이 별도의 환불규정을 둘 수 있다고 허용하지 않은 이상 모든 학원은 당해 법률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청의 질의와 같이 개별 학원의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는 학원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학원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환불규정을 둔 학원의 환불규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2011. 4. 21.

온라인 콘텐츠 구매 비용에 대한 징수 가능 여부

교습소 및 학원의 온라인 콘텐츠 구매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학원 등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구매 비용은 교습비에 포함하여 징수 가능하며, 기타경비로 징수 불가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구매비용은 교습비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며, 교습비 외로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온라인 콘텐츠라 함은 PC나 태블릿에 설치하여 말하기, 듣기 연습이 가능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 4. 14.

레벨테스트를 위한 경비를 기타경비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학습자 등록 전 학원에서 실력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레벨테스트에 필요한 경비를 학원법 제3조의2 기타경비(모의고사비)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학원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라 '학습자'를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별표1]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 중 '모의고사비'를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학습자 등록 전 레벨테스트'는 학원 등을 등록하려는 학습자가 사전에 자신의 실력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의 한 종류로서 학습자로 등록된 이후 실시하는 레벨테스트와 달리 동법 시행령 상 '모의고사비'로 등록하여 관리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기타경비인 '모의고사비'로 등록할 수 없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 6. 6.

제2장

교습소

1. 교습소 설립 신고
2. 교습소 변경 신고
3. 교습소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4.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신고
5. 교습소 질의응답

01 교습소 설립 신고

가 신고 수리

1) 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학원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교습자 준수사항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것[법 제14조 제7항]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교습의 경우 5명) 이하일 것[시행령 제16조제1호]
-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시행령 제16조제2호]

2)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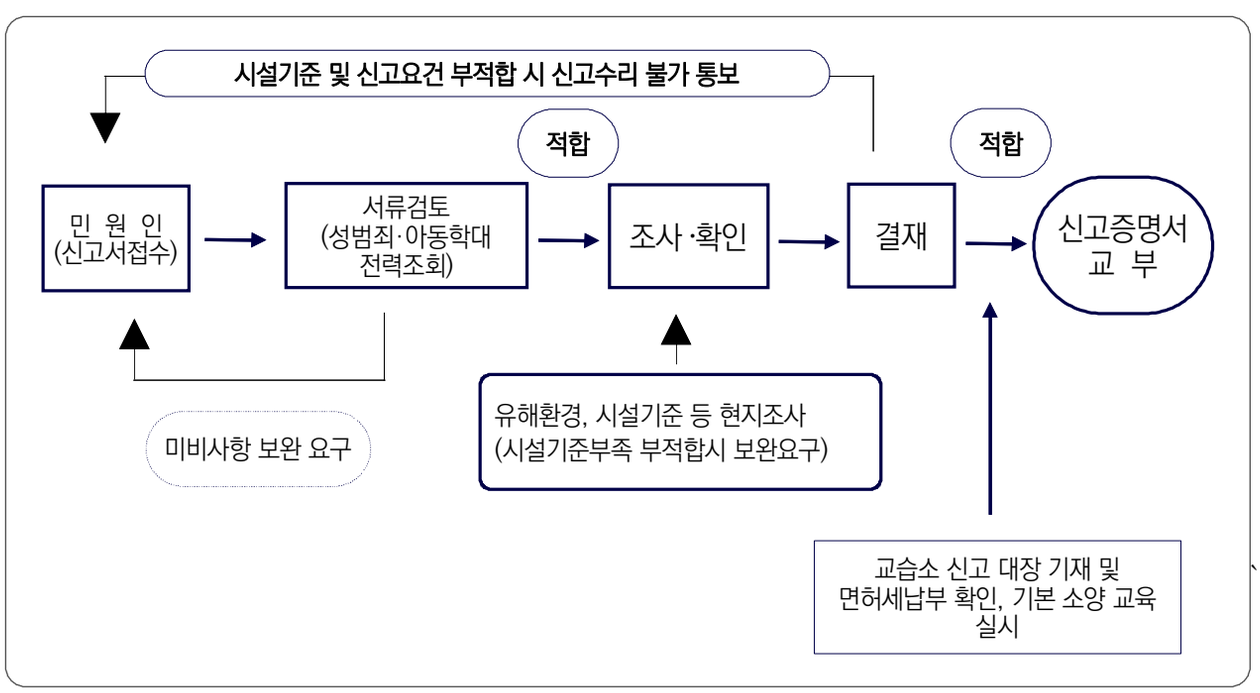

3) 신고 요건

가) 제출 서류

①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②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원본지참)

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원본지참)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지참,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동의서 1부, 본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지참
- 교습소의 설립·운영자가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낙서 제출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기간과 교습소 설립 신청서 작성일 비교 확인

⑥ 교습자의 증명사진 (3×4㎝) 2매

⑦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 담당공무원 확인)

⑧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나) 교습소 설립·운영자 자격

[학원법 제14조제10항, 학원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결 격 사 유	확인 방법
학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교습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교습소 운영 가능) **※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습소 설립·운영 가능**	NEIS 결격자 목록 확인

• 자격기준

- 학교교과 교습학원 강사 자격 규정을 준용 (☞ p. 114참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 P. 11참조)

Q&A

1. 외국인이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출입국관리법령이 2005년 9월 25일자로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대하여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자격이 F-2, F-4 외국인의 경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는 그 동안 학원 등에서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E-2 (회화지도), F-4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이 있어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배우자 자격 (F-2-가), 난민인정을 받은 자 (F-2-나),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F-2-다)는 체류자격 외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체류자격 소지자가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동 체류자격 외 별도의 허가 없이 강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학원법령에 교습소 설립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에 준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동 기준에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의 투자제외업종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가 직접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투자와 거리가 있으며, F-2, F-4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 법령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민원처리사례 2006. 9. 8.)

2. 고졸학력 및 전국대회 수상경력으로 교습소 운영이 가능한지?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전국대회 수상 경력으로 86년 ~ 92년까지 교습소를 구미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 받아 운영해 오다가 폐소를 하였습니다. 폐소 시 인가증을 반납하였으며, 현재 다시 서예교습소를 개소하고자 구미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전문대, 대졸 학력이 있어야 교습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 6번, 7번과 무관한지요? 지방교육청마다 법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교습소 설립 자격은 학원강사의 자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 중 제6호의 기준은 종전 ('99.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99. 5. 10. 이전에 기 고졸자로서 학원강사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될 것이며, '99. 5. 10.이후인 최근에 학원 등에서 강사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 강사로 간주되며, 현행 규정상 학원강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 (후원)하는 기능대회이므로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부 민원처리사례 2006. 9. 8.)

3. 피아노교습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항으로 교습소의 교습자를 변경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교습소가 행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위 교습소가 타인에게 인도된 경우 (교습자 변경), 전 교습소 (교습자)의 행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새로운 교습소 (교습자)가 계속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교습소를 인계한 후 다른 장소에 개소할 경우, 전 행정처분이 새로운 교습소일지라도 동일 교습자에게는 계속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 4항에서는 폐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의 설·폐,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행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 교습소 운영 과정에서 받은 처분은 당해 교습자 및 교습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민원처리사례 2007. 10. 10.)

다) 건축물 용도 및 교육환경 등의 정화

• 학원설립 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정과 동일(☞ P. 11, P. 27 참조)

라) 교습과목, 교습시간, 시설 및 학습자의 수, 보험가입

• 교습과목 :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 가능 (교습과목 2개 과정은 불가)

• 교습시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 시설 (면적) : 교습소 면적의 제한은 없음

※ 단, 강의실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나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불가

※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 학습자의 수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 (피아노는 5명) 이하

•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 시기**

유형	수강생당 배상금액	1시고당 배상금액	수강생당 의료실비	가입범위	가입시기	가입처
교습소	1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교습소 내외에서 운영자 등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포함	1.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 개시일 이전	보험회사, 학원안전공제회

Q&A

1. 강의실 18㎡의 일시수용인원은 얼마인가요?

1㎡당 0.3명 이하이므로, 18㎡*0.3명=5.4명 이하이므로 5명임 (소수점은 절사)

2.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모두 “음악” 교과에 해당되므로, 음악과목 (음악교습소)으로도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고, 악기별 (피아노교습소, 바이올린교습소)로도 설립 가능함

3. 9명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탕공예 (슈가아트)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습소로 신고해도 되는지?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교과목의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므로 성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동시에 9명 이하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 등록 또는 교습소 신고 없이도 교습이 가능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819(2009.10.21.)]

마)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예시) ○○음악교습소, ○○중국어교습소, ○○수학교습소, ○○영어교습소

- 교습자는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국내 외 학교 (학원 포함)나 분교(분원 포함)로 혼동 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됨
-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 내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명칭 관련 유의사항은 학원 명칭 등록시 유의사항 (p.36) 참조

관련 규정

-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 교육규칙 제3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나 교습소 설립 신고 실무

1) 실무 서식

- 상담체크리스트 (☞ P. 215참조)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 P. 216참조)
- 위임장 (학원 ☞ P. 55참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학원, ☞ P. 58참조)
- 현지조사 출장보고 기안 (☞ P. 217참조)
- 현지조사서 (☞ P. 218참조)
- 시설 및 설비 조서 (☞ P. 219참조)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기안 (☞ P. 220참조)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검토서 (☞ P. 221참조)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 P. 222참조)
- 교습소 면허부여 통보 기안 (☞ P. 223참조)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알림 기안 (☞ P. 224참조)
- 신청서류 보완요구 기안 (학원, ☞ P. 78참조)
-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알림 기안 (학원, ☞ P. 79참조)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반려 기안 (학원, ☞ P.80참조)

교습소 설립·신고 상담체크☑리스트

○○교육지원청 담당자 (상담자):_____(서명)

구 분	내 용	확인	비고
1. 교습소종류	▶교육과정 상 교과목에 한하여 교습 가능 (교습과목 :)		
2. 교습자자격	▶학원강사 자격 준용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4학년 재학 및 중퇴자는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제출)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3. 건물요건	▶건축물 주소 **- 기재사항:**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의 '용도'부분을 통해 확인) - 현재 용도 : - 적합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교습소)이 차지하는 바닥면적 (공용부분 포함)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유해업소가 없는가? ⇩별첨 '안내문' 참조 **- 기재사항 :** **- 건물의 연면적 1,650㎡ 미만 : 유해업소 있을 경우 교습소 설립 불가** **- 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 :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학원설립 등록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조사. 확인 시 유해업소 저촉이 되면 학원설립등록 수리가 불가하니, 등록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여야 하며, 유해업소로 인해 등록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 시 관련조건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합니다. (폐원, 위치변경 처리완료 후 설립 가능)**		
4. 임대계약	-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5. 시 설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것 (강의실 1개만 운영) - 면적에 따른 일시수용인원 부여: 0.3명/1㎡ (최대 9명 / 피아노교습소 최대 5명) ※ 현장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일시수용인원을 정하므로 상담 시 인원과 상이 할 수 있음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나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불가 -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6. 교습과목, 교습대상	- 교습과목 2개 과정 교습 금지 - 강사 채용 금지 : 적발 시 1차 정지, 2차 직권폐소 ※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교습은 불가) -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다.		
7. 교습소명칭	▶ 적합한 교습소명칭 확인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중복명칭·금지어 확인, 한글 원칙(영문병행 표기 가능)**		
8. 기타안내	▶ 구비서류 안내 및 설립 안내문 수령 여부		
	▶ 홈페이지 안내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마당-〉학원/평생교육시설		

상담일시 : 년 월 일 시 ~ 분

【위와 같이 교습소 설립·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안내 받았음 】 민 원 인 : (서명) ☎

※ 위 상담내용은 상담받은 날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추후 발생될 건물상의 변동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폐원, 유해시설 설치)에 의해 상담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6. 18.〉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주요 경력	직업	
교습소명			
교습장소			
교습과목		1명당 월 교습비 등	
부제 횟수		전화번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의 설립 · 운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 (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3.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출장복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개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주무관		

(가칭)○○수학교습소 현지조사 출장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교습소 설립 신청이 접수 (민원접수 제○○호 (20○○.○.○.))되어 현지를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합니다.

1. 출장목적 : 교습소 설립·운영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2. 출장일자 : ○.○.○.
3. 출 장 자 : 주무관 ○○○, 주무관 ○○○
4. 출 장 지
 가. 학원명 : (가칭) ○○수학교습소
 나. 설립자 : 홍길동
 다. 소재지 :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층 ○호
5. 조사내용
 가. 교육환경의 정화 등 (학원법 제5조 제2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 적합
 나. 시설기준 (학원법 제8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4조) : 적합
 다.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4조) : 적합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라. 시설 및 설비 : 적합 (붙임 2 참조)
6. 출장자 의견 : 민원인이 제출한 구비서류에 의하여 현지조사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관련 법규에 적합함

붙임 1. 현지조사서 1부.
 2. 시설 및 설비조서 1부.
 3. 평면도 1부. 끝.

[붙임 1] 예시

현 지 조 사 서

민원인 **홍길동**의 **○○수학교습소** 신규 신고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일자 : ○.○.○.

2. 조사장소 :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3. 조사내용 :

가.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없음

※【참고사항】 각층별 현황

구 분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현 황	기계실	약국	병원	임대 중	**본 교습소**	임대 중

나. 시설 및 설비 : 적합

구 분	기 준	현 황	결과	비고
강 의 실	강 의 실 : 없음	강 의 실 : 20㎡		
설비 및 교 구	■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1㎡당 0.3인 ■ 소방시설 ■ 화장실 남,여 구분 유무 및 급수시설 (상수도),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일시수용인원 : 5명 ■ 소방시설 : 소화기 1대, 유도등 1개, 화재감지기 1개 ■ 화장실 : 남1개소 (소변기2 ,좌변기1) 여1개소 (좌변기2) 급수시설 (상수도), 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완비됨	적합	
기 타	■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시설등 완비됨	적정	

4. 조사자 의견 : 위 교습소 설립 신고장소는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없고, 화장실, 급수시설, 환기·채광, 조도, 실내온도 및 습도, 방음시설 등 시설·설비가 완비되었으니 관계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 사 자 : 직 주무관 성명 : ○ ○ ○ (서명)

직 주무관 성명 : ○ ○ ○ (서명)

[붙임 2] 예시

시설 및 설비 조서

○○수학교습소

1. 시 설

시설명	기준	현보유		적합여부
		실수	면적 (㎡)	
강 의 실	없음			
기 타				
합 계	없음			

2. 설 비

구 분	기 준	현보유 및 상태
화장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8】	적합
급 수	상수도사용의 경우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규정	정수기 ○대
냉·난방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9】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채 광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9】	적정
조 명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9】	적정
환 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9】	적정
방 음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	적정
소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소화기 ○대, 유도등 ○개

3. 기 타

구 분	기 준	현 황	적합여부	비고
칠 판	조	조		적합
책상 및 의자	조	조		

3) 교습소 신고·수리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수학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민원인 "홍길동"이(가) ○○수학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하였기에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 등이 관계법령에 적법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 고 자 : 홍길동 (생년월일 : 1970.1.1.)

나. 신고자주소 :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다. 신고 수리 사항

1) 목 적 : ○○교육

2) 명 칭 : ○○수학교습소

3) 위 치 :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층 ○호

4) 교습과목 : ○○

5) 규 모 : ○○㎡ (강의실-○○㎡)

붙임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검토서 1부

2.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1부

3. 현지조사서, 시설 및 설비조서, 평면도 각 1부

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비전자)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6)

[붙임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검토서

1. 신청개요

교습소명	신고자	신 고 위 치	신청내용	비 고
○○수학교습소	홍길동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층 ○호	교습소설립신고	

2. 검토내역

번호	검 토 사 항	검토 결과	적합여부		비 고
			가	부	
1	**서류검토** -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적 정	○		민원접수검토조서 참조
2	**교습자 자격** - 1년 이내 불법운영으로 인하여 동일한 교습과목을 폐지처분 받은 자가 아닌가? 학원 강사자격에 준하는가?	이상없음	○		범죄경력조회 : **이상없음** 직권폐소 : **무** 강사자격: **충족** (전문대졸 이상)
3	**유해업소** - 학원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상없음	○		출장결과보고서 참조
4	**건축물용도** - 건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적 합	○		건축물대장 참조
5	**이중등록** - 교습소설립예정지가 기존에 다른 교습소가 등록되어 무단폐소한 곳은 아닌지?	이상없음	○		교습소신고 (변경) 대장확인
6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적합한가?	적 합	○		출장결과보고서 참조
7	**인원** -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은 적정한가?	적 정	○		**○명**
8	**명칭** - 동일교습과정의 교습소와 명칭이 동일하지는 않은가?	이상없음	○		교습소신고 (변경) 대장확인

3. 검토결과 : 적합

20○○. ○. ○.

검토자 직 : 주무관 성명 : ○○○

[붙임 2]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19.〉

신고 제 호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교습소명			사진 (3㎝×4㎝)
교습자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부제 횟수:	
교습장소 (주소)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 ○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시장 (세무과장)

제 목 ○○수학교습소 면허부여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학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3. 지방세법 제3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면허부여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받은 자	성명 (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	1970.1.1.
	상호 (법인명)			
	주소 (소재지)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 화 번 호			
면허의 종 류	명 칭	**○○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호)		
	규 모	시설규모 : ○○㎡, 일시수용능력인원 : ○명		
면허의 부여 연월일		20○○.○.○.		
그 밖의 사항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시 ○○로 ○○번길 ○○)
제 목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알림

---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수학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에 대하여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청○○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3.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습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습소 관련 각종 민원서식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번 게시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1부
2. 교습소 설립·운영자 안내사항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02 교습소 변경 신고

가 교습소 변경 신고 종류별 절차 및 제출서류

1)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교습자 변경	• 교습자 변경 신고서 1부 • 인수자의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등)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교습자 (인수자)와 동일인 인지 확인 • 인수자의 사진 (3×4cm) 2매 • 구. 신고증명서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 용도, 건물 사용 면적, 건물 소유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관리대장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	
위치변경	•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 임차인과 교습자가 동일 여부 확인 • 사진 (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 용도, 건물 사용 면적, 건물 소유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관리대장의 소유자와 동일 여부 확인	
명칭 및 과목 변경	• 교습소 변경 신고서 1부 • 사진 (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2) 교습자 변경 신고 절차

- 신고서 접수(처리기한 8일)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 교습소 설립·운영자 결격 여부

 - 학원법에 의한 교습소 직권폐지 처분자, 미신고자 확인 (NEIS 확인)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회신 요청

  *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예정 직위

- 변경 신고 수리여부 결정 및 신고증명서 교부

 - 면허세 납부 확인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하여야 함)
 - 교습소 설립·운영자 유의사항 안내
 - 신고 후 제출서류 안내

  * 교습비 등 (변경) 등록서

  * 안전관리대책수립 관계 서류 제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 증서 사본** 제출)

-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 시기

유형	수강생당 배상금액	1시고당 배상금액	수강생당 의료실비	가입범위	가입시기	가입처
교습소	1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교습소 내외에서 운영자 등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포함	1.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 개시일 이전	보험회사, 학원안전공제회

관련 규정

- 법 제4조 제3항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③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 ·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조례 제12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교육규칙 제13조 (보험 등의 가입)

3) 교습소 위치 변경 절차

- 변경신고서 접수(처리기한 8일)
- 현지 확인
  - 교육환경유해 여부 - 학원법 제5조, 학원법 시행령 제4조
  - 소방시설 확인 (소화기 유무, 비상구 표시 등 유무)
  - 기타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확인
- 출장 보고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수리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출장보고, 적합할 경우 신고 수리
- 신고증명서 교부

4) 교습소의 명칭 및 과목 변경 절차

- 변경신고서 접수 (처리기간 8일)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교부
  - 유사 및 동일명칭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과목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5) 교습소 설립 운영(변경) 신고 통지 의무

- 교습소 설립 운영(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함
  - 미통보시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학원법 제14조제2항)

관련 규정

- 법 제14조

  제14조(교습소 설립 · 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시행령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 시행규칙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나 교습소 변경 실무

1) 교습자 변경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김영희 (e-mail :)	주민등록번호 700101-2345678
	교습소명 ○○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호
	위치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전화번호: 010-000-0000)	

교습과목	수학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교습자	홍길동 (700101-1234567)	김영희 (700101-2345678)	교습자 변경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일반 / 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교습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수학교습소 교습자 변경 신고 수리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에서 신청한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에 대하여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습소 설립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교 습 자	홍길동 (1970.1.1.)	**김영희 (1970.1.1.)**

붙임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1부.

2. 교습소 설립·운영자 준수사항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학교습소 ○○○귀하 (○○시 ○○로 ○○번길 ○○ ○층)

제 목 ○○수학교습소 교습자 변경 신고 수리 알림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에서 신청한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에 대하여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습소 설립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오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1부
2. 교습소 설립·운영자 준수사항 1부 끝

TIP!

- 교습자 변경 시 인수자는 인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인계자로부터 제장부 등 비치서류 인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의 행정처분도 승계됨을 안내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통보
- 신고증명서 교부 시 면허세 납부 확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2) 교습소 위치 변경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교습소 변경 (위치이전) 신고 수리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에서 신청한 교습소 변경 (위치이전)신고에 대하여 서류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습소 변경 (위치이전)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시 ○○로 ○○번길 ○○	**○○시 ○○로 ○○번길 ○○상가 ○호**
면 적	55.48㎡	**48.05㎡**

붙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학교습소 ○○○귀하 (○○시 ○○로 ○○번길 ○○,○층)

제 목 교습소 변경 (위치이전)신고 수리 알림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에서 신청한 교습소 변경 (위치이전) 신고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습소 변경 (위치이전) 신고를 수리하오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3) 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목 변경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홍길동 (e-mail :)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교습소명 ○○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호
	위치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전화번호: 010-000-0000)	

교습과목	수학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교습소명, 교습과목	○○수학교습소 수학	○○영어교습소 영어	명칭 및 교습과목변경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 (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일반 / 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교습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교습소 변경 (명칭 및 교습과목)신고 수리 (□□영어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에서 신청한 교습소 변경 (명칭 및 교습과목)신고에 대하여 서류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습소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수학교습소	**□□영어교습소**
교습과목	수학	**영어**

붙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영어교습소 ○○○귀하 (○○시 ○○로 ○○번길 ○○,○층)

제목 교습소 변경 (명칭 및 교습과목)신고 수리 알림 (□□영어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에서 신청한 교습소 변경 (명칭 및 교습과목)신고에 대하여 서류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습소 변경 신고를 수리하오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03 교습소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가 교습소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1) 제출서류

- 휴　소 :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 1부
- 재개소 :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1부
- 폐　소 : 교습소 휴소 ·폐소 (✓) 신고서 1부
- 재발급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및 신분증 사본

2)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신고증명서 재발급

- 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를 신고
- 휴소 기간이 지난 뒤 2월 이내에 재개소하지 않으면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폐지 처분
-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를 분실 또는 못쓰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재발급 신청

관련 규정

- 법 제14조 제4항 및 제9항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23조 (과태료) 제1항 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시행규칙 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

나 교습소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실무

1) 휴소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0. 19.〉

교습소 [√]휴소 [ ]폐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장소		(전화번호)	
교습과목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강생 현황	현원	비 고	
( ) 휴소	기간		
	사유		
( ) 폐소	연월일		
	사유		
수강생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의 휴소/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교습소 휴소 신고 수리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의 휴소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습소 휴소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자	교 습 소 위 치	휴소 기간	휴소사유
○○수학 교습소 (제○○○호)	홍길동	경기도 ○○시 ○○로 ○○번길 ○층	20○○.○.○. ~ 20○○.○.○.	수강생모집이 어려움

끝.

TIP!

- 교습소의 휴소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설립·운영자에게 휴소 기간의 연장 또는 재개소 여부를 확인하여 연장할 경우에는 휴소 신고서를, 개소할 경우에는 재개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 재개소 교습소의 경우 보험 등의 가입 및 교습과정 전반, 교습비등 등 교습소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재신고 (통보)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갖추어 신고 (통보)토록 안내함
- 교습소의 휴소 기간 동안 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소한 교습소의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휴소 기간 중 점검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알림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귀하 (○○시 ○○로 ○○번길)

제 목 교습소 휴소 신고 수리 알림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의 휴소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습소 휴소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2) 재개소

[임의서식]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호
위치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교습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70.01.01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APT 000-000 (전화번호:031-000-0000, 010-1234-5678)	

휴소기간	20○○.○.○. ~ 20○○.○.○.
재개소연월일	2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소 신고하였던 위 교습소의 재개소을 신고합니다.

20○○년 ○월 ○일

신고인 (교습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제출서류 : 교습소 안전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재개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교습소 재개소 신고 수리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 재개소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자	교 습 소 위 치	재개소년월일	비고
○○수학 교습소 (제○○○호)	홍길동	경기도 ○○시 ○○로 ○○번길 ○층	20○○.○.○.	

끝.

TIP!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알림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귀하 (○○시 ○○로 ○○번길)
제 목 교습소 재개소 신고 수리 알림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수학교습소 재개소 신고에 대하여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교습소 재개소에 따라 교습소안전배상책임보험가입, 교습소 운영 관련 구비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건전한 교습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자 안내사항 (자체 안내자료 활용)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3) 폐소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0. 19.〉

교습소 [ ]휴소 [√]폐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호	
교습장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층	(전화번호 010-000-0000)	
교습과목	수학		
교습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주소 경기도 ○○시 ○○로 ○○번길 ○○, ○○APT 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	
수강생 현황	현원 ○명	비 고	
(√) 휴소	기간		
	사유		
(√) 폐소	연월일	20○○.○.○.	
	사유	타 직종 취업으로 인한 폐소	
수강생에 대한 조치	인근 타 학원 안내 및 잔여 교습비등 일할계산 후 환불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의 휴소/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교습소 폐소 신고 수리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 폐소를 신고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자	교 습 소 위 치	폐소일	폐소사유	수강생에 대한 조치
○○수학 교습소 (제○○○호)	홍길동	경기도 ○○시 ○○로 ○○번길 ○층	20○○.○.○.	타직종 취업	타학원, 타교습소 소개

끝.

TIP!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알림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귀하 (○○시 ○○로 ○○번길)

제 목 교습소 폐소 신고 수리 알림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수학교습소 폐소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존에 설치하였던 교습소 간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교습소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폐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4) 재발급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9.〉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전화번호: 010-000-0000)	
교습소명	○○수학교습소	교습과목 수학
신고번호	제○○호	최초신고일 20○.○.○.
재발급 사유	[√] 잃어버린 경우 [ ] 못 쓰게 된 경우	
분실사유 (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관리 소홀에 따른 분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교습소설립 · 운영등록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 ○○○귀하 (경기도 ○○시 ○○로 ○○, ○○○-○○○ (○○동)

(경유)

제목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재발급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재발급 건에 대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 증명서를 재발급하니, 신고 증명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20○○.○.○.　) 접수　　(　　)

우　　경기도 ○○시 ○○구 ○○로 ○○(○○동,경기도○○교육지원청)　　/www.○○○.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비공개(6)

04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신고

가 임시교습자의 채용

• 채용사례

✓ 교습자가 **출산, 산후조리, 육아**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 교습자가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 신고기한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이전일까지 교육청에 신고
• 교습(채용) 기간 :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 가능
• 제출서류 (교습 개시 이전일까지 제출)
-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서 1부
-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부
-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1부
- 임시교습자 증명사진(3x4cm) 1매

나 보조요원의 채용

• 채용사례

✓ 행정·경리 등 제반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 교습과목 관련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 학습자 **등·하원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사고 예방·지도**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 신고기한 :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제출서류
- 보조요원 채용(해임) 통보서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1부
• 대장관리 : 교육지원청은 채용 신청이나 해임통보서 접수시 '교습소 보조요원 대장' 기재· 관리

관련 규정

•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조례 제7조 (임시교습자의 신고)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1.)

다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신고 실무

1) 임시교습자 채용 통보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귀하 (경기도 ○○시 ○○로 ○○번길 ○○)

제 목 임시교습자 신고 수리 알림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
2. 귀하가 신청한 ○○수학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신고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교습자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자	임시교습자 신고현황			신고사유
		성 명	담당과목	교습기간	
○○수학교습소 (제○○○호)	홍길동	김영희	수학	20○○.○.○. ~ 20○○.○.○.	출산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서

사진 3x4cm	처리기간
	2일

교습소명	00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00호
위 치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번길	전화번호	031-000-0000
교습자	홍 길 동	교습과목	수학
신 고 내 역			
임시교습자	김 영 희	생년월일	1980.1.1
주 소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번길		
학 력	대학교 졸업	소지자격증	
경 력		교습과목	수학
교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고사유	출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습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1.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부 2. 자격증사본이나 졸업증명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아동 청소년 대상 교습소만 해당됨)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2) 보조요원 채용·해임 통보

별지1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교습소명			등록번호			
위 치	(전화번호:)					
설립·운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조요원 통보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전공)	소지자격증	주요경력 (학교, 학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결과
	채용일자	주 소				
	보조요원 채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3.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 1부 ※ 이상 구비서류 중 개인정보 해당 서류 건은 확인 후 반환함

별지2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교습소명		등록번호	
위 치	(전화번호:)		
설립 · 운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번	성명	주 소	생년월일	채용일자	해임일자	해임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한 보조요원을 해임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별지3 **교습소 보조요원 대장**

일련 번호	교습소명 (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채용일자	해임일자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

05 교습소 질의응답

가 교습소 설립 신고와 교습자 자격

민간 개최 대회 수상 시 학원 강사 (교습소 교습자) 자격 여부

동아교육신문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능력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우 학원 강사나 교습소 교습자로 자격이 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7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문사 및 사단법인 한국능력교육개발원은 포함되지 않아, 강사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101830 2004. 02. 02.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있을 시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각종 공립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시설에서 미술 관련과목 강사경력의 합이 2년 이상일 경우 교습소 설립여부?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강사 근무경력은 학원강사 자격인정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

교육인적자원부 112274 2004. 08. 16.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자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가 교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라 하더라도 교습소 설립·운영은 가능함

교육인적자원부 116893 2004. 11. 20.

외국인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외국인도 교습소 개설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이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F-4, F-2-가 (국민의 배우자), F-2-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F-2-다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일 경우 교습소 설립이 가능함

경기도교육청 전자민원창구 2008. 11. 17.

고졸 학력 및 전국대회 수상 경력으로 교습소 운영 가능 여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전국대회 수상경력으로 86년~92년까지 교습소를 운영해오다가 폐소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서예교습소를 개소하고자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전문대, 대졸 학력이 있어야 교습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2항의 (별표 3) 6번, 7번과는 무관한지요?

교습소 설립자격은 학원 강사의 자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 중 제6호의 기준은 종전('95.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들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95.5.10.이전 기 고졸자로서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될 것이며, '95.5.10. 이후인 최근에 학원 등에서 강사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 강사로 간주되며, 현행 규정상 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호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이므로 현행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6. 12. 19.

국가공인자격증 보유 시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한자서당교습소 신규설립 신청 시 교습자 자격으로 국가공인자격증 (한자교육진흥회에서 발급한 한자실력-등급 (사범)만으로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있는지요?

교습소 설립자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을 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 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 강사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능분야 교습소 자격기준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해당 시·도 조례 등에 교습과정별 학원 강사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학원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01. 25.

고졸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현재 국가공인 한문자격증 3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고졸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 개인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외 2년 정도를 하다가 교습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습소 개설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공인 한문자격증 3급이 부족하다면 2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2년 후 교습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요?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함

※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3]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재외국민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국적이 대한민국인 재외국민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재외국민 국내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대한민국 여권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외국민이 교습소 설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지한 여권에 F4 (재외동포) Visa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Visa는 외국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할 때, 그 외국인의 나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여 그 외국인의 여권에 부여하는 Vis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교습소 설립신고를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소지한 자는 학원설립과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동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교습소 신고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교습소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신고하고자 하는 교육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11. 11.

특정목적 (교회 등)으로 기사용 중 시설 내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교습소를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의 교육관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같은 건물은 아니고 교회 바로 옆 건물이고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일요일에만 한정해서 10~20분정도 공과 (성경공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 교습소 설립이 가능합니다만, 교습소에서 종교목적의 교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습소나 학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별도의 시설이나 면적을 독립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회 등 특정목적으로 이미 사용되는 시설에서는 교습소 설립이 어렵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109250 2004. 06. 23.

전문대 재학 중인자의 교습소 설립 여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전국대회에 입상 실적으로 학원 강사를 6년 한 후 현재 전문대 2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 경우 강사자격은 상장에 의한 강사자격을 인정해 준다 해도 재학 중인 학생 신분으로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전문대학 재학생은 학원 강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교습소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원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각 호의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원 강사자격이 인정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전자민원창구 번호 109295 2004. 06. 16.

고발된 미신고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

미신고로 운영하던 교습자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을 경우,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가 가능한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습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신고를 할 수 없는 교습소는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폐지처분을 받은 교습소를 말합니다.

아울러,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고 있고, 폐지처분이란 신고된 교습소에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 중 고발되어 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이 내려진 교습자도 법 제14조에 의거 신고·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08. 11. 18.

교습소 다수 설립·운영 가능 여부

저는 현재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건물 3층에 제 명의로 수학교습소를 하나 더 신고하려고 교육청에 방문하였는데 그 쪽 담당자가 하나 이상의 교습소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피아노교습소, 3층에 수학교습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피아노와 수학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11. 23.

교습소 조건부 설립 가능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동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시에도 동법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을 유추 적용하여 조건부 설립이 가능한지?

학원법령에서는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학원설립·운영은 등록사항, 교습소의 설립·운영은 신고사항으로, 학원은 조건부 설립 등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습소는 동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11. 19.

교습소의 일시수용인원 의미

피아노교습소의 경우 일시수용인원을 최대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수용인원이 교습소 한 시간당의 수용인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습인원을 말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한 시간에 5인을 교습 중에 다음 시간대의 학생 2명이 와 연습을 하거나 혹은 교습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일시수용인원초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하신 피아노교습소의 경우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인원이 5인 이내여야 합니다. 일시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이유가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생안정 때문에 규정하는 것으로, 레슨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일시수용인원초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2007. 01. 16.

교습소 내 강사로 근무 중인 자의 강사 등록

저는 2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영어 교습소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 중에 우연히 학원 강사를 교육청에 등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자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하며, 강사자격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신고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습소는 신고한 교습자가 직접 운영 (1인이 1과목 운영)하는 것이므로 교습자 이외의 다른 강사를 둘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06. 09. 08.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 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가요?
2. 학원 역시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상호/학원 을 표기하여 '○○○학원'으로 학원명을 지어야 하며 그 외 아카데미 학교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상적인 학원 혹은 교습소 표기와 / 잘못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할수 있는지요 예1. ○○○○ 아카데미/○○○국어교습소, 예2, ○○○ 국어 아카데미/○○○국어교습소 이렇듯 학원에 신고된 교습소 명칭과 신고 안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명시하고, 동조 제2항에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이나 '교습소' 외에 다른 명칭 표시 및 공용 표시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7조(행정처분)에 따라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2017. 05. 02

영어교습소 명칭

현재 교습소 명칭은 고유이름+과목+교습소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 저는 '○○ 영어 아카데미'+영어+교습소로 신청을 했는데, 아카데미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됩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항에서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학원설립·운영자 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 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외의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해서는 아니된다”하고 규정하여 학교로 혼동 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교습소 명칭 사용 시 고유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카데미’라는 단어만으로는 교습소가 학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습소 명칭 사용에 대해 수리 관할청과 협의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8. 08. 20

교습소의 교습비등 감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으나 학원은 학원원칙에 감면사항을 적시하는 경우 별도로 교습비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교습비등의 변경 미등록이나 거짓 표시·게시·고지로 처분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교습소는 학원원칙과 같은 서류가 없어 감면 사항을 기입할 수 없는데 만일 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교습비등 (변경)신고를 하고 감면해야 하는지?

학원의 경우 원칙이 있어 교습비등의 감면으로 인한 제15조제4항(거짓 표시·게시·고지에 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교습소는 학원의 원칙과 같은 문서가 없어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학생, 학부모 또는 담당 공무원 등이 교습소의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교습소 시설 내부 등에 감면사항을 표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동일하게 교습비등의 신고 없이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17. 12.

나 교습과목과 교습대상

도예과정 교습 가능 여부

교습소는 초·중·고 교과목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교습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미술 (공예)과목의 한부분이라고 보고, 대상만 학생으로 한정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도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이 가능한지요?

음악, 미술 등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은 다양한 세부과정이 있습니다. 도예의 경우도 넓게 보면 미술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습소 설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교습대상이 초·중·고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습소가 아닌 학원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6. 09. 08.

과학, 플루트 교습소 가능 여부

과학이론이나 실험을 위주로 하는 교습과정, 플루트 과정 교습소 가능 여부

초·중·고등학교 보통교과목은 교습소 설립 운영이 가능하므로 과학이론이나 실험을 겸하거나 과학실험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도 교습소 설립이 가능함. 플루트 과정은 음악 과목 중의 하나로 보아 가능함

교육인적자원부 109696 2004. 06. 23.

중국어 교습 가능 여부

"중국어" 과목도 교습소 개설신청이 가능한가요?

중국어 과목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습소 설립이 가능함

경기도교육청 전자민원창구 2008. 11. 17.

국악교습소 가능 여부

국악교습소가 가능한가요? 중·고 음악 교과 중에 하나로 국악이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국악교습소에서 장구, 판소리, 가야금 등 국악에 관련된 교습을 다 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1인 1과목으로 국악 중에서 장구나 판소리, 가야금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지요?

교습소 운영은 1인이 1개소에서 1교과목을 교습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관할 교육청에 교습 교과목 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타악기를 1개 과목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특정 타악기만을 1개 과목으로 볼 것인지는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시·도 조례 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예능 분야는 그 범위가 넓고 그 교습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악기별로 1과목으로 정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응답사례집 10 2006. 08. 18.

연극 교습소 가능 여부

교습소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곳인데요. 바둑교습소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교습소로 등록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극 교습소도 등록할 수 없는지요? 학생을 대상으로만 가르친다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교습과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교습소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연극을 재학생, 학교입학생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가르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2006. 09. 29.

바둑교습소 가능 여부

바둑교실을 교습소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생을 대상으로 바둑을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09. 16.

음악교습소의 여러 악기 교습가능 여부

그동안 교육청에선 교습하는 악기별로 신고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교습소나 기타 교습소처럼 음악교습소로도 가능한지요?
음악교습소로 할 경우 한 교습소에서 여러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교습소의 교습과목 설정의 적격여부 등 학원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 (변경 포함)업무는 관할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질의하신 교습소의 가능여부의 판단은 관할 교육청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습소는 1개의 교습과목을 교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악기로 교습을 신청하였을 경우 당해 악기만 교습이 가능할 것이나, 관할교육청에서 교습과목을 음악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았다면, 초·중등 교육과정의 음악으로 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악기를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일시 수용인원은 9인 이하, 교습자는 1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습과목의 허가 및 교육과정의 운영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관할교육청의 지침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07. 13.

유아교습소 불가 이유

이번에 미술교습소를 내는데 평수가 작고 세가 저렴한 곳을 고르다 보니 학원 인가가 안 나고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 평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습소와 미술학원은 평수가 다를 뿐 다른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신고제 허가제 차이가 있겠지만요. 학원은 타전공자에게도 허가를 내주면서 유아를 받을 수가 있고 교습소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교습소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 운영이 가능한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입니다.

동 규정에서와 같이 유아에 대한 교습은 “과외교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습소에서의 교습대상은 아니나 유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교습인원 9인 이하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원등록 또는 교습소

신고의 절차 없이 교습이 가능하므로 교습소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과 유아 또는 성인을 동시에 교습(동시 교습인원 9인 이하인 경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교습소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04. 05.

문예창작 교습소 가능 여부

대학 문예창작과 진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위해 8평 정도의 강의실을 만들어 교습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문예창작교습소는 안되고 "국어교습소"로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예창작교습소"는 불가능한가요?

교습소의 명칭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교육청에서 교습소의 분류 또는 학습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교습소 시설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이 9인 이하이어야 하며, 강의실의 1제곱 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08. 26.

종이접기 교습소 가능 여부

종이접기교실이 학원법에 저촉되어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귀하께서 동일 시간에 9명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위와 같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종이접기를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 등록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03. 15.

유아나 성인 교습소 가능 여부

교습소에서는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는 것인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하면"교습소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하면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성인이라 하더라도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인 경우 교습소의 교습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10. 16.

성인 소수 대상 교습소 가능 여부

성인을 대상으로 설탕공예 (슈아트)를 가르치고 싶다는 민원이 있어 학원으로 등록토록 하였으나, 가르치고자 하는 인원이 4~5명으로 소수여서 교습소로 하고자 한다는 민원을 제기,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목이 아닌 과목을 9명 이하로 가르치고자 할 때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로 정의하고 과외교습이란 동법 제2조 제4호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교습소 신고대상이 아님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교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교 입학시험 준비생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므로 질의한 성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고 동시에 9인 이하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 또는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이 가능할 것임

【참조 : 대법원, 1981.08.11 81도610, 대법원 1984. 04. 10, 84도322】

교육과학기술부 2009. 10. 21.

취학전 아동의 교습 문의

1. 교습소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는지?
2. 유아만을 교습하려고 하면 교습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취학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습한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이 아니며, 9인 이하로 교습한다면 교습소의 신고 대상도 제외됩니다.

다만, 미취학 유아와 초·중등학교 학생을 함께 교습한다면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가 필요하고, 유아만 10인 이상을 교습할 경우 학원의 등록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2014. 02. 18.

교습소 보조요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교습소에서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조요원의 역할과 교습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도 보조요원으로서 같이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지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습소에서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교습자)만이 교습을 할 수 있으며, 보조요원은 교습을 할 수 없고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편의제공'이란 교습 이외에 교통안내 및 지도, 사무보조 등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지역교육청에 보조요원 신고를 하고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등) 대상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 06. 08.

국어 · 논술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

국어와 논술을 연계·결합한 국어논술을 한 과목으로 보아 국어논술교습소를 설립할 수 있는가요?

학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교습과정'을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2에서 교습과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별표2는 보습 교습과정과 논술 교습과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7항에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어논술 교습소'와 같은 명칭은 교습과정의 구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습소의 '1과목' 교습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어' 또는 '논술' 교습소로 신고하여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 06. 28.

폐업 교습소의 직권말소

학원 및 교습소의 직권말소가 가능한 경우는 법률이 신설(2017.12.19.)된 이후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법률 신설 이전에 폐업 신고한 학원 및 교습소에게도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동 조항이 시행된 2017.12.19.일 이전에 폐업 신고된 교습소에도 해당 조항은 적용이 가능하므로 폐업 신고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 12. 31.

제3장

개인과외교습자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2. 개인과외교습자 질의응답

0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1)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무상 교습은 개인과외교습에서 제외됨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교습가능 인원수는 같은 시간대에 9인 이하로 제한함

2)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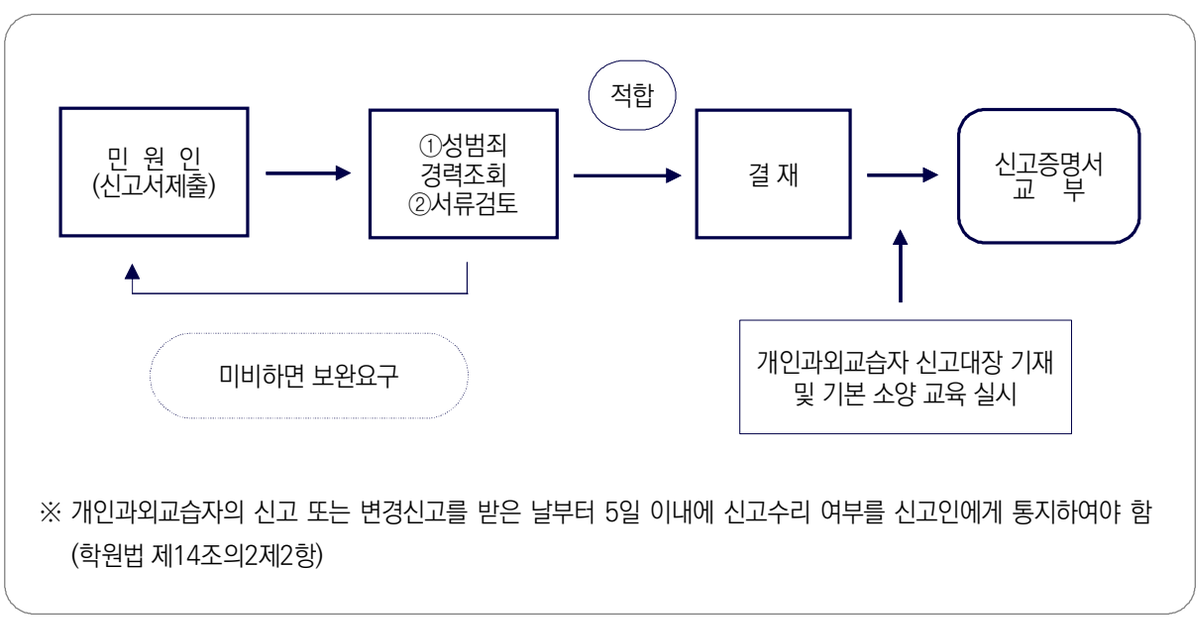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학원법 제14조의2제2항)

3) 신고 요건

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최초 신고 시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원본지참)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지참) • 증명사진 (3×4cm) 2매	
변경 신고 시	• 개인과외변경신고서 1부 (변경신고사항 : 주소,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소변경 : 주민등록증 (현 주소지 기재) 사본(원본지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교습자의 학력·경력사항 변경 :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 • 기타변경 : 제출서류 없음 •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 증명사진 (3×4cm) 1매	
신고증명서 재교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구 신고증명서 (못 쓰게 된 경우) • 증명사진 (3×4cm) 1매	
폐지 시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통보서 (임의 서식) 1부 • 신고증명서 • (분실한 경우)분실사유서 및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나) 개인과외교습자 자격

①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EIS의 결격자 목록 확인)

② 성범죄 경력 조회(취업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P.10 참조)

③ 학력 제한 없음

④ **외국인의 개인과외 가능 자격 (E-2 소지자는 불가)**

⇨ E-6(예술흥행),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관련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0조의3(영주자격) ①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다) 교습가능 장소

①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

② 학습자의 주거지

③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④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⑤ 학습자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통보

⑥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 신고 가능

⑦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 외부에 표지 (개인과외 교습 표지 서식) 부착 의무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현주소지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

Q&A

1. 교습자의 거주지는 서울시 ○○구이며, 학습자의 주거지는 경기도 ○○시 ○○구 인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민원처리사례 2007. 10. 10.)

라) 신고 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신고 제외 (법 제14조의2)

마) 신고 사항

① 교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② 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③ 교습 과목
④ 교습 장소
⑤ 교습비 등 (월 기준 1인당 금액)

4)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가)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민법 제777조 적용)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①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②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③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 · 면 · 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5) 신고 수리 의무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실무

1) 실무 서식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P.274 참조)
☐ 위임장 양식 (학원⇒P.55참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기안 (학원⇒P. 57참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 (학원⇒P. 58참조)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수리 기안 (⇒P.276 참조), 알림 기안 (⇒P.279 참조)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P.277 참조)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서 (⇒P.280 참조)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수리 기안 (⇒P.281 참조), 알림 기안 (⇒P.282 참조)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통보서 (⇒P.283 참조)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P.284 참조), 재발급 기안 (⇒P.285 참조)
☐ 신청서류 보완요구 기안 (학원⇒P.78 참조)
☐ 민원사무 처리기한 연장 알림 기안 (학원⇒P.79 참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반려 (학원⇒P.80 참조)
☐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P.286 참조)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수리

(앞쪽)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6. 18.〉

■ 수수료: 없음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1. 신고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소	(연락처:)	
학력 및 전공	(전자우편:)	
자격		
경력		

2. 신고내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적습니다.

교습장소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수리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위 호로 접수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기에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번호 : 신고 제○○○○호

나.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1980.1.1.)

다. 주 소 : 경기도 ○○시 ○○로 ○○, ○○○-○○○ (○○동)

라. 교습과목 : 수학

마. 교습장소 : 교습자 주거지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증명서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비전자). 끝.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20○○. ○. ○.) 접수 ( )

우 경기도 ○○시 ○○구 ○○로 ○○(○○동,경기도○○교육지원청) / www.○○○.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goe.go.kr / 비공개(6)

[붙임 1]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4. 6. 18.〉

(앞쪽)

신고 제 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사진 (3㎝×4㎝)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전공			
자격			
경력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교습과목 \ 교습비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교습장소			

※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교습비등 /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 ○○○귀하(경기도 ○○시 ○○로 ○○, ○○○-○○○ (○○동)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수리 알림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하여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3. 자율과 창의로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함으로써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개인과외 교습행위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각종 민원서식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번 게시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증명서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안내사항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20○○.○.○.) 접수 ( )

우 경기도 ○○시 ○○구 ○○로 ○○(○○동,경기도○○교육지원청) /www.○○○.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비공개(6)

3)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1. 8. 9.〉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 (○○APT)	
	신고번호 제○○○○○호	

항목	기존 신고사항	변경사항	변경 사유
교습장소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 (○○APT)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 (○○○○APT)	이사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개인과외교습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 (개인과외교습자) 제출서류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수리

1. 관련: 민원접수 제○○호 (20○○.○.○.)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번호 : 신고 제○○○○호

나.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1980.1.1.)

다. 변경사항

항 목	변경전	변경후
교습 장소	경기도 ○○시 ○○로 ○○, ○○○-○○○ (○○동)	경기도 ○○시 ○○로○○번길 ○○, ○○○-○○○ (○○동)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증명서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비전자). 끝.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20○○. ○. ○.) 접수 ( )

우 경기도 ○○시 ○○구 ○○로 ○○(○○동,경기도○○교육지원청) / www.○○○.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goe.go.kr / 비공개(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 ○○○귀하 (경기도 ○○시 ○○로 ○○, ○○○-○○○ (○○동)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수리 알림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 변경 건에 대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니,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증명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20○○.○.○.) 접수 ( )

우 경기도 ○○시 ○○구 ○○로 ○○(○○동,경기도○○교육지원청) / www.○○○.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비공개 (6)

4)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임의서식]

개인과외 교습 폐지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0.1.1.
주 소	경기도 ○○시 ○○로○○번길 ○○, ○○○-○○○ (○○동)	신고번호	제○○○○호
		전화번호	010-0000-0000

교습과목명	수학
수강생현황	○명
폐지년월일	20○○.○.○.
폐지사유	이사
수강생조치	인근 개인과외교습자 안내 후 교습비등 일할 계산 환불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 교습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단, 같은 법률 14조의2 제12항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통보인 (개인과외교습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신청인 (개인과외교습자) 제출서류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5)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9.〉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번호
재발급 사유	[ ] 잃어버린 경우 [ ] 못 쓰게 된 경우	
분실 사유 (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개인과외교습자) 제출서류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교육지원청)		처 리 기 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 ○○○귀하 (경기도 ○○시 ○○로 ○○, ○○○-○○○ (○○동)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증명서 재발급

1. 관련 : 민원접수 제○○호 (20○○.○.○.)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증명서 재발급 건에 대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 증명서를 재발급하니, 신고 증명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증명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20○○.○.○.) 접수 ( )

우 경기도 ○○시 ○○구 ○○로 ○○(○○동,경기도○○교육지원청) /www.○○○.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비공개 (6)

6)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4조의5)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6. 11. 30.〉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제14조의5 관련)

1. 표지 모형

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

2. 표지 작성 요령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라.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

마.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 : 24 : 13으로 한다.

02 개인과외교습자 질의응답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

한 달 미만의 단기 과외교습 신고 대상 여부

한 달 미만의 단기 과외도 신고 대상인가요?

한 달 미만의 단기 과외도 월, 시간당 교습료를 포함한 신고사항을 신고해야 함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의 과외교습 신고대상 여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현재 법상 대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생과 방송통신대 대학생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개인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등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초· 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에 대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으로,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 제외)이므로 사이버대학생과 방송통신대 대학생은 교육청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8. 02. 28.

학점은행제 대학생의 개인과외 신고여부

○○대학교사회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정은 학점은행제이고 전공은 피아노 4년 과정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학생이니 안 해도 되나요. 학점은행 과정에 다니는 대학생도 대학생에 해당 되는지요?

개인과외 신고대상에서「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 제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사회교육원은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민원인의 경우 개인과외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8. 03. 13.

사립학교 교원 개인과외교습 가능 여부

> 의정부의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 입니다. 그 학교의 한 수학교사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장은 없는지요? 그 교사 분은 예전의 은사님이고 지금도 ○○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교원의 과외교습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현직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응답사례집 2006. 09. 22.

무료 개인과외교습 신고 여부

>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신고 (교습과목 : 피아노)를 득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학습자로부터 피아노 교습료를 받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신고 되지 않은 교습과목 (초등 수학)을 5~6명의 학습자로부터 교습료를 받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학원법 제2조에 의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행위는 수강료 / 교습료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동 법에 의거 등록한 후에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교습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학습자의 초·중등 교과목에 대한 보습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응답사례집 2006. 09. 25.

주말 단기 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 여부

> 3명으로 구성된 아이들에게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한 두 시간씩 빈 일반 사무실에서 외지인을 초빙하여 고액과외가 아닌 월 20만 원정도의 교습료를 받아도 가능한지요?
> 일반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개인과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또 과외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인원에 따른 신고 등의 예외 규정이 있는지요?

개인과외교습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신 후 교습행위를 할 수 있으며, 교습장소는 상가, 오피스텔 등이 아닌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수강료는 교육청에 신고하면 가능하나 필요시 교육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교육청 관련부서에 문의하시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2006. 09. 08.

한 집에서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 과외 가능 여부

생계형 과외의 경우 한집 (물론 주민등록상 동거입니다.)에서 같이 과외를 할 수 있나요?

개인과외 교습은 한 장소에서 신고한 1인이 같은 시간에 9명 이내의 학습자에게 교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된 학원법령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장소는 주거지 (단독, 공동주택)에서 가능하며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해야 합니다.

부부나 형제인 경우에 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각자가 각각의 학습자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족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학원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전자민원창구 2004. 06. 08.

개인과외 교습 수강료 기준

학원의 경우는 수강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과외의 경우 교습료의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현행 학원법령의 규정에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관할교육청에 교습료 등 신고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과외 교습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고액과외 등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2006. 09. 08.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제한 여부

개인과외교습자 자격에 학력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교습과목을 초·중·고 전 과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개인과외교습이라 함은 초·중·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하는 교습으로 일시수용능력인원이 같은 시간에 9인 이하일 경우 교습이 가능

이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에 의거 교습소 설립자격은 학원 강사의 자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현행 규정상 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상자로 규정함을 알려드림. 다만, 개인과외신고자는 학력제한이 없음

이외의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시면, 관할 교육청에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교습을 하실 수 있음. 교습과목은 전 과목으로 신고해도 무방함

기간제 교사의 과외교습 가능 여부

기간제 교사는 과외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교사도 임용기간 중에는 학원출강이나 개인과외교습 등 영리행위는 불가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001. 09. 21.

직장인, 학부모 대상 개인과외 교습 신고 제외 대상 여부

학원법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7428호)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는 자인데, 이 "과외교습"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행위를 지칭한다 하였습니다. 만일 개인자격으로 유학생 자녀를 둔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습행위를 하려한다면 "과외교습"에 해당하는 건지요? 만일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인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교습을 행하려 할 때,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등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교습자가 유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습행위는 과외교습행위의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교습행위는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국민신문고 2006. 07. 24.

교습자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주무관청

교습자의 거주지는 경기도 ○○시이며,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인 서울△△구인 경우 신고 장소는 어디인가?

교습자의 주소지 관할 ○○시교육청에 신고를 하며, ○○시교육청은 신고수리 후 서울△△구교육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학원법」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⑦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 교습 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학생 개인과외교습자의 소득신고 여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원)생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가?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는 관련 세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어도 이와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개인과외 신고해야 하는지

과외교습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또 과외교습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료로 인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학습자로부터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대학 (원)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개인과외교습자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야 하는가?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발급이 가능. 상세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개인과외교습자 간판 설치 가능 여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가?

본인의 소유 주택이나 임대 (소유주의 동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판 설치는 가능하나 해당 구청에 간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학원 및 교습소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개인과외교습자의 현수막 등 광고 가능 여부

개인과외교습자가 자신의 주택에서 교습신고를 하고 그 주택에 현수막 광고를 한다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자신의 집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과외 신고는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가 되는 것인데 개인이 임의로 정한 명칭인 "00공부방" 으로 광고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부방이 개인과외로 운영되는지, 교습소로 운영되는 지에 따라 관련법의 적용이 다르며 개인과외 교습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신 후 교습행위를 할 수 있으며, 교습 장소는 상가, 오피스텔 등이 아닌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습소는 1인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수강료는 교육청에 신고하면 가능하나 필요 시 교육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없으며 운영형태가 개인과외인지 교습소인지에 따라 신고요건, 신고사항 등이 달라지므로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교육청 관련부서에 문의하시어 협조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응답사례집 2006. 07. 31.

교습시간이 짧은 개인과외교습행위 신고 대상 여부

개인과외로 미술교육을 학습자 집을 방문하여 교습을 하거나, 컴퓨터교육을 학습자 집을 방문하여 교습할 경우 교습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잠시 머물러 지도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교재를 판매하며 지도할 경우(학습지포함 보습, 미술, 컴퓨터)는 전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1)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과외교습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등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개인과외 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 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개인과외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써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교습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신고대상 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규정상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행위가 과외교습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정해진 교습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응답사례집 2006. 02. 07.

학습지 교사가 상가에서 교습하는 경우 신고 여부

학습지교사가 상가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로 신고해야 함

성인 대상 컴퓨터 개인과외 교습행위 신고 여부

성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과외를 하려면

같은 시간에 9인 이하의 성인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가능하며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722 2001. 07. 22

E-2 자격 외국인 개인과외 교습 가능 여부

외국인 학원 강사가 E-2 체류자격을 가지고 개인과외 교습 가능 여부

외국인은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교습만 가능하며, E-2 체류자격으로는 학원 강의 외 별도로 과외교습은 불가능함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759 2001. 07. 29.

독서실 운영 중 개인과외 교습 가능 여부

독서실 하면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지요?

개인과외 교습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것이므로 학원시설인 독서실에서의 개인과외 교습을 불가능하며, 독서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과외 교습을 하시고자 한다면, 별도로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해야 함

소음이 심한 악기과목 교습 제한 가능 여부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등 소음이 심각한 악기 과목을 교습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경기도 조례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학원의 단위시설기준 중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제2호에 의하면 소음·진동 규제 대상에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학원 및 교습소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 8에 따라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생활소음 기준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인 경우 학원법에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음·진동관리법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생활소음 규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준칙에 적용을 받음

(단, 동의서 미제출을 근거로 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방음시설 또한 강제할 수 없음)

이미용에 관한 개인과외 가능 여부

개인과외라고 하면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려는 것은 메이크업인데요 메이크업 과정을 초·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가 가능한지요? 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과외교습에 관하여'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초·중·고생에게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성인의 경우는 초·중·고생이 아니고,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도 아니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러한 경우는 학원으로 등록하여 교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 07. 09.

피아노 방문 레슨 관련 문의

음악 관련 법인 회사입니다. 향후 피아노 방문 레슨 사업을 전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소속 강사가 교육청에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피아노 강사와 계약을 맺음
2. 레슨받기를 원하는 각 가정으로 강사를 파견 후 레슨비는 회사로 입금
3. 회사가 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상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도)에서 교습을 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에 대한'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이 소득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하는 등 개인의 교습에 대한 신고수리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파견형태로 교습하거나, 교습비 등을 회사로 입금하는 형식은 불법입니다.

강사를 채용하고 교습비 등의 영수증을 회사가 발급한다면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학원은 등록된 장소 (강의실, 실습실)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 08. 06.

개인과외 교습 가능 여부

개인과외교습 관련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과정이 개인과외교습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1. 대　　상 : 고등학생, 성인
2. 교습과목 : 위험물, 가스, 에너지, 산업안전, 환경, 산업위생 이론수업
3. 교습장소 : 주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학원법」) 제2조 (정의) 제3호 가목에 따른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제2조 (정의)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가스, 에너지, 산업안전, 환경, 산업위생의 과목에 대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고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학원법」제2조 (정의) 제4호에 따르면,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습은「학원법」제2조 (정의) 제4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으로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업무는 관할 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 신고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5. 04. 15.

개인과외교습자의 화상영어 가능 여부

화상영어가 「학원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학원법」 제14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이 직접 과외교습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어민이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민원인께서 교습을 보조하는 등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본인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대면 교습만 허용하고 맘스영어 공부방의 경우에는 등록 교습과정에 1:1 원어민 화상 교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청에 등록하지도 않은 무등록 및 무자격 강사에게 학생들이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원법령」 및 「시·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8. 09. 21.

유아대상 과외교습의 불법성 여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파트에서 영어 그룹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운영 중입니다. 7세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교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왔는데요. 유치부 학생의 경우에는 교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찾다가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과외 교습 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준비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는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에 입학시험이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유아를 시험 준비생으로 볼 수도 없어,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행위는 현행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며 학원법상 불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2016. 12. 27.

성인(유아)에 대한 과외교습 가능 여부 및 신고의무 유무

성인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이 가능한지, 이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이 가능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학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은 과외교습대상이므로 그 시험 준비생이 성인인 경우도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어 교습소설립·운영이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 시험준비생이 아닌

9인 이하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교습을 할 수 있고,

유아의 경우 '과외교습'의 대상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영하므로 9인 이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신고 없이 교습을 할 수 있으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 대상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와 유아 또는 성인을 동시에 교습을 하려는 경우에도 유아 또는 성인을 포함한 교습 인원을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하면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17. 12.

학습지교사의 개인과외교습자 해당 여부

학습지교사가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지?

학습지교사의 경우 헌법재판소결정(2014헌바294)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학습지판매회사)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판매원에 해당하여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율을 받으며, 학습지교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방문판매업자에 종속되어 학습지 판매에 부수하여 판매활동의 연장선상으로 학습지 관련 내용을 단기간 지도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그 경우 학습지 관련 지도행위는 학습지 판매라는 하나의 공급단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학습지교사는 원칙상 학원법상 신고 대상은 아니나, 위의 학습지 판매에 따른 지도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17. 12.

나 교습 장소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개인과외 교습 가능 여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 (지층) 또한 같을 경우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지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개인과외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12. 07.

오피스텔에서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허용 여부

개인과외 신고에서 구비서류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처럼 생긴 거주용 오피스텔이 많은데 그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기 전엔 모르는 분이 대다수인데, 외관상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건축물용도를 일일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관리대장 첨부라는 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개인과외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신청자는 좀 난감합니다. 명쾌하게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던지, 아님 거주용으로 일반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 같은 곳은 허용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과외 교습은 학습자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습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취지가 주로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 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를 위와 같이 규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경우에 양자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미신고,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8. 04. 11.

아파트 내 피아노 개인과외 교습 시 제한 가능 여부

저는 아파트라는 곳이 공공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이고 그러하기에 좀 더 조심하여야할 곳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기위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에서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려면 우선 해당 교육청에 신고만하면 방음시설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이 아파트 주거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 피아노 개인레슨이지 신고 해놓고 피아노교습학원처럼 운영하고 있고 피아노 몇 대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울려대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물론 값비싼 방음설비를 할 리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민원을 제기해 보아도 법이 그러하니 어찌할 수 없다고만 하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파트에서 피아노개인레슨을 하도록 할 땐 관련된 법으로 방음시설을 꼭 갖추도록 하게한 후 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행규정상 개인집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에 대해 일일이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용된 개인과외를 못하게 금지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고 또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원인의 의견은 법령 및 제도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11. 21.

공동주택 과외교습 규제 가능 여부

공동주택 과외교습 정말 참아야만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살펴보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하며, 또한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법에 의한 신고사항 위반 외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교습시간 제한 및 소음과 관련한 부분은 행정지도 외에는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할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의결할 수 있으며,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1조제26호에는 인근소란으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의로 이웃에 피해를 준 사례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개인적인 피해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처리하실 수 있음들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소음제거 또는 축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소음의 정도, 시간 및 기간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송비용과 시간, 이웃과의 마찰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제2청사 불법과외신고 2008. 06. 19.

과외중개 알선업체 합법 여부

저는 1달 전쯤에 다음 과외구하는 사이트에서 과외를 구하다가 과외 구한다는 글이 있어 만나서 보니 알선업체더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과외업체광고를 통해 학부모에게 연락이 오면 이걸 연결해주는 식으로 해서 선생님의 과외비가 50만원이면 50%인 25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25만원은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식으로 운영하더군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아예 제 학교와 나이, 과외경력 등을 학부모에게 속이고 과외를 알선해 주더군요. 전 곧 양심에 찔려서 그 알선자가 가고 나서는 학부모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했거든요. 이런 중개업체가 합법인가요?

과외 알선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외의 경우,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교습행위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역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과외 알선업체라는 곳은 교습과 관련 없는 일종의 직업알선소개업의 일종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 신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알선 수수료의 적정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학 재학생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외교습이 자유로운 만큼 되도록이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알선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6. 10. 10.

「학원법」 상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해석

현행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거지는 「주민등록법」 상 거주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신고된 거주지 이외의 장소도 포함이 되는지요?

2001.4.7.일 「학원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 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4.3.22일 「학원법」 및 2004.6.5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원법」 상 '개외과외교습'의 장소인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습자 또는 학습자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주소 또는 거소)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학원법」 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거주지(주소 또는 거소)를 교습장소로 신고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할청에서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 시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학원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인과외교습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8. 08. 13.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해당 학습자 외 학습자에 대한 개인과외교습 가능 여부

교습 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그 주거지의 학습자 외에 다른 학습자도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하는 자'로 이때 '학습자의주거지'에서 학습자는 해당 주거지의 학습만을 의미함. 만일 해당 주거지의 학습자 이외에 다른 학습자에 대한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한 곳의 주거지에서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학원 형태의 운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그 주거지의 학습자만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

개인과외교습자가 별도 강사 채용 시 위법 여부

개인과외교습자가 해당교육청에 신고한 후, 해당 장소에서 강사를 두고 교습행위를 하였을 경우, 허위신고로 보아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으로 보아 강사에 대하여 처분을 해야 하는지?

학원법에서는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교습을 한다면 해당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자에 해당하여 고발을 해야할 것이고, 9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자로 고발할 수 없고 시·도 조례에 의거하여 강사 채용에 따른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 강사에 대하여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사용자이고 그 강사는 피용자이며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한 것이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고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17. 12.

과외교습 중지명령에 따른 신고사항 말소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또는 폐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과외교습 중지명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으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폐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학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17조제3항 제1호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신고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폐지와 같이 신고사항을 말소해야 하나 이외의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또는 폐지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중지명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시설이나 교습행위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거지에서 교습행위를 하므로 행정제재 처분의 대상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만 해당하므로 과외 교습 중지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 12.

제4장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2. 지도·감독 질의응답

관 련 법 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학원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학원법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학원법 시행규칙”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이하 “조례”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이하 “교육규칙”

내 용	관 계 법 령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법
체납처분 (압류 등)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과태료 (부과, 징수, 독촉 등)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이하 “재무회계 규칙”)
성범죄 경력조력 조희 의무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의무 등	아동복지법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도로교통법

01 지도·감독

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 지도·점검 업무처리 절차

지도·점검 계획 수립
(정기, 특별)

민원 신고 접수
(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 등)

⇩

지도·점검 실시

1) 지도·점검 대상기관 방문
2) 지도·감독증 (신분증) 제시
3) 서류 (장부 등) 수집 필요시 사진촬영
4)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 작성
5) 대상 기관의 운영자 서명 첨부

⇩

지도·점검 결과 출장 보고 및 내부 결재

⇩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

행정 처분 통지

⇩

처분 대상 기관의 시정결과 보고

⇩

행정처분통지 및 민원처리결과 회신

⇩

관련 규정

• 법 제16조 (지도 · 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 · 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 ·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 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 ·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 · 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교육규칙 제8조 (지도 · 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2)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처분 시 참고 사항

-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함
- 청문 시 청문시작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로 청문을 종결할 수 있음 (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견서, 기타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결과를 반영 (행정절차법 제35조의2)

- 학원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학원법 제20조)
-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습중지명령 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함(교육규칙 제12조)

관련 규정

• 법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 · 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관련 규정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교육규칙 제14조 (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2. 제2차, 제3차의 행정처분은 바로 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만 한다.
3. 시정명령과 정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밝혀야 한다.
4. 주무관청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가볍게 처분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청문에 의한 행정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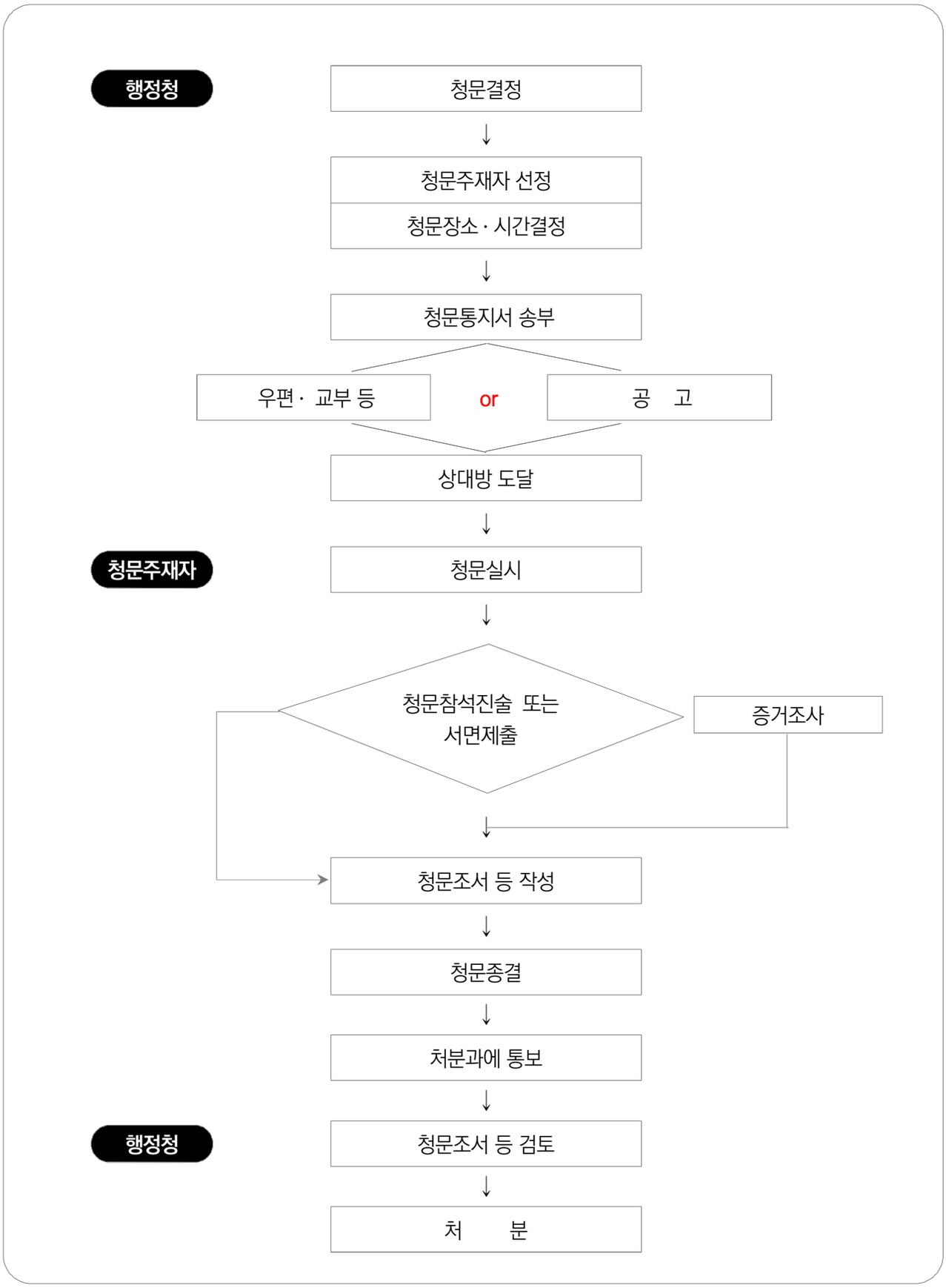
행정청
청문결정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장소 · 시간결정
청문통지서 송부
우편 · 교부 등
or
공 고
상대방 도달
청문주재자
청문실시
청문참석진술 또는
서면제출
증거조사
청문조서 등 작성
청문종결
처분과에 통보
행정청
청문조서 등 검토
처 분

Q&A

학원·교습소 직권 말소 시 청문절차 여부

(교육부 질의회신 안내(독서실 건축물 용도 등) (평생교육과-19421, 2018. 10. 18.))

【질의요지】「학원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9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업 신고(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근거로 그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 개정법령의 취지는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소)한 경우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등 사실상 폐원(소)로 볼 수 있는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학원 또는 교습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문을 거칠 실익이 없으며, 현행 학원법의 경우에도 관할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명령의 경우에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감이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다만 타 법령 사례의 경우와 같이 미리 학원 운영자 또는 교습자에게 직권말소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10일 이상 예고 필요**

Q&A

학원·교습소 직권 말소 시 과태료 부과 여부

(교육부 질의회신 안내(독서실 건축물 용도 등) (평생교육과-19421, 2018. 10. 18.))

【질의요지】「학원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신고)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지?

【회답】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 또는 교습소 폐원(소)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행하는 직권말소는 학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폐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음.**
-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의 신고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학원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 제7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신고없이 폐원(소) 또는 휴원(소)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법령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 제출기한 ⑦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3.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청문 및 의견제출 당사자에 대한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1.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거소 (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2.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6.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관련 (행정절차법)

◆ 제22조 (의견청취)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27조 (의견제출)

1.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의2 (제출의견의 반영)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청문관련 (행정절차법)

◆ 제28조 (청문주재자)

1.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①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②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③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3.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청문의 진행)

1.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3.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4.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 제34조 (청문조서)

1.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목 ②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③ 당사자 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④ 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⑤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⑥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⑦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의2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청문의 제목 ② 처분의 내용·주요 사실 또는 증거
③ 종합의견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의2 (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행정절차법 제37조)

1.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6.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행정처분 기준 (교육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

위반사항		과태료 대상 여부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원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 · 무단위치변경		정 지	말 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설립 · 운영자	설립 · 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 · 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학원 내 · 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말 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 ·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해임 미통보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	말 소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 소		
	2월이상 무단 휴원	○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월	말 소	
	허위증명발급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정 지	말 소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위반사항		과태료 대상 여부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운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장부(서류) 미비치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정 지	
2. 교습소					
시 설	무단확장 · 무단위치변경		정 지	폐 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	정 지	
교습자	교습자 무단변경		정 지	폐 지	
강사 등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정 지	폐 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 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 · 보조원 채용 · 해임 미신고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 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 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 · 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교습소 내 · 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폐 지	
교습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 지	폐 지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신고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폐 지		
	2월이상 무단 휴소	○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월	폐 지	

위반사항		과태료 대상 여부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 지	폐 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장부(서류) 미비치	○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정 지	
3.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정 지	중 지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중 지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중 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	정 지	중 지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시정명령	정지	중지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			
강사	강사 채용		중 지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다만, 정지명령 불이행의 정지처분은 1월(30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라) 학원 등 불법 운영 사례

학원 시설기준 미달 (축소 운영)

- 근거 : 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
- 사례 :
  - 당초 등록 시 강의실(실습실) 면적 부족으로 사무실이 없이 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강의실을 사무실로 전용하여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 강의실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하였다가 시설을 임의변경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도록 한 경우
  - 당초 등록 시 강의실 (실습실)로 등록하였다가 학원생이 부족하게 되자 유휴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정지, 2차 말소
- 조치사항 : 시설면적 확보

위치 무단 확장·무단 위치 변경

- 근거 : 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
- 사례 :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 신청 없이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확장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정지, 2차 말소
- 조치사항 : 변경된 장소로 학원 변경 등록

등록 (신고) 시설 임의 변경

- 근거 : 시행령 제7조, 제14조, 조례 제2조 ~ 제4조
- 사례
  -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 없이 당초 등록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시설 변경은 없으나 당초 등록 시의 강의실과 사무실 등을 서로 변경 사용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 조치사항 : 시설 변경 등록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근거 : 시행령 제7조, 제14조, 조례 제2조 ~ 제4조
- 사례 : 학원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 폐원 신고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말소
- 조치사항 : 시설 및 용도 원상회복 또는 폐원 신고

학원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 근거 : 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 사례 : 교육청에 변경 등록 (신고) 없이 인수자, 인계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설립·운영자를 무단 변경함
- 행정처분 : 1차 정지, 2차 말소
- 조치사항 :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교습비 등 초과징수

- 근거 : 법 제15조 제4항
- 사례 :
  -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당초 교육지원청에 1주 5일 1시간씩 (주당 5시간) 월 교습비 70,000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1주 5일 1시간씩 (주당 5시간)을 강의하고 월 교습비 80,000원을 징수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 1,000,000원 ~ 3,000,000원
- 조치사항 : 교습비 등 변경 등록 또는 등록된 교습비 징수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 근거 : 법 제6조, 제14조. 제14조의 2
- 사례
  - 교습비 등 변경 결정 후,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학원 (교습소) 등록 후 교습비 등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폐지·중지
- 조치사항 : 교습비 등 변경 등록

학원 등록 증명서, 교습소 신고 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미게시 (제시)

- 근거 : 법 제6조 제4항,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제5항,
- 사례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교습소 신고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개인과외 신고증명서를 게시(교습자 주거지) 또는 제시(학습자 주거지) 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 500,000원 ~ 2,000,000원
- 조치사항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학부모 요청시 제시

교습비 등 미게시 · 미표시 · 미고지

- 근거 : 법 제15조 제3항, 교육규칙 제8조의2 제2항
- 사례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교습소) 내·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에 넣어 둔 경우
  -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교습비 일체를 학원 (교습소) 주·보조 출입구 주변,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학부모가 교습비 등의 내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는데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 500,000원 ~ 2,000,000원
- 조치사항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광고 내용에 교습비 등 표시

교습비 등 거짓 표시 · 게시

- 근거 : 법 제15조 제4항
- 사례 :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가 아닌 금액을 학원 (교습소) 내·외부에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
- 행정처분 : 1차 정지, 2차 말소
- 과 태 료 : 1,000,000원 ~ 3,000,000원
- 조치사항 : 등록된 교습비 등을 표시 및 게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근거 : 법 제15조 제1항
- 사례
  - 교습비 등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 등 영수증을 봉투 형태로 하여 인장만 날인하는 경우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매출전표에 수강생 성명과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표시한 경우 영수증 인정 가능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 1,000,000원 ~ 3,000,000원
- 조치사항 : 교습비 등 영수증 교부

교습비 등의 미반환

- 근거 :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 사례
  -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교습비 등 반환 사유에 해당되어도 학원에서 반환하지 않는 경우

- 폐원, 교습정지 등 학원 측의 귀책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수에 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지 않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 ①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0,000원 ~ 2,000,000원
②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0,000원 ~ 3,000,000원

• 조치사항 : 교습비 등 환불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강사 및 직원 등)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3항, 제75조

• 사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를 하지 않고 강사나 경리 등 직원을 채용한 경우
-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하고 채용하여야 하나, 교육청에 채용 등록을 할 때 조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조회를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경우
- 여자 직원은 조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미조회한 경우
- 학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청소하러 오는 분은 학생들과 접촉이 없다고 생각하여 미조회한 경우
- 위탁 계약에 따른 학원 운영 관련자를 학원의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미조회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 성범죄 경력 - 3,000,000원 ~ 5,000,000원
아동학대 전력 - 2,500,000원 ~ 5,000,000원

• 조치사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무자격 강사 채용

• 근거 : 법 제13조,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 사례

- 자격이 없는 강사를 채용한 경우
- 어학원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강사 미검증 채용 시 과태료 1,000,000원~ 3,000,000원

-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교 1학년 재학생을 채용하는 경우
- 강사 자격이 없는 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
- 무자격자를 보조강사 명목으로 채용하여 실제 교습을 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정지, 2차 말소

• 조치사항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맞는 강사 채용, 외국인 강사 채용 전에 검증

강사 등 인적사항 거짓 게시 또는 미게시

- 근거 : 법 제13조
- 사례
  -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였으나 이름과 학력, 과목만 기재하고 자격, 생년월일 등은 기재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
  - 강사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에 넣어 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 500,000원 ~ 2,000,000원 (미게시에만 해당)
- 조치사항 : 강사 게시표 게시

강사 등 채용 및 해임 미등록

- 근거 : 법 제6조 제1항
- 사례
  - 강사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강사 채용 및 해임일 15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전임 강사만 등록하고 시간제 강사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강사채용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강사가 퇴직 후 공무원 (교사)로 임용되어 호봉획정을 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발급할 수 없게 되어 학원장 명의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호봉획정에 적용토록 하여 관계기관(임용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 원장이 자격은 되나 강사 등록 없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 조치사항 : 강사 등 채용 및 해임 등록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 운영(교습)

- 근거 : 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사례 (교습과정)
  - 입시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경우
  - 어학원에서 중·고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미술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학 등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음악학원에서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수학교습소에서 수학 외 다른 과목을 교습하는 경우
  - 어학원에서 교습과목을 영어, 일어만 등록하고 중국어를 교습하는 경우
- 사례 (교습과목)
  - 피아노 교습소에서 교습과목으로 신고하지 않은 바이올린을 교습하는 경우
  - 어학원에서 교습과목을 영어, 일어만 등록하고 중국어를 교습하는 경우

• 행정처분 : 학원-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교습소- 1차 정지, 2차 폐지
• 조치사항 : 등록된 교습과정(목) 운영 /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 변경 등록 후 운영

허위증명 발급

• 사례
- 교육지원청에 강사채용 등록 또는 강사와의 채용계약서 없이, 학원의 직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에게 경력증명서를 거짓 발급하는 경우
-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강생에게 허위로 실습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정지, 2차 말소
• 조치사항 : 강사 채용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채용 등록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료증명서 발급 시 이수시간을 정확히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근거 : 법 제16조 제3항
• 사례 : 민원 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장 방문하였으나, 운영자가 지도점검을 거부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정지, 2차 말소
• 과 태 료 : 1,000,000원 ~ 3,000,000원
• 조치사항 : 지도점검 협조 및 재발 방지 확인서 제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미이수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60조의2
• 사례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변경 이후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 차기 교육기간이 지났음에도 교육 이수를 받지 않은 경우
• 과 태 료 : 80,000원
• 조치사항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의무 위반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사례
- 어린이 통학버스을 운영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안전운행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을 운영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매 분기 안전운행기록을 소관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 태 료 : 80,000원
• 조치사항 :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및 소관교육지원청 제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배상기준 미달 포함)

- 근거 : 법 제4조 제3항, 조례 제12조
- 사례
  - 학원의 신규 설립 후 7일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가 되었는데도 즉시 재가입하지 않은 경우
  - 가입 시기를 지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였으나 그 보상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 300,000원 ~ 3,000,000원
- 조치사항 : 기준에 맞는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에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교습시간 제한 위반

- 근거 : 법 제16조 제2항, 조례 제14조
- 사례 :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에서 조례에서 정한 교습 제한시간을 넘겨 교습을 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조치사항 : 교습시간을 준수하여 교습

거짓·과대광고

- 근거 :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4항
- 사례
  - 학원광고를 하면서‘100% 취업보장’,‘100% 합격보장’,‘전국 1%이내의 명문학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경우
  - 컴퓨터학원 등에서 교육부에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부 지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미술학원에서 미술·음악학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어학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이 직접 강의”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계열학원 전체의 합격자 수를 마치 본 학원의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여 합격자 수가 많아 보이게 한 경우
  - 학원에서 전단지 광고를 하면서 강사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을 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조치사항 : 확실한 문구 및 정확한 자료를 사용하여 광고
  (소비자의 오인성이 없을 것,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것)

명칭사용 위반

- 근거 :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2조, 교육규칙 제3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 사례
  - ○○음악학원으로 설립하였으나 학원 설립 후 간판을 ○○뮤직 아카데미로 제작하여 설치 및 홍보한 경우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 ○○음악, ○○미술학원(또는 교습소)을 설립하였으나 ○○예술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 유치원으로 인가된 시설이 아님에도 유치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 오프라인에서 유치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조치사항 : 등록(신고)한 학원(교습소) 명칭 사용

장부(서류) 부실기재 (수강생 출석부 기재 삭제)

- 근거 : 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6조
- 사례 : 직원 명부와 강사등록 현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 과 태 료 : 500,000원 ~ 2,000,000원
- 조치사항 : 비치 의무가 있는 장부를 작성

※ 학원 또는 교습소 장부 및 서류 [학원법 시행규칙 별표2]

장 부 및 서 류 명	서 식	보존기간
1. 원칙 (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 · 운영 등록 증명서 (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교습소만 해당)	별지 제17호 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	별지 제22호의 2서식	준영구
5.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5년
6.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 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 (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별지 제25호 서식	3년
8. 직원명부 (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별지 제26호 서식	계속

※ 전자문서 형태로 장부 서류 관리 가능(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및 출석부, 직원 명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7794(2017.11.30.)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 근거 :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사례 : 교습소의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신고 없이 다른 임시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폐지
- 조치사항 :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통보

교습소의 강사 채용·운영

- 근거 :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사례 : 교습소에는 교습자 외에는 강사를 둘 수 없는데도,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행정처분 : 1차 정지, 2차 폐지
- 조치사항 : 채용한 강사 해임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의무 위반

- 근거 : 법 제14조의2 제10항, 시행규칙 제14조의5
- 사례 : 개인과외교습장소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중지
- 과 태 료 : 500,000원 ~ 2,000,000원
- 조치사항 : 개인과외 표지 부착

3) 과태료

가) 과태료 부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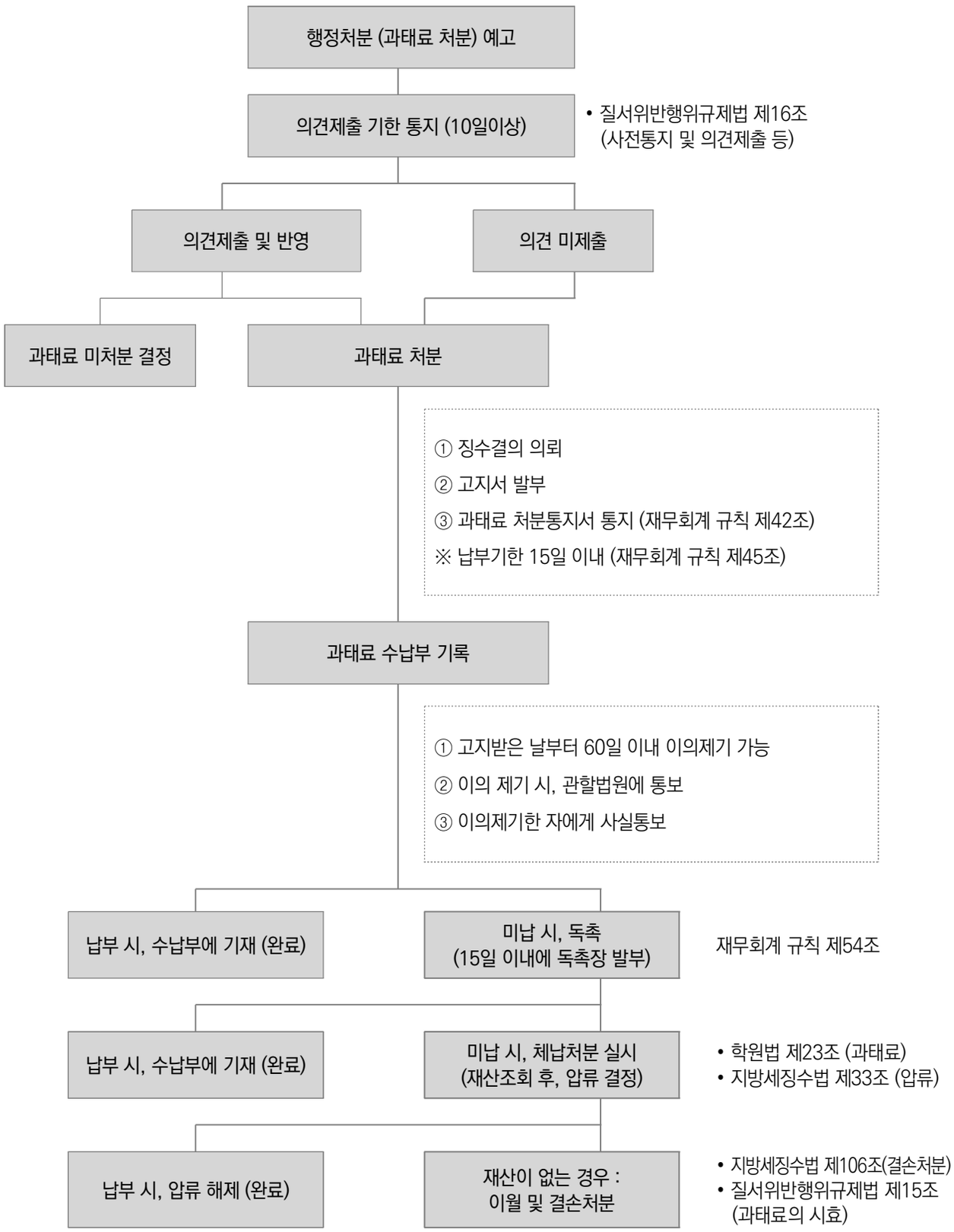

과태료 부과 안내

1)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함

2)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

4)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5) 납부기간은 통지일 부터 15일 이내로 함

6)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함.

7)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8)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함

9)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과태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 제75조 (과태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1.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0조 (이의제기)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과태료 부과 기준

학원법 시행령 [별표 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별표 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 정도가 중대하여 아동 ·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삭제 〈2020. 12. 29.〉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 ·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300	600	1,000
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마.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아동복지법 시행령 58조 [별표 17]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바.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사.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관련 [별표 6]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1의4.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5	8만원
11의5.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제4호의3	8만원
11의6.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4	8만원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항 제4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서식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서식] 〈개정 2010.12.31〉

단 속 대 장

(제 1쪽)

경찰서명 :　　출력일 :

접수 번호	접수일자	위 반 사 항		확 인 사 항		처리결과	특이사항
	위반사실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차량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위반장소	위반차량번호	차 종	차량소재지		

〈서식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개정 2008.6.20.〉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일련 번호	고지서 번호	고지연월일	과태료 금액	납부 기한	납부의무자		위반내용	납부여부		비고
		사전통지			성명	주소		납부 확인	미납 금액	
		부과통지								

297㎜×210㎜(인쇄용지(2급) 60g/㎡)

다) 과태료 징수업무 흐름도

과태료 부과

과태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지방자치법 제34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징수결정

징수결정권자 : 징수관

1.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8조 (징수결정 기준)
2. 지방자치법 제34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납입의 고지

1.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42조~제45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수납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1조~제53조

↓ (미수납 시)

체납처분(독촉)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4조~제55조

↓

체납처분 (재산조회 및 압류)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재산조회는 년2회 실시(1월,7월)
- 재산이 있을 경우 : 압류조치
- 재산이 없을 경우 :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후 불납결손

↓

이월 및 결손처분

이월 및 결손처분 결정권자 : 징수관

1.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6조~제57조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정리보류 등),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정리보류)**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라) 재산압류 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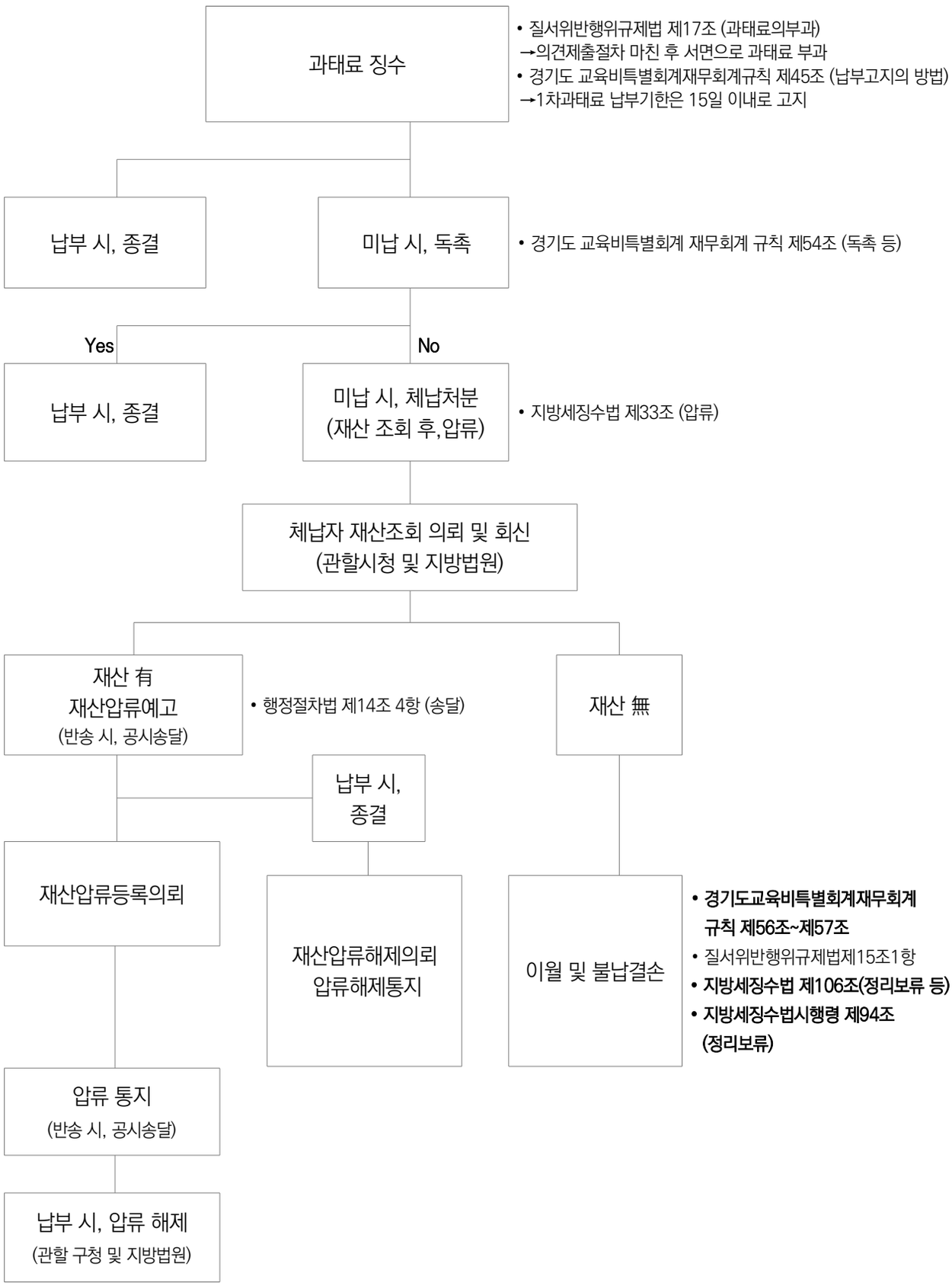
과태료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부과)
→의견제출절차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45조 (납부고지의 방법)
→1차과태료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고지
납부 시, 종결
미납 시, 독촉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 (독촉 등)
Yes
No
납부 시, 종결
미납 시, 체납처분
(재산 조회 후,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및 회신
(관할시청 및 지방법원)
재산 有
재산압류예고
(반송 시,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송달)
재산 無
납부 시,
종결
재산압류등록의뢰
재산압류해제의뢰
압류해제통지
이월 및 불납결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 제56조~제5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1항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정리보류)
압류 통지
(반송 시, 공시송달)
납부 시, 압류 해제
(관할 구청 및 지방법원)

마) 체납처분 세부 흐름도

재산압류 등기등록

관련양식 :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 자동차압류
1) 압류등기촉탁서 1부, 압류조서 1부를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교통행정과 (지자체 담당부서 확인 후)로 공문과 함께 접수 → 수수료 없음
2) 압류자동차 원부 발급 (민원24-인터넷 발급 민원) 확인→채권압류관리대장 기재 관리

◆ 부동산압류
1) 압류등기촉탁서 1부를 작성하여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촉탁서 하단에 붙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관할 등기소로 접수
- 대법원 등기소에서 신청사건처리현황 메뉴에서 압류 등록 확인

↓

재산압류 통지서 발송

관련양식 : 재산압류통지서

미납자에게 공문과 함께 압류통지서 발송

↓

재산압류말소 등기 등록

관련양식 : 압류말소등기촉탁서, 압류해제조서

◆ 자동차압류
1) 압류말소등기촉탁서 1부, 압류해제조서 1부를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교통행정과 (지자체 담당부서 확인 후)로 공문과 함께 접수→수수료 없음

◆ 부동산 압류
1) 압류말소등기촉탁서 1부, 압류해제조서 1부를 작성하여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촉탁서 하단에 붙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관할 등기소로 접수

↓

재산압류해제 통지서 발송

관련양식 : 압류해제통지서

완납자에게 공문과 함께 압류해제통지서 발송

4) 고발

가) 무등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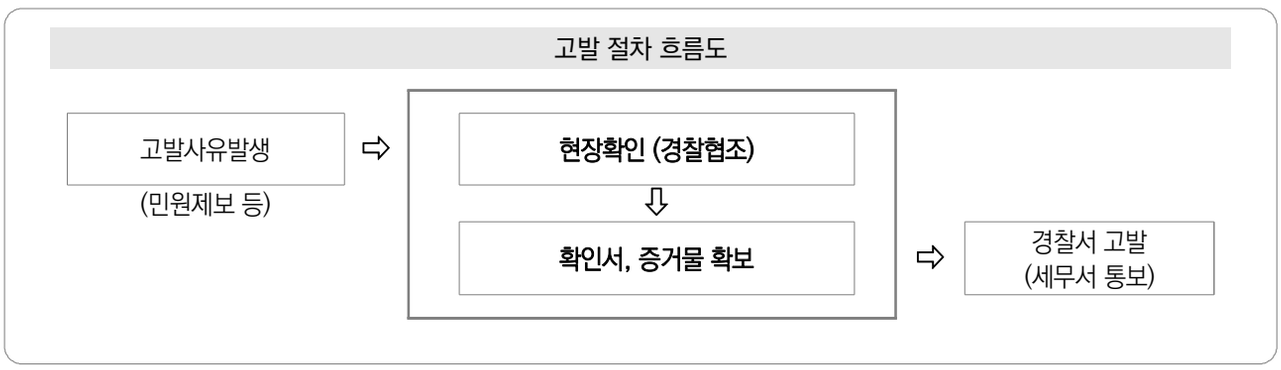

○ 근 거 : 법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22조

☞ 학원 (동 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곳)과 교습소 (초·중·고등학생 또는 입시준비생 등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교육청에 등록 (신고)해야 함

○ 점검 요령

- 교습요일 및 시간대를 파악하여 교습 중 단속 시행
  - 사전 준비물 : 사진기, 공무원증, 사실확인서 양식
  - 필요 시 경찰서 형사 1-2명 동행 협조 요청
- 공무원증 패용 후 단속대상 민원인에게 제시
- 현장 증거물 확보
  - 미등록 명칭 간판 및 건물 외부 모습
  - 교습현장 사진 및 동영상
  - 교재 및 교습비 영수증
  - 사실확인서 미작성 시 상담내역 동영상 촬영
- 운영자로부터 교습내용·수강생수·교습비 등 확인
- 필요 시 교습중인 학생으로부터 사실확인서 확인
- 점검자, 확인자 (무등록, 미신고자) 서명
- 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발 조치

※ 추가조치 : 등록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 제19조)

-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주의사항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
- 해당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나)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학 원	1. 학원법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한 자
교습소	3. 학원법 제14조 제1항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개인과외교습자	4.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 제2항)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외교습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을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 제3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원법 제19조제2항 (학원 등에 대한 조치)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다) 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근 거 : 법 제16조제6항, 시행령 제17조의5, 시행규칙 제17조

내 용

구 분	포상금액	비 고
미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2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 등 허위 표시·게시·고지	1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 등 초과 (학원, 교습소)	1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 등 초과 (개인과외)	10만원	전과목
교습시간 위반	1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월 교습비의 50% (500만원 한도)	

- 조치사항 :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 통보
-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관련 규정

- **법 제16조제6항**

⑥ 교육감은 미등록 · 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 **시행규칙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무

1) 지도·점검 계획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20○○년도 학원 등 지도·점검 계획 수립

1. 관련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감독 등)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지도·감독)

2. 20○○년도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학부모들의 학원 교습비 등의 경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20○○년도 학원 등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년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계획 (안) 1부.

2. 학원 등 지도점검표 및 비치서류 목록 1부. 끝.

TIP!

- 학원 등 지도·점검계획은 지역별 월별계획, 연간계획, 중장기계획 등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표

학원(교습소)명	설립자	등록번호	위 치	전화번호	점검일

점검분야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설립운영자/교습자	설립운영자/교습자 무단 변경	해당없음 □ 무단 변경 □
	시설 관리 적정성	적정 □ 시설기준미달 □ 시설임의변경 □ 무단위치변경 □
시설 관리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불량 여부	적정 □ 부적정 □
	등록된 시설 전부 타 용도로 무단 전용	해당없음 □ 무단 전용 □
교습비등 관리	교습비등 징수 및 반환 적정성	적정 □ 부적정 □ (초과징수,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게시·표시 및 허위 여부	게시(표시) □ 미게시(표시) □ 허위게시(표시) □
	광고(인쇄물,인터넷 등) 시 교습비등 미표시	표시 □ 부분표시 □ 미표시 □ 허위표시 □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게시 □ 부분게시 □ 미게시, 거짓게시 □
	교습비등 영수증 교부 여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와 대조)	교부 □ 미교부 □ (위반사례 :)
	옥외가격표시 실시 여부	실시 □ 미실시 □
범죄경력 조회 등	성범죄경력(강사, 직원) 조회 여부	적정 □ 미조회 □ ( )
	아동학대범죄 전력(강사, 직원) 조회 여부	적정 □ 미조회 □ ( )
강사 등 관리	무자격강사 등 채용 여부 및 외국인 강사 미검증	적정 □ 부적정 □ (명단: 내용:) 해당없음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 채용	적정 □ 부적정 □ ( )
	강사 인적사항 게시·표시 및 허위 여부	게시(표시) □ 미게시(표시) □ 허위게시(표시) □
	강사채용 및 해임 이행 실태	적정 □ 부적정 □ (채용, 해임)
학원 운영	학원 등록증 게시 여부	게시 □ 미게시 □
	광고 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록·신고번호,학원명칭,교습과정,교습과목 등)	해당없음 □ 표시 □ 부분표시 □ 미표시, 거짓표시 □
	등록외 교습과정(과목) 운영	미운영 □ 운영 □ ( )
	교습과목 위반	적정 □ 부적정 □
	제장부 비치 및 적정 관리 여부 (특히, 수입·지출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적정 □ 부적정 □ (위반사례:)
	명칭 사용 위반	적정 □ 부적정 □ (명칭표기 위반,)
	선행학습유발/거짓·과대 광고 여부	적정 □ 부적정 □ (선행학습 광고, 거짓·과대 광고)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여부	적정 □ 부적정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적정 □ 부적정 □ (안전사고, 풍기문란, 체벌/폭력 등)

점검분야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수질검사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학원 내 급식실시 여부	미실시□ 실시 □ (제공방법 :)
		비조리 □ 조리 □ (인원: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부적정 운영	해당없음 □ / 허위증명발급 □ /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 무단 기숙시설 운영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 허위·부정 등록 □ / 교습시간 위반 □/정지명령 불이행 □ / 2월이상 무단 휴원·무개원 □ /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안전일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	적정 □ 부적정 □ (미가입, 기준미달:)
	학원 교육환경 및 시설 안전(전기, 가스 등)	적정 □ 부적정 □
	통학차량 보험 가입여부	해당없음 □ 적정 □ 부적정 □ (미가입, 기준미달:)
	통학차량 정기점검 여부	해당없음 □ 적정 □ 부적정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하차확인장치 설치 작동	해당없음 □ 설치 □ 미설치 □ (사유:)
	통학버스 운영 신고/ 유상운송 허가	해당없음 □ 신고(허가) □ 미신고(미허가) □ (운영, 유상운송)
	동승보호자 지정·운영	해당없음 □ 지정 □ 미지정 □ (사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여부	적정 □ 부적정 □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적정 □ 부적정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해당없음 □ 이수 □ 미이수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소방 안전관리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적정 □ 부적정 □ (미비치, 장애물 적치)
	피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점등 상태	적정 □ 부적정 □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기 적정 비치 및 유효기간 적정	적정 □ 부적정 □ (소화기 비치, 유효기간 초과)
교육 이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이수 □ 미이수 □ 일부이수 □ (미이수교육:)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해당없음 □ /강박행위 □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 현지시정 :		
◎ 지적사항 :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table>
<tr><th colspan="6">운 영 현 황</th></tr>
<tr><td rowspan="3">교습자
인 적
사 항</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 colspan="4">(☎)</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교습장소 (위치)</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교 습 시 작 일</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2">교습대상 및 인원</td><td>초등</td><td>중등</td><td>고등</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교습과목</td><td>신 고</td><td></td><td></td><td></td><td></td></tr>
<tr><td>운 영</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교 습 시 간</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교습비</td><td>신 고</td><td></td><td></td><td></td><td></td></tr>
<tr><td>운 영</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개인과외교습자 수
준수 여부 (강사채용여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개인과외 표지부착 및
신고증명서 게시 여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2">교습비 관련 규정
준수여부</td><td colspan="3">세부 사항</td><td>점검결과</td></tr>
<tr><td colspan="3">·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학습장소 게시 여부
·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 등 표기 의무
· 교습비 등 거짓으로 표시·게시 ·고지 하거나 등록 신고한 교습비 등 초과징수 여부
· 교습비 등 거짓으로 표시·게시 ·고지 하거나 등록 신고한 교습비 등 초과징수 여부
· 교습비 등 조정명령 이행 여부</td><td></td></tr>
<tr><td colspan="2">지도점검에 따른 처분 및 기타 의견</td><td colspan="4"></td></tr>
</table>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확인자 : 개인과외신고자 (서명/인)

점검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교습 시간 준수여부 특별 지도·점검표

학원(교습소)명	설 립 (신고)자	등록(신고) 번 호	위 치	전화번호	점검일

점검 분야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교습 시간	◎ 교습 제한시간 준수 여부	수업종료시간 초 : 중 : 고 :	
기타			

◎ 현지시정사항 :	◎ 지적사항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확인자 :_____학원(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자 (서명/인)

점검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확 인 서

경기도○○교육지원청 학원담당 공무원이 _____학원 (교습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건명 :

2. 내용 :

년 월 일

확인자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직: 성 명 : (인)

점검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확 인 서

경기도○○교육지원청 학원담당공무원이 _____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교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교습기간 :

2. 교습장소 및 변경일자 :

3. 교습과목 :

4. 교습대상 및 교습비 : 초 명 × 원
중 명 × 원
고 명 × 원

합 계 명 원

5. 1일 교습시간 : 초 -
중 -
고 -

20○○년 ○월 ○일

확인자 주민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점검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확 인 서

_____은(는) 강사를 채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교습기간 :

2. 교습장소 및 변경일자 :

3. 교습과목 :

4. 교습대상 및 교습비 : 초 명 × 원
중 명 × 원
고 명 × 원

합 계 명 원

5. 1일 교습시간 : 초 -
중 -
고 -

6. 강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채용기간 (급여) -
교습과목 -

20○○년 ○월 ○일

확인자 생년월일 : -
주 소 :
연 락 처 :
직: 성명 : (인)

점검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2) 행정처분

가) 지도·점검 결과 보고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등 지도·점검 결과 보고

1. 관련

가. ○○○○○과 - ○○○(20○○.○.○.)호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감독)

2. 20○○. ○. ○. ~ 20○○. ○. ○에 실시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학원 등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학원 등의 지도 점검 결과

Ⅰ. 지도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 ○. ~ 20○○. ○. ○.

○ 점 검 자 : 평생교육팀 지방교육행정주사 ○○○ 외 ○명

○ 점검대상 : ○○학원 외 ○개원

Ⅱ. 점검 내역

구분	점검수	점검결과내역							과태료	비고
		정상 운영	시정 명령	정지	등록 말소	처분 불요	고발	합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합계										

Ⅲ. 점검 결과

순번	학원명 (등록번호)	설 립 운영자	점검일	위반사항	1년이내 동일사항 위반여부	처분예정의견
1	○○학원 (제○○○호)	○○○	○.○	·2월이상 무단 휴원	해당 없음	등록말소 과태료 100만원
2	○○음악학원 (제○○○호)	○○○	○.○	·무단시설변경 ·허위·과대광고 ·강사인적사항 미게시	해당 없음	시정명령 과태료 50만원
3	○○학원 (제○○○호)	○○○	○.○	·강사 채용 미등록 ·보험가입 금액 미달	해당 없음	시정명령
4	○○학원 (제○○○호)	○○○	○.○	·강사 해임 미통보 ·기타학원운영관련부조리	2017.00.00 강사해임미통보 (시정명령)	정지(2차위반)
5	○○학원 (제○○○호)	○○○	○.○	·위치 무단 변경	해당 없음	정지

나) 행정처분 사전 통지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등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관련근거

가. ○○○○○과 - ○○○ (20○○.○.○.)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 학원(교습소)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학원 외 ○개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에

3.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운영자 귀하 (○○시 ○○로 ○○번길 ○○, ○층)

제목 학원 등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알림

1. 관련근거

가. ○○○○○○과 - ○○○ (20○○.○.○.)호.

나.「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관계법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귀 학원에서는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3.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서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20○○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간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 사전 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전자우편 주소</td><td colspan="3"></td><td>팩스번호</td><td></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4">년 월 일까지</td></tr>
</table>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mmx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제3항,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등의 행정처분

1. 관련

가. ○○○○○○과 - ○○○ (20○○.○.○.)호.

나.「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 "○○학원 외 4개원"에서는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의견이 없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결과보고 : 20○○년 ○월 ○일(○)

나. 결과보고 제출장소 : 경기도○○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다. 대상학원 : ○○학원 외 4개원

붙임 1. 학원 등 지도점검 행정처분안 1부.
2. 행정처분 통지서 5부.
3. 조치결과 보고서 5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 (6)

학원 등 지도점검 행정처분안

번호	학원명 (등록번호)	설 립 운영자	위 반 사 항	1년 이내 동일사항 위반여부	행정 처분	과태료
1	○○학원 (제0000호)	○○○	- 2월이상 무단 휴원	해당 없음	등록말소	100만원
2	○○음악 학원 (제0000호)	○○○	- 시설임의변경 - 강사인적사항 미게시	해당 없음	시정명령	50만원
3	○○학원 (제0000호)	○○○	- 강사채용 미등록 - 보험가입 금액 미달	해당 없음	시정명령	해당 없음
4	○○학원 (제0000호)	○○○	- 강사해임 미통보 - 기타학원운영관련 부조리	20○○.○.○ 강사해임 미통보 (시정명령)	정지 (2차위반)	해당 없음
5	○○학원 (제0000호)	○○○	- 무단위치변경	해당 없음	정지	해당 없음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6.2.24.〉

제 호

행정처분 통지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알려 드립니다.

학원 (교습소)명		설립 · 운영자	
위 치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시 정 사 항			
시 정 기 한			
알리는 사항	1.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2.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가중 처분을 받게 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임의서식]

위반사항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

학원명 (교습소명)	*○○학원 (교습소)*	등록번호	제 000 호
위치	*경기도 00시 00로 00번길 00,0층*	*(전화번호: 031-000-0000)*	

지적사항	시정 결과
1.	1.
2.	2.
3.	3.

붙임 증빙서류 1부

행정처분 사항을 위와 같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학원 설립 · 운영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운영자 귀하 (○○시 ○○로 ○○번길 ○○, ○층)

제 목 학원 등의 행정처분 (시정명령) 알림

1. 관련

 가. ○○○○○○과 - ○○○ (20○○.○.○.)호.

 나.「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 귀 학원에서는 붙임의 행정처분서와 같이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의견이 없어,

3.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차후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20○○.○.○.(○)까지** 붙임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000@goe.go.kr) 또는 인편,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조치결과 보고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운영자 귀하 (○○시 ○○로 ○○번길 ○○, ○층)

제 목 학원 등의 행정처분(정지) 알림

1. 관련

가. ○○○○○○과 - ○○○ (20○○.○.○.)호.

나.「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 귀 학원에서는 붙임의 행정처분서와 같이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의견이 없어,

3.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차후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4. **행정처분 통지서를 게시**하여 학원운영 정지처분으로 인한 학습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20○○.○.○.(○)까지** 붙임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000@goe.go.kr) 또는 인편,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조치결과 보고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 (6)

다) 청문에 의한 행정처분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의 행정처분 (등록말소)(안)

1. 관련

가. ○○○○○○과 - ○○○ (20○○.○.○.)호.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 ○○학원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 설립·운영자 ○○○은 20○○.○.○.부터 학원 운영을 2월이상 무단 휴원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사항

학원명 (등록번호)	설 립 운영자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비고
○○학원 (제0000호)	○○○	2월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과태료 100만원	

붙임 출장복명서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의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1. 관련

가. ○○○○○○과 - ○○○ (20○○.○.○.)호.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행정절차법」 제21조

2.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는 2월 이상 무단휴원하여 학원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에, 관련법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학원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나. 의견제출기일 : 20○○.○.○.(○) 14:00까지

다. 청문일시 : 20○○.○.○.(○) 14:00

라. 청문장소 : 2층 소회의실

마. 청문주재자 : ○○교육지원청 ○○○○○○과 지방교육행정○○ ○○○

학원명	설립자	학 원 주 소 설립자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비고
○○학원	○○○	○○시 ○○구 ○동 ○번지 ○층 ○호 ○○시 ○○구 ○동 ○번지 ○층 ○호	2월이상 무단휴원	- 등록말소 - 과태료100만원	

붙임 1.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TIP!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주재자)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우선 선정하여 청문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선상의 직원은 청문주재의 제척사항에 해당되므로 다른 소속 직원 중 당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주재자로 선정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5">청문실시</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일시</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시간)</td><td>장소</td><td></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td></tr>
<tr><td>성명</td><td colspan="4"></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귀하 (○○시 ○○구 ○○길)

제 목 ○○학원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나.「행정절차법」 제21조

2.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하고자 하며,

3.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청문에 출석하시거나 청문기일 전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학원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나. 의견제출기일 : 20○○.○.○.(○) 14:00까지

다. 청문일시 : 20○○.○.○.(○) 14:00

라. 청문장소 : 2층 소회의실

붙임 1.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행정처분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재실시 및 공고

1. 관련

 가. ○○○○○○과 - ○○○ (20○○.○.○.)호.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3. 재청문 일시를 아래와 같이 정해 우리교육지원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4. 아울러, 공시송달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타시·도의 교육지원청에 공시송달 게시협조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학원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나. 의견제출기일 : 20○○.○.○. 14:00까지

 다. 청문일시 : 20○○.○.○. 14:00

 라. 청문장소 : 2층 소회의실

학원명	설립자	학 원 주 소 설립자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비고
○○학원	○○○	○○시 ○○구 ○동 ○번지 ○층 ○호 ○○시 ○○구 ○동 ○번지 ○층 ○호	2월이상 무단휴원	- 등록말소 - 과태료100만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TIP!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평생교육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공고 제○○호

등록말소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 · 운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학 원 명	설 립 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학원	○○○	경기도 ○○시 ○○로 ○○길	수취인불명-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월 이상 무단 휴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100만원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 청문실시 :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교육지원청 ○○○○과
   ② 일 시 : 20○○년 ○월 ○일(○) 14:00
   ③ 장 소 : 경기도○○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교육지원청 ○○○○과 ○○담당 ○○○
6. 공고기간 : 20○○. ○. ○.~ 20○○. ○. ○.
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 붙임과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 경기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지원청 ○○○○과 (☎031-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처 참조

제 목 학원의 행정처분 (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록말소)을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3. 우편물이 반송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행정처분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결과보고

1. 관련

가. ○○○○○○과 - ○ (20○○.○.○.)호.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0조

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5조

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 행정처분 (등록말소) 대상 학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당사자에게 통지 및 공시송달 하였으나,

3. 의견서 미제출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아 청문주재자의 청문절차를 종결하고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팩스번호 ( ) - / 비공개 (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8〉

청 문 조 서

<table>
<tr><td>제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문주재자</td><td>소속</td><td colspan="4"></td></tr>
<tr><td>성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td><td>성명(명칭)</td><td colspan="2">주소</td><td>출석
여부</td><td>불출석한
경우의 사유</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2">참석한
행정청의 직원</td><td>직위</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청문의
일시 및 장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문공개</td><td>공개 여부</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이유</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당사자등의 진술내용</td><td>요지</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제출된 증거</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증거조사</td><td>요지</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증거</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기 타</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열람 ·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22.7.11.〉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 · 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문내용(예시) - 청문참석 시

1. 건명 : ○○학원 행정처분 (등록말소)
2. 일시 : 20○○. ○. ○. (○) ○:○
3. 장소 : 경기도○○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4. 참석자
   1) 당사자 : ○○학원설립·운영자 ○○○
   2) 청문주재자 : 경기도○○교육지원청 직 ○○○○담당 성명 ○○○
   3) 청문입회자 : 경기도○○교육지원청 직 ○○○○담당 성명 ○○○
      경기도○○교육지원청 직 ○○○○담당 성명 ○○○
5. 청문내용

   질문1 〈청문주재자〉 귀하께서는 경기도 ○○시 ○○로 ○○번길 0층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1 〈당사자〉 …

   질문2 〈청문주재자〉 우리청에서 귀 원을 확인한 결과,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답변2 〈당사자〉 …

   질문3 〈청문주재자〉 우리 청에서는 위의 사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원을 등록말소할 예정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답변3 〈당사자〉 …

   질문4 〈청문주재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4 〈당사자〉 …

20○○. ○. ○.

진술자 주 소 : ○○시 ○○로 ○○길 ○층
생 년 월 일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직 ○○○○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문입회자 직 ○○○○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35조 제2항

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라. ○○○○○○과 - ○ (20○○.○.○.)

2. 행정처분 (등록말소) 대상 학원에 대하여 20○○.○.○. ○:○부터 청문을 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20○○.○.○.)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 제출도 하지 않으므로 청문을 종결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등록말소) 하고자 합니다.

- 학원행정처분 (안) -

학원명	설립자	생년월일	학원위치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학원	홍길동	19○○.○○.○○	○○시 ○○로 ○○번길, ○층	등록말소, 과태료100만원	20○○.○.○	2월이상 무단 휴원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귀하 (○○시 ○○로 ○○길 ○층)

제 목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통지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1항, 제2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35조 제2항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마. ○○○○○○과 - ○ (20○○.○.○.)호.

2. 귀하가 등록·설립하여 운영해 온 ○○학원이 2월이상 무단 휴원 하였기에 행정처분 (등록말소) 하고자 20○○.○.○.○:○부터 청문실시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20○○.○.○.)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없어 청문을 종결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등록말소)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학원명	설립자	생년월일	학원위치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학원	홍길동	19○○.○.○	○○시 ○○로 ○○번길, ○층	등록말소, 과태료100만원	20○○.○.○	2월이상 무단 휴원

3. 귀하께서는 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등록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 목 학원 등록말소 명단 알림

1.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 등록말소 된 학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명	설립자	생년월일	학원위치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학원	홍길동	19○○.○○.○○	○○시 ○○로 ○○번길, ○층	등록말소, 과태료100만원	20○○.○.○	2월이상 무단 휴원

끝.

수신자 : 전국시도교육청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세무서장, ○○시장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3) 과태료

가) 과태료 부과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운영자 귀하 (○○시 ○○구 ○○길)

제 목 학원 행정처분 알림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5조

2. 귀 학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사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20○○.○.○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 과태료가 없는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사전 통지서 1부.
 2. 과태료사전 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인적사항

주소	
성명 / 업체명	
성명 한문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내용

위반일자	
위반법조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금액	원
※ 산출기초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20%감경)	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인 0000년 00월 00일까지 동봉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우리교육지원청 ○○○○○○과 (전화번호 : 031-000-0000,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주소: 00시 00구 00동 0000-00(우편번호: 000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타법률에서 서식 인용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학원 과태료 부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3조

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다. ○○○○○○과 - ○ (20○○.○.○.)

2. ○○학원의 강사인적사항 미게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20○○.○.○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동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부.
2. 과태료 납부서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 · 운영자 귀하 (○○시 ○○구 ○○길)

제 목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알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3조

나. ○○○○○○과 - ○ (20○○.○.○.)

2. 귀하의 강사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본고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금액의 3%가 가산되고,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되는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가산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1부.
2. 과태료 납부서 1부.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지서식 4호)

행정청명 : 경기도○○교육지원청
행정청주소 :
제 목 :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17년○월○일까지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고액 · 상급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과태료부과고지서)의 명시해야할 내용이 일부 없어 타서식 인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개정 2016.3.7.〉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42조 제1항 관련)

납입고지서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납부금액											
			억			만				원	

일금 원정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금고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납부자 ○○○ 귀하

영수필통지서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납부금액											
			억			만				원	

일금 원정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징수관 귀하

납 부 기 관
수입금출납원 경기도교육청

영수증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 수 번 호	C

납부금액											
			억			만				원	

일금 원정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부자 ○○○ 귀하

[관세법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학원(교습소)명				
신 청 인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준		⑥납 부 통 지 문 서 번 호	
	⑤통지받은 날짜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처분이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위와 같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교현장지원과장

제 목 과태료 부과 대상 징수결정 요청 (○○학원)

1. 관련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다.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라. ○○○○○○과 - ○(20○○.○.○.)호.

2. 아래의 학원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니 대상학원에 대하여 징수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과태료	납부기한
○○학원	○○○	○○시 ○○로○○번길○○,○층	일금사십만원 (₩400,000)	20○○.○.○

※ 처분 과태료는 금 500,000원이나, 행정처분 의견제출기간 (20○○.○.○ ~ ○.○)내 납부 시 20%감면조치에 따라 금 400,000원 징수결정을 요청함

나. 기타 : 관련 근거 나호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원에 행정처분을 시행하면서 과태료 부과 (납입고지)에 대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ㅇㅇ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 · 운영자 귀하 (○○시 ○○구 ○○길)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

1.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라.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

2. 우리교육지원청 학원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관내 학원(교습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귀하의 학원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어 2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납부 기간이 경과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금액 (단위:원)			입금계좌	비고
		과태료	가산금	합계		
○○학원 (○○○)	20○○.○.○ ~ 20○○.○.○	500,000	15,000	525,000	농협 000-00-000000 예금주:○○교육지원청	

붙임 1. 과태료 납부 독촉장 1부.

2. 납부통지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6호] 〈개정 2016.3.7.〉

세입금납입독촉장 (제54조 제1항 관련)

(제 차) 세입금납입독촉장

납 입 금 액	원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징수관	
과 목	장	관	항	목	납입기한 년 월 일
적 요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지방법원장 귀하 (○○○○과장)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 원 명 : ○○학원설립·운영자 홍길동

나. 처분사유 : 강사 인적 사항 미게시

다. 처분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호

붙임 1. 과태료 처분 공문 사본 1부.
2. 처분통지서 사본 1부.
3. 고지서 사본 1부.
4. 처분이의 신청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예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문서번호 : ○○○○○○과-○ (20○○.○.○.)
수　　신 : ○○지방법원 (○○○○과장)
발　　신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학원명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이의제기자)</td><td>성　명</td><td>한글 :
한자 :</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과태료 처분일자</td><td>통지일자</td><td></td><td>과태료금액</td><td></td></tr>
<tr><td>부과기간</td><td></td><td>이의제기일자</td><td></td></tr>
</table>

붙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설립 · 운영자 귀하 (○○시 ○○구 ○○길)

제 목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 통보 사실 알림

1. 관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2. 귀 원에 과태료 처분 (강사 인적 사항 미게시)을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우리 관할 지방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 원 명	과태료 내역	이의제기 일자	통보일자	통보기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나) 재산압류 및 해제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시장 (교통과장 - 관련부서는 시군마다 다를 수 있음)

제 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록 촉탁

1. 관련

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2호

2. ○○학원은 휴원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휴원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의 등록을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압류등기 촉탁서 1부.
2. 압류조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 및 등기일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 권리자		지방자치단체
등기 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 외국인) 등 록 번 호	
	주소(영업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따름)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성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 면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조서 부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제41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
선박의 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 및 등기일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등기권리자		지방자치단체
등기 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 외국인) 등 록 번 호	
	주소(영업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따름)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성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압류조서 부

※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총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압 류 조 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 · 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 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비고: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참여자 성명란 하단에 표기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장 ○○○ 귀하

제 목 압류 통지

1. 관련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2호 (과태료)

2. 귀하께서 운영하던 ○○학원의 법규 위반 (무단 휴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체납하여 귀하의 재산압류사항을 통지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압류통지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재산 압류 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귀하(귀 법인)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시장

제 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해제 의뢰

1. 관련

가. ○○○○○○과 - ○(20○○.○.○.)

나. 지방세징수법 제6조

2. 과태료를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된 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재산압류해제를 의뢰합니다.

붙임 압류해제조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압류해제조서

문 서 번 호			압 류 번 호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 외국인) 등 록 번 호	
	주소 (영업소)			
압류일		년 월 일 압류		
압류해제 사유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 · 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_____에 해당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100g/㎡)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학원 ○○○ 귀하

제 목 압류해제 통지

1. 관련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2.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아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완납되었기에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압류해제 통지서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해제 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아래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			
압류해제 사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4) 무등록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경찰서장 (수사과장)

제 목 무등록 학원 교습행위고발

1.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고발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조사일)	운영자	주민등록 번 호	운영장소	위반사항	처분근거
○○○○ (20○○.○.○.)	○○○	600101 - 1******	○○시 ○○로 ○○길	무등록 학 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붙임 1. 고발장 1부.
2. 확인서 1부.
3. 현장사진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건 명	운영자	교습장소	연락처	비고
무등록학원	홍 길 동 (600101-1******)	○○시 ○○로 ○○길 ○층	031-0000-0000, 010-1234-OOOO	

2. 고발사유

상기 피고발인 홍길동 (600101-1******)은 ○○교육지원청 지도점검반이 20○○.○.○. ○시 ○분경 ○○시 ○○로 ○○길 ○층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자 홍길동 (600101-1******)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보습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 확인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하면 “학원이란”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음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6조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에 의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교습행위를 하여 왔음

홍길동 (600101-1******)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 (교습소) 시설의 적정여부, 소방안전상 적정여부, 설립·운영자의 결격여부, 강사의 자격 적정여부, 수강료의 적정여부, 교습과정의 적정여부, 설립·운영자의 책무성 (학생 안전보험 가입 등) 주지 등 일련의 설립절차』를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아 학원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설립 절차행위 없이 무등록 상태에서 교습행위를 하였음

이에 『동법 제22조 (벌칙) ①항 1호 (또는 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에 고발함

3. 관계법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

4. 첨부서류

가. 확인서 원본 (스캔) 1부

나. 현장확인 사진 1부

20○○. ○.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장 귀하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세무서장 (소득세과장)

제 목 무등록 학원 세무자료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등록 학원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구분)	운영자	주민등록번호	교습장소	위반사항 (현지 확인)
○○학원 (무등록학원)	홍길동	600101- 1******	○○시 ○○구 ○○길	○ 무등록 학원운영 - 기 간 : 0000.00월~조사일 현재 - 수강생 : 0명(유·초·중학생) - 과 목 : 영어 - 교습비 : 80,000원~130,000원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 귀하 (○○시 ○○동 ○○길)

제 목 무등록 학원 (교습소) 교습중지 알림

1.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우리 교육지원청에 운영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원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등록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귀하께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공무원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되었기에 즉시 시설 내 교습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학원설립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과(031-000-0000 담당자 ○○○)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5) 신고포상금위원회 구성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경기도○○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1. 관련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3

2.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위원회 구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붙임 경기도○○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안) 1부.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5,6)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

□ 관련법령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설치근거

규칙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규칙 제8조의3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①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생교육건강과장(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경기도○○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 1명 (평생교육건강과장 : 당연직, 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 위 원 : 7명 (위원장포함)

-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직위 (보직)로 임명

○ 임 기 : 20○○. ○. ○. ~ 20○○. ○. ○. (2년)

□ 심의 내용

교육규칙 제8조의3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의 준수사항

규칙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신고포상금 지급

법 제16조 (지도 · 감독 등)

⑥ 교육감은 미등록 · 미신고 교습,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7조의5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에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행위
5. 삭제
6.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16.〉

1. 미성년자
2.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 · 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3.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 20만원
2. 영 제17조의5제1항제3호의 행위 : 월 교습비의 50퍼센트 (500만원 한도)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 : 10만원

②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교육규칙 제8조의4 (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신고포상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 · 게시 · 고지한 경우 사진 또는 증빙자료
3. 교습비 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교습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신고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경기도○○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위원회 구성

1. 관련 : ○○○○○○과 - ○ (20○○.○.○.)

2. 경기도○○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위원구성현황 (7명)

직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건강과장	○○○	위원장
위원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	
위원	초등교육지원과	장 학 사	○○○	
위원	중등교육지원과	장 학 사	○○○	
위원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위원	학교현장지원과	예 산 담 당	○○○	
위원	학교현장지원과	경 리 담 당	○○○	

나. 임기 : 20○○.○.○ ~ 20○○.○.○ (2년).

다. 직위로 위촉. 끝.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경기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제 목 경기도○○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촉장 전달

1. 관련 : ○○○○○○과 - ○ (20○○.○.○.)

2. 경기도○○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 전달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들께서는 참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 (○) 14:00~15:00

나. 장소 : 2층 소회의실

다. 참석대상 (7명)

직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건강과장	○○○	위원장
위원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	
위원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	○○○	
위원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	
위원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위원	학교현장지원과	예산담당	○○○	
위원	학교현장지원과	경리담당	○○○	

붙임 위촉장 1부. 끝.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건강과 - (20○○.○.○.) 접 수 ( )

우 - 경기도 ○○시 ○○로 ○○ /홈페이지주소 : www.○○○.go.kr

전화 ( ) - / 전송 ( ) - / 비공개 (6)

교육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2.14.〉

신고포상금 관리대장

[단위:원]

접수번호	신고일	접수일	접수방법	신고자			신고내용			점검일	행정조치결과	지급내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유형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소재지			지급결정일	지급일	지급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02 지도·감독 질의응답

학원운영 중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말소 절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학원 운영·설립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학원 운영·설립자가 당해 규정에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해당된 경우에는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는 명시규정에서 효력을 잃는 범위는 등록에 대한 행정취소인지 아님 등록 말소에 의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시점부터 그 학원등록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행정청은 등록말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전자민원창구 번호 108726 2004. 06. 04.

교습비 등 변경등록 수리 전 신청 금액으로 징수 시 행정처분 여부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변경등록 신청하였고, 교육장이 변경등록 신청한 교습비 등의 과다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에서 학원설립·운영자가 변경등록 신청한 교습비 등을 학습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육장에게 교습비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교습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교육장에게 변경등록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장이 교습비 등을 변경등록 수리하기 전까지는 변경등록 신청한 교습비 등을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안 되고, 이전의 등록 (통보)된 교습비 등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신문고 회신사항 2012. 04. 19.

교습비 초과 징수 시 반환 명령 가능 여부

학원이 교습비를 표시·게시한 금액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 (법제17조) 규정만 있지 교습비 반환규정 (법제18조, 동시행령18조)에는 빠져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행정처분에 따라 휴원, 폐원되었을 경우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하고 1차 경고 때에는 수강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면 되는지, 1차 경고 때에도 초과징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어디까지 반환해야 하는지 (예, 교습비를 월단위로 징수할 경우 수강이 종료된 월의 수강료 문제), 1차 경고 때 반환하지 않을시 법 제23조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학원법에서 교습비 반환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직권에 의한 교습비 반환의 경우와 자율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는 기 결정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여 직권으로 반환해 줘야 하는 경우이고
- 다른 하나는 학원측과 수강자측의 사유로 교습을 중단해야 하는 자율결정에 의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질의한 바대로 직권에 의한 교습비 반환의 경우에 반환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우리 법에서 직접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서 결과적인 처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집행의 불편한 점은 이해되나 직접적으로 반환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1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처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 04. 12.

태글리쉬 (태권도 영어)의 불법 운영 여부

최근 태글리쉬 (태권도 + 영어)라고 하여 태권도를 직접 영어로 가르치는 학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별도의 영어회화를 별도로 강사를 두어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태권도의 동작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 기관은 아직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없고 광고만 하였을 때 무등록 운영 광고사항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항을 무료로 가르칠 경우 무등록 영어학원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와 태권도만 배우는 학생과 태권도 + 영어를 함께 배우는 학생을 차별하여 수강료를 별도로 받을 경우 영어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광고만 하고 아직 교습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등록학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기술한 것과 같이 태권도만 배우는 학생과 태권도와 영어를 함께 배우는 학생을 차별하여 수강료를 받은 이유만으로 무등록학원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학원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무등록학원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습과정과 관계없이 태권도만을 가르칠 경우 체육시설로 신고하면 될 것이나, 태권도를 매개로 하여 영어 (학원의 교습과정)를 교습하고 있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11. 25.

등록한 교습비보다 적게 징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 여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등 보다 낮게 또는 교재비 별도 징수 등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7호,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7의2호에 따라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행정처분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학원 등에서 교습비등을 높게 (변경) 등록한 후 학습자에게는 낮게 징수할 경우에는 실제 받는 금액으로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로 보아 등록말소 (교습소폐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제4호 ·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06. 15.

교습소 인수 시 이전 교습소의 행정처분 사항 승계 여부

피아노 교습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항으로 교습소의 교습자를 변경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교습소가 행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위 교습소가 타인에게 인도된 경우 (교습자 변경), 전 교습소 (교습자)의 행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새로운 교습소 (교습자)가 계속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교습소를 인계한 후 다른 장소에 개소할 경우, 전 행정처분이 새로운 교습소일지라도 동일 교습자에게는 계속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교습자 1인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폐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의 설립·폐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행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 교습소 운영과정에서 받은 처분은 당해 교습자 및 교습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권한을 가진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07. 10. 10.

개인과외 교습 중지 명령

개인과외 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생의 신분으로 되면 개인과외교습을 해도 되는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상 대학교의 재학생의 과외교습 행위는 동법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6. 21.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육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개인과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조강사를 고용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를 교과부 부조리 센터에 신고함에 있어 ① 성문법인 학원법 제2조3호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불문법인 대법원 판례 (2004도6717)에 따라 무등록학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③ 2008년 5월 27일 교과부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와 무등록학원 양쪽으로 모두다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범례 : A (주된 교습자), B (보조 교습자), 甲 (신고인)] A (수학과목)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했으나, 신고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B (영어과목)를 강사로 고용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하다, 신고인 甲의 제보에 의해 관할 교육청이 불법과외현장을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제 적용과 관련하여 ① 주된 교습자인 A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보조 교습자인 B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인 甲의 미신고개인과외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② 개별적으로 분리 판단하여, A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 개인과외가 아니나, B 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 개인과외에 해당되므로, B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인 甲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그리고 법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과 학원을 구별할 경우에 교습장소, 강사유무, 학습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동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신고 없이 과외교습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포상금제의 유형 중 미신고개인과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고 장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인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다 학파라치의 신고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2012. 02. 10.

개인과외 교습행위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서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남편은 수학과목을 아내는 영어과목을 각각 교습할 경우 이들 각각 개인과외신고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부부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개인과외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한 분도 학원법상의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인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과외 교습에 대하여 교육청의 신고를 필하고 교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등은 학원·교습소의 편법·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위 편법·불법성 유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교육청에서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4. 17.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채용 후 교습에 따른 조치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하게 한 경우, 해당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학원으로, 강사는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로 고발해야 하는지?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고 개인과외교습자는 9명 이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을 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과 학습자 수가 9명 이하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면, 학원법에서는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교습을 한다면 해당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학원설립운영자에 해당하여 고발을 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학습자 수가 9명 이하이면서 강사를 채용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는 학습자 수가 9명 이하이므로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미등록 학원설립운영자로 고발할 수 없고 시·도 조례에 의거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두 가지 경우의 해당 강사에 대하여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사용자이고 그 강사는 피용자이며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한 것이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고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17. 12.

제5장

법령 해석 및 판례

1. 법제처 법령해석
2. 행정심판 사례
3. 법원판례 사례

01 법제처 법령해석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제처09-0410,2010.2.5.]

【질의요지】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되는지?

[회 답]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정의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서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하면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를 정하면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분야를“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하고,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으로,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을 “기타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면서 제명이“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 시설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으로 타법 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구 사설강습소법”이라 함]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의 하나로“체육”을 포함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체육”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 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체육”이 삭제되었고, 체육시설법의 제정이유에서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체육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구 사설강습소법으로는 더 이상 해당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체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능 분야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및 무용만을 나열하고 체육은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예능과 동등한 지위의 분야로 규율되던 것인데 학원법령에서 별도의 분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해석상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에 체육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체육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교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한 학원법상의 등록의무 등의 규제 등을 가할 필요성이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체육”을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삭제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체육을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 학원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물의 용도) 관련

[법제처19-0162,2019.5.20.,국민권익위원회]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학원법령에서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독서실에 관해서는 학원법령과 건축법령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독서실은 학원법령과는 별개로 건축법령에 따른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독서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지 학원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독서실(타목)을 학원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학원(카목)[주석: 학원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과 달리 적용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독서실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7. 1. 5. 회신 16-0545 해석례 참조]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14-0210, 2014. 6. 17., 국토교통부]

***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용부분에 '위법건축물'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 설립 불가하고 전유부분에 '위법건축물'표시가 기재된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학원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준용하여 해석.**

【질의요지】

가.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나.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함. 이하 같음)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제2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가목),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할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 함) 중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조제1호나목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서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호나목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규정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 같은 조 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비교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전체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일 것을 요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일반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일반건축물의 일부만으로 구분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 중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함) 중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인이 한 채의 집합건축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의 경우 그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각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 부분별로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원칙이라 할 것(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3263 판결 참조)인바,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 부분별로 위반건축물인지 각각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전체가 당연히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이처럼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지 아니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공용부분에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결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각 전유부분을 포함한 전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3263 판결 참조)인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에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축물 전체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중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중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15-0260, 2015. 6. 23., 민원인]

【질의요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원격교습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학습자가 실제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경과 전이라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을 규정하면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관하여, 교습 시작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외의 부분 표에서는 교습비의 반환사유와 수강생의 교습기간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 형태의 학원의 경우에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격교습의 경우에는 일반 학원과 달리 수강생의 의사에 따라 교습기간과 무관하게 교습내용을 수강할 수 있고, 또 총 교습내용 중 실제 교습한 부분이 비교적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원격교습 학원의 교습비에 대해서는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비고 제2호는 원격교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15-0561, 2015. 11. 2., 민원인]

【질의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는 학원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등록 시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다른 학원이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소재한 건물에 들어오게 되고, 두 학원의 수용인원의 합이 300명 이상이 되자, 국민안전처에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국민안전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다중이용업 중 하나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학원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학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다중이용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두 경우 모두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호 가목은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이 단독으로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같은 호 나목(2)는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둘 이상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한 결과 그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 여부를 나누고 있을 뿐 각 학원들의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학원이 같은 목 (2)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운영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2)는 학원의 운영자가 동일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영업의 성격과 화재위험의 특성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법 제2조제1항제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2), 단지 그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 ·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16-0101, 2016. 5. 30., 교육부]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 · 미신고 교습 등 같은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미등록 · 미신고 교습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검사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교육부는 교육지원청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기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인지 아니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이에 대한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 · 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제2호),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제3호),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제4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는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1호),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2호),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3호),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제4호), 같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제5호),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6호)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검사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16조제6항에서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의 불법적인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 인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 포상금제도가 학원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의 단속에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의무와 지급시기를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체계와 포상금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신고인이 학원등의 불법교습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교육공무원 대신 같은 법 위반사항을 신고하였고, 교육감이 그것을 교육공무원의 단속결과와 동등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학원등을 단속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행위가 벌칙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참조), 신고 내용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그 정도 의심에 미치지 못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서는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신고행위가 곧 포상금 지급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지급사유별로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은 신고한 행위에 부과되는 벌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사유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인이 같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것은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이 부족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고발한 사안이 수사기관의 개별적·구체적인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이어지는 재판의 결과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신고행위가 무용한 것이 되어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산점을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특정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19-0584, 2020. 3. 20., 민원인]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 학원설립 · 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통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각주: 학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및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경우는 학원의 설립 · 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는 원칙(院則)의 특성상 원칙(院則)에 포함된 사항을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다시 적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직접 기재된 사항만 등록사항으로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원칙(院則)에는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도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제4호, 제5호 및 제7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준거가 되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 · 운영을 위해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칙(院則)의 변경은 학원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 · 운영자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학원 설립.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통보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 설비 등을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 ① (생 략)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 · 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 ⑥ (생 략)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 · 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 · 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질의작성 예시]

법령해석 요청서

1. 질의요지

외국인강사 채용 시 제출 받은 자국범죄 경력조회서에 절도 범죄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에 포함되는지? 또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말하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 「학원법」 제13조의2

학원설립 · 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이하 생략)

□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① (생략)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 · 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 (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법령 : 해당없음

3. 법령해석 요청 의뢰 이유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는 외국인 강사 채용 시 검증요건 및 기준으로 자국 범죄경력조회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회서에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 제출된 범죄경력조회서상 범죄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학생 학습환경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범죄경력의 구체적 내용을 불문하고 채용 등록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민원의 소지 또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항의 구체적 기준과 예시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4. 민원인 의뢰 여부

해당없음

02 행정심판 사례

☘ 행정심판사례 중 【이유】가 누락된 경우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판시사항】
"영어학원" 설립 · 운영등록 불가처분 취소청구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2007-7호 (2007. 3. 16.)

【재결요지】

청구인의 학원등록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건축물(연면적 1,650㎡ 미만)내에 유해업소(성인용 게임장)가 있고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건물 전체 연면적 합산에 대하여는 동 학원이 설립될 지번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건물 A동과 B동은 지번만 같을 뿐,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연면적 합산 시 A동(972.18㎡)과 B동(982.8㎡)은 각각 다른 건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학원 설립 및 운영등록 수리 불가의 원처분이 적법 · 정당하다고 기각한 재결사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1.4 청구인에게 "영어학원 등록신청"에 대하여 유해업소와 학원이 공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원등록신청 불가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 등록신청은 ○○시 ○○읍 ○○리 69-1번지 상에 A동 982.8㎡, B동 972.18㎡, 계 1,954.98㎡인 건물의 3층에 신청한 것으로 A, B동은 동일한 건축물로서 상기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적법한 시설이나, 학원 등록 수리 불가처분을 받은 것은 동일 건물의 정의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동일한 건축물이란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동일 번지 내에서 두 개의 건물은 용적율, 건폐율, 정화처리 등을 계산할 때도 동일한 건축물로 합산하여 적용받으며, 동일한 대지위에 건물을 붙여 지은 것과 따로 지은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시청에 동일건물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 회신 후 학원등록을 수리한다고 하였으나, 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뿐더러 정신적 충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건물의 정의에 대하여 건축법에 정확하게 있음에도 이를 해석함에 법과 정반대로 유추 해석하는 것은 재량행위의 일탈로 부당·위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동일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원등록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법에서는 신·증축건물 용도지정 시 오수정화조시설 등의 용량을 고려하여 용도를 지정하여야 함으로 동일 지번일 경우 동일 건물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축물내의 계단 소요개수 산정 시에는 지번 기준이 아닌 층별 연면적 기준으로 계단 설치 개수를 산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법에서는 통로에 의해 연결된 2동의 건물이 연결이 안 된 별개의 건물보다 화재시 불이 번질 우려가 높음으로, 이를 동일 건물로 간주하여 소방 안전시설 설치의 의무를 강화하여 화재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건축법의 동일건물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등)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함이 목적이므로 학원설립과 유해업소와의 공존범위 판단에 있어 건축법이 아닌 학원법의 교육환경 정화의 입법취지에 맞게 동일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3항에는 "당해 건축물 안에"라는 조항이 있는데, "당해"라는 의미는 관계되는 "바로 그"의 뜻으로 해당 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B동 건물과 A동 건물은 "당해"라는 단어로 연결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건물이므로 건물 연면적 산출시 A동과 B동은 별개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건물(계단2개소 설치됨)에 유해업소와 학원이 2층과 4층에 각각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건물은 연면적 1,650제곱미터미만이어서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학원을 인가해 줄 수 없다. 청구 장소 건물을 별동의 건물로 보았을 때는 각각 연면적 972.18제곱미터, 연면적 982.8제곱미터이지만, 이 행정심판 청구건의 사례와 같이 지번이 같은 별동의 건물을 동일 건물로 본다면, 위 두면적의 합계인 1,954.98㎡가 되어 1,65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됨으로 학원과 유해업소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인가를 해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번이 같은 별동의 건물을 동일 건물로 보았을 경우, 동일 지번에 연면적이 각각 2,000제곱미터가 넘는 A동, B동의 건물이 나란히 있고 두 건물의 간격이 3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고 가정 하였을 때, A동 5층의 가장 오른쪽 모퉁이에 유해업소가 있고 B동 5층의 가장 왼쪽에 학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간격이 같은 층에서 6미터

이상이 안 되므로 학원 설립이 불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강생들이 유해업소에 대한 근접성이 낮은 자체의 큰 건물 임에도 학원설립이 불가능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근접성이 높은 작은 건물은 오히려 학원 설립이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서 인가 시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다. 건물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공존할 경우 대부분 직통계단과 출입구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 수강생들은 유해업소를 피해 다른 계단과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청구 건에 관련된 해당 건물의 경우 연면적 972.18제곱미터의 작은 건물이므로 출입구 및 계단이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성인오락장이 1층 출입구 통로에 위치해 있고 학원은 3층에 위치해 있어 수강생들이 학원을 이용할 때는 성인오락장의 출입문이 있는 통로를 이용해야만 학원으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학원을 오고갈 때마다 성인오락장을 거쳐야만 하므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환경의 정화에 대한 규정은 미성년자를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최소한의 규제 조항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건축법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적용한다면 유해업소로부터 미성년 수강생의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학생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 "○○○"이 청구한 학원설립 불가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가.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69-1 외 1필지 B동 4층에 2006. 12. 26.자로 가칭 ○○○배움터시사영어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건축물(연면적 1,650㎡ 미만)내에 유해업소(성인용 게임장)가 있다는 이유로 2007. 1. 4.자로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 수리 불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7. 1. 17.자로 재차 동일 장소에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건축물(연면적 1,650㎡ 미만)내에 유해업소(성인용 게임장)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건물 전체 연면적 합산에 대하여 동 학원이 설립될 지번의 서로 떨어져 있는 건물 A동과 B동은 지번만 같을 뿐,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연면적 합산시 A동과 B동은 각각 다른 건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2007. 1. 24.자로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 수리 불가처분을 재차 하였다.

(다)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을 보면,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및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등)에서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학원의 수강생들이 대개 미성년자인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학습권 내지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해 한 건물내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한편 건축법 제3조의 4에서는 한 개의 지번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들은 같은 건물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건물의 용도별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예나 한계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취지와 같은 명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행정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 위와 같이 간주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별개의 건물을 한 동의 건물로 취급한다고 하거나 다른 법령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나, 만약 청구인의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여 학원설립 · 운영의 등록을 인정할 경우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행한 학원 설립업무에 있어 기 불가 처분을 받은 타인에게 중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유사사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건 즉, 심판 청구 건에 대하여 행한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 불가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학원설립 · 운영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66호, 2008. 11. 27., 기각

【재결요지】

객관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영업증거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5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과 사실상 합병을 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이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령한 것과, 임차건물 관리비를 ○○○이 납부하였다며 증거자료로 관련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객관적으로 합병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2개월 이상 무단휴원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학원등록말소처분은 「학원의 설립 · 운영등록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등록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재결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10.31.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설립요건 미비 및 2개월이상 무단휴원을 이유로 한 학원설립 운영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 당시 학원인가에 대하여 문의하고 구비서류제출 후 인가증을 발급 수령할 때 까지도 본 건물에서의 학원설립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교육청담당자는 답변하였으며 또한 그 답변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학원설립에 대한 업무를 마무리 하고 학원인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가증 발급후 교육청 재방문을 요구받아 대리인이 방문하였는데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니 변경해야 한다며 구청에 신청하면 가능하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각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여 각서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지 않고 날인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일건물에는 많은 학원이 운영 중이었고 또 같은 층에도 수개의 학원들이(○○○○○○ 미술학원, ○○○ ○○ 음악학원)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던 터라 인가증 발급 후 대리인이 날인한 각서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있었으나 6년이 지난 2008년 6월 갑자기 각서 이행을 촉구하고는 등록취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각서작성 이후 및 최근 등록말소 처분문제가 불거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시 ○○구청에 문의 해본 결과 본 건물이 있는 지역은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동일한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가에 학원설립을 인가해 주고는 그 책임을 본인은 회피하고 민원인들에게 미루려고 추후에 각서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학원설립인가 당시까지 발견치 못했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설립인가증 발급 후에 각서작성을 요구한 것이며, 이 각서를 이유로 이미 설립인가를 한 행정행위에 소급적용 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008년 6월 29일 각서이행촉구 공문 수령 후 교육청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설립인가 이후 작성된 각서를 이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후에 추가된 등록말소 이유로서 억지로 짜맞춘 내용일 뿐입니다.

나. ○○교육청에서는 2007년 1, 2월에 신용카드 매출이 없다는 것을 들어 무단휴원의 증거로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학원을 운영하던 중 외국에 자주 나가야 하는 처지인 현 설립자를 대리해 주던 설립자 언니 명의로 설립자를 변경시키기 위한 과정 중 기존설립자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고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해도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변경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현 설립자인 ○○○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는 과정 중 사업자 등록의 공백기간 동안 학원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납부 받아 신용카드 매출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2007년 1, 2월이 아니고 2008년 현재에도 소규모 학원 중에 학원비 납부를 현금으로만 받으며 신용카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납부 받아 신용카드 매출이 없는 것을 이유로 무단휴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짜맞춘 너무 큰 비약이며 이 또한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런 부당한 처사로 인해 12월에 시험을 앞두고 우리학원을 믿고 따라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게 될 피해 또한 저희 선생님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아픔입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학원인가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조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에 근거하여 유지 ·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학원의 인가 역시 건축물에 설정된 용도에 맞추어 인가함은 당연한 것일 것이며 이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그 목적과도 합치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록 행정청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이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는 사익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우월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인 · 허가)는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 져야함은 당연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이루어진 처분이더라도 그것이 실정법에 반한다면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올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이것을 단순히 행정청의 과실이라는 사유를 들어 묵인한다거나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실정법이 금지한 행위 또는 시설물 등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사회에서 통용되고 거래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사익을 비교 하였을 때 행정행위의 취소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가 사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할 것입니다.

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날인한 각서이므로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14조 제1항에서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인이 방문하여 날인한 것이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설립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따라서 인가 후 서명한 각서의 효력은 학원설립 · 운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각서의 내용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습니다.

다.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당 사안의 경우 불법의 물건(物件)이 유통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의 크기보다는 공익의 크기가 현저히 크다 할 것이며, 또한 당 사안의 경우 설립 당시 청구인이 당 인가를 정상적으로 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사안과 관련하여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사안을 올바로 잡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6년이라는 기간은 당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라. 무단휴원에 따른 학원등록 말소 처분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음을 사유한 등록말소 건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단휴원에 따른 학원등록 말소처분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 진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개월 이상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고 설립자 변경을 하려 했으나 우리교육청에서 운영자 변경신청을 거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7.02.13. 운영자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운영자 변경이 불가함을 고수하자 2007.03.07. 운영자변경 건을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007.01.01~2007.02.13.까지 학원인수인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 되나, 통상적으로 학원설립 · 운영자변경의 경우 학원의 운영 및 세무관계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학원설립 · 운영자변경이 완료되고 난 이후 인수자가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기간은 학원설립 · 운영자변경을 위한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학원설립 · 운영자변경은 학원의 폐원과 달리 학원의 운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설립 · 운영자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도 일상적인 절차의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카드단말기를 제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2월 이상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내의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리비 납입자는 전체 통지서중 입주자용만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경우 통지서 전체를 보관 중에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의 경우 관리비납입통지서는 수납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진정성에 심각한 수준의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석부의 경우 2008.05.16.현지 학원을 지도·점검하였을 때 뿐 아니라, 청구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8.08.20. 및 2008.09.03. 2회에 걸쳐 기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마. 본 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당해 학원의 2002년 이후 임금신고내역과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납부내역 자료를 송부 의뢰한 결과 회신자료를 통하여 2005년도부터는 임금신고 및 보험료 납부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2007.01.13.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폐업신고 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당 학원의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없는 기간과 일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기간 동안 관련자의 진술을 통하여 해당 학원이 동기간 동안 학원운영활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 설립자를 현 설립자에서 언니에게 명의변경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02.13. 해당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언니인 ○○○에게 이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에게 해당 학원을 인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사. 학원 설립 인가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하자는 당연 치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 하였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익의 크기가 현저히 크다 할 것이고, 2월 이상 무단 휴원에 따른 등록말소 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해당학원을 폐원시키기 위하여 행정청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해 학원이 2월 이상 무단 휴원을 했다는 여러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또한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론으로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한 "설립 요건 불비에 따른 학원등록 취소 처분 및 2월 이상 무단 휴원에 따른 학원등록말소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증거서류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구 ○○○ 2동 1047-3번지 ○○상가 2차 304호에서 현재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3.경 경기도 ○○시 ○○구 ○○○ 2동 1047-3번지 ○○상가 2차 304호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해당 건물에서 학원설립·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2.5.1. 청구인에게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한 후 2002.5.2. 청구인이 학원등록을 신청한 건축물은「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 의거 학원설립·운영등록이 불가한 근린생활시설(학원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경우에 가능)임을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건축물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할 것과 지정기간(3개월)내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8.6.29. 각서를 이행 하라는 촉구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학원설립·운영등록말소처분에 앞서 2차에 걸쳐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10.30. 학원설립요건 미비와 2개월 이상 무단휴원을 이유로 학원설립·운영등록말소처분 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은 2007.1.13.부터 세무서에 폐업신고 되었고, 2007.1월부터 2007.2.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강사의 임금신고 및 보험료 납부도 무단휴원기간으로 주장하는 2007.1.부터 2007.2. 기간은 물론 그 이전 상당기간 동안 임금신고 및 보험료납부가 안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무단휴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간은 사업자변경과정의 사업자등록증 말소기간이며 사실상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답변자료에 의하면 5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 2006년 12월경 ○○○에게 학원을 인계하는 과정 중 ○○○가 고등부에 대해서는 운영의사가 없다하여 거절함에 따라 고등부만 당시 등록학생이 적었던 3층의 ○○○보습학원과 합병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과 같이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서류로 임차건물 관리비 납입고지서, 건물관리소장의 관리비수령 확인서, ○○○ 명의의 학원비 수납통장 사본, ○○○ 명의로 관리비가 입금된 관리소장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 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6. 2. 25 판결 85 누 664)

(3) 설립요건 미비로 인한 학원설립·운영등록말소처분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부 이후 부담을 추가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 이러한 부관이 붙은 새로운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후부관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바, 청구인 대리인이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각서징구 행위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학원설립·운영등록말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의

경우 그 등록 말소권한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적 지출 등을 하게 한 후에 무려 6년이나 지난 2008.10.31.에서야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2개월 이상 무단휴원으로 인한 학원설립·운영등록말소처분 건은 2개월이상 사업자등록 공백이 발생한 것은 양자 간 다툼이 없으나, 무단휴원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반되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무단휴원으로 주장하는 기간에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이 없다는 점과, 무단휴원으로 주장하는 기간과 그 이전 상당기간 동안 학원강사의 임금신고 및 보험료 납부내역 역시 없는 점을 근거로 무단휴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사업자 폐업신고는 학원설립운영자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고, 그 기간에도 학원운영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영업증거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5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과 사실상 합병을 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이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령한 것과, 임차건물 관리비를 ○○○이 납부하였다며 증거자료로 관련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객관적으로 합병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인이 사실상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개월 이상 무단휴원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학원등록말소처분은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학원설립·운영등록말소처분의 이유가 학원설립요건 미비와 2개월 이상 무단휴원인바, 이 두 가지 이유는 각 각 독립하여도 학원설립운영등록 말소처분의 이유가 되므로 비록 학원설립요건 미비로 인한 말소처분은 위법하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 무단휴원을 이유로 한 말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시사항】
교습소 직권폐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5, 2011. 6. 9., 인용

【재결요지】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는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신고한 과목 이외 과목의 교습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신고외 교습과목 교습의 경우 정지처분으로 처분기준에 정해져 있으며, 구조변경의 경우 청구인은 교습소를 설립하고 수년간 당초 신고한 구조를 유지한 채 교습소를 운영해 왔고 교습소를 신고한 시점에서 상당기간 이후에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교습소를 학원의 형태로 불법 운영할 목적으로 '허위 · 기타 부정신고' 하였다고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오히려 각 교습소간 면적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설 임의 확장 운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위법사항은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직권폐지가 아닌 다른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법 사항을 제재 · 시정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피청구인의 교습소를 직권폐지한 처분은 상당히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의 교습소 모두를 직권폐지 하게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건 처분에 있어 처분기준 적용의 불명확성과 공익과 사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 · 교량해 보건데 비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3. 4.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습소 직권폐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3. 4.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습소 직권폐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심○○는 경기도 ○○○시 ○○동 471번지 ○○아파트상가 206호에 ○○○○영어교습소를 운영 해오던 중 2011. 1. 27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시 교습소 불법구조 변경 및 신고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교습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교습소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교습소 직권폐지 처분(기간 : 2011. 3. 4 ~ 2012. 3. 3)을 하였다. - 이하 생략 -

【판시사항】

신고포상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1-1, 2012. 2. 13., 기각

【재결요지】

학원법 제1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미신고 교습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신고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교실에서의 교습행위는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것이며, 사건 교실을 미신고 교습소라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은 신고포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6. 청구인에게 한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28. 강원읍 ○○리 71-18 건물에서 운영중인 ○○○교실에 대하여 신고되지 않은 불법 교습소라며 피청구인에게 전화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 11. 3. 위와 같이 신고한 ○○○교실은 미신고 교습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1. 8. 청구인이 신고한 교실은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고포상금 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신고포상금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11. 12.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하 생략 -

【판시사항】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1, 2012. 2. 1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청구인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특정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점과 신고인은 청구인이 무고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은 관할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로 불법 교습소 운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09.07. 현지 확인을 받았으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 소송 제기를 위하여 2011.12.06. 청구인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12.16.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원 파파라치, 민원인 등의 과도하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피민원인의 손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구인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한 것이고, 소송제기에 필요한 민원인 신상정보 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을 신고한 민원인(이하‘신고자’라 한다)을 무고혐의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민사 소송제기를 위하여 신고인의 송달가능 주소, 성명, 연락처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개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자(신고인)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비공개 요청이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하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29조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12.06. 피청구인에게 신고인에 대한 정보(성명, 송달 가능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12.16. 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고양경찰서는 청구인이 신고인을 형사 고발한 사건(2011형제23982호)에 대하여 2011.11.21. 무혐의로 송치종결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정보의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닌 관계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되,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포함한 개인적인 권리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라 할 수 있고, 이 건 정보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신고인은 청구인이 무고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상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며,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400184 재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시사항】

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5, 2012. 3. 26., 기각

【재결요지】

1.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개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와 구분을 두고 있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2. 또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8989호] 하여 개인과외교습 관련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사회 ·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지도 ·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위법함이 있다거나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그 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과외교습중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은 경기도 ○○시 ○○읍 ○○리 ○○마을○단지 ○○○아파트 201동 902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민원접수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12. 30. 이를 확인하여 2012. 2. 13. 청구인에게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이 위법 · 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머니 병원 진료를 위해 개인과외교습장소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대학교 동기생인 이○○에게 잠시 집을 봐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청구인은 이○○을 강사로 채용하지 않았으며, 이○○은 실질적인 교습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근거로 제시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는 강사채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될 수 없으며,「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행정처분 기준에 양형기준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강사채용으로 인한 개인과외교습중지'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며, 설령 시행규칙 또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않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최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접수에 따라 현지확인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강사에게 2011년 10월부터 일주일에 2회 정도 교습한 것에 대한 사례로 월 20~3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 있고,「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동일 사안으로 교습소의 강사 채용시 폐지 기준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1-800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신설된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준에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채용시 행정처분(개인과외중지명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제17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이○○은 개인과외습자로 2011.02.25. 경기도 ○○시 ○○읍 ○○리 ○○마을○단지 ○○○ 아파트 201동 902호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1.12.26. 강사채용을 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2011.12.30. 이 사건 개인과외교습장소를 현지 확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2012.02.13.부터 1년간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현지확인 당시 현장에 있던 피청구인의 동기생 이○○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2012.01.06.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미신고 개인교습행위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통보받았다.

(2) 먼저 청구인이 어머니 병원진료를 위해 집을 종종 비워 어린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동기생 이○○이 잠시 와서 집을 봐준 사실이 있으나 교습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행정청이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자로부터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허위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은 2011.12.30. 이 사건 교습장소를 방문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으로부터‘2011년 10월부터 이○○이 일주일에 2회 정도 교습을 하고 월 20~30만원씩 사례하였다.’라는 자필 확인서를 받은 바,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의 어린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서 잠시 왔었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당 교습장소가 보육 및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이○○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습장소에 6대의 피아노를 설치하고 전체 37명의 수강생의 교습을 하고 있는 시설 규모를 볼 때 해당 교습장소가 주거의 목적보다는 교습만을 위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강사 채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에 대한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개인이 과외교습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와 구분을 두고 있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그 행위가 가볍다 할 수 없다. 또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8989호]하여 개인과외교습 관련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지도 ·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위법함이 있다거나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그 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강사채용으로 인한 개인과외교습중지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부산지법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내용(부산지법 2011. 9. 7. 2011구단390 판결)을 살펴보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1년간 개인과외교습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1년 이내 특정기간의 교습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산 해운대교육청에서 한 교습정지 30일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에 명시된 1년간 개인과외교습중지를 함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시사항】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100만원 처분 취소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조정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로 늘린 월 교습시간에 피청구인의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곱하여 산출한 교습비를 학습자들로부터 징수청구인의 경고와 벌점30점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100만원 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경고와 벌점30점 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0. 청구인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2012. 3. 23.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준수한 교습비를 신고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2012. 3. 28. 청구인은 교습비 개별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2. 7. 13. 교습비등 조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교습비등 조정명령 이행여부 특별지도·점검 계획(지역사회협력과-3314)'에 따라 2012.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조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초등 39천원, 중등 69천원, 고등 80천원을 초과징수(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2012. 12. 2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경고와 벌점 30점 및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하 생략 -

03 법원판례 사례

☘ 판례 【전문】 및 【참조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판시사항】

[1]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학원이 그 교습내용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관할 교육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자신의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1465, 판결 : 상고

【판결요지】

[1]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학원은 그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의 전달, 기능이나 예능의 습득이 아닌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인정되므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삭제, 현행 제3조의2 참조) 각 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관할 교육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자신의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삭제, 현행 제3조의2 참조), 별표1

[2] 형법 제16조

【판시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 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 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갑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갑 회사에 대하여 행한 14일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2542 판결

【판결요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강료 등은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교육장은 학원운영자 등이 통보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그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은 학원운영자 등이 '이미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정명령 이후 학원운영자 등이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까지 그 조정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학원운영자 등이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의 수강료 등을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학원운영자 등은 종전의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갑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갑 회사에 대하여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장의 개별조정명령이 발령된 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후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금액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갑 회사가 조정명령을 2차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이하'학원운영자 등'이라고 한다)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2항은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학원운영자 등은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은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교육감은 학원이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제7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9호)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학원법 제21조 제1항, 학원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교육감은 학원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수강료 등 조정명령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7. 8. 28. 원고를 포함한 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운영자들로 구성된 강남교육청 학원운영협의회 회장에게 수강료 등을 일률적으로 전년 대비 8% 인상하겠다는 내용(이하 위와 같이 인상된 금액을 '종전 결정액'이라고 한다)을 알린 사실, 그러자 위 협의회장은 2007. 11. 5. 피고에게 종전 결정액을 추가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07. 12. 20.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한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하여 종전 결정액에서 4.9%를 다시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07. 12. 28. 이 사건 학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08. 2. 28. 실시한 학원 특별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로 적발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명령에 따라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수강료통보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08. 11. 13.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수강료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게 학원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사항을'수강료 초과징수 2차(100% 이상) : 40점'으로 한 14일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학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2009. 7. 16. 교육규칙 제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별표 4]는 위반사항 중 '수강료 초과징수'와 '관계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행정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을 처분사유로 삼았고, 또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의 위 [별표 4] 중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벌점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표시·게시한 수강료 등 초과징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강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스스로 정하여 표시·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위반, 즉 이 사건 조정명령 미이행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다가 피고에 의해 두 차례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것인 점, 원고가 스스로 표시·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가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이유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의 위 [별표 4] 중 '수강료' 관련 위반사항 중에는 '수강료 등 조정명령 미이행' 위반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사항의 위반내용 설명 부분에는 '적정수강료 기준 초과징수'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수강료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 초과징수'가 아닌 '이 사건 조정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사유를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학원법 제15조 제2항, 제4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강료 등은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교육장은 학원운영자 등이 통보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그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학원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은 학원운영자 등이 '이미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정명령 이후 학원운영자 등이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까지 그 조정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학원운영자 등이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종전의 수강료 등을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학원운영자 등은 종전의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명령이 발령된 후인 2008. 10. 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명령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그 이후인 2008. 11. 13. 피고의 특별조사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금액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정명령을 '2차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정명령 미이행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2008. 11. 13. 피고의 특별조사 당시 2차로 이 사건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원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9013, 판결

【판결요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2조의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판결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와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2011. 10. 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 7. 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공2001상, 80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공2008하, 1264)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4. 9. 18. 선고 2014노1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院則)'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의3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제1항),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2]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원법 및 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같은 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하였으며,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의 6개 분야로 나누고 그중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을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구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 7. 25.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면서, 개정 전의 교습대상이었던 유아[(가)목]와 장애인[(나)목]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목]라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참조)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정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을 단순히 "그 밖의 교습과정"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2011. 10. 25. 개정됨으로써, 위 학원법 제2조의2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교습과정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학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한 취지는 학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위와 같은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들에 대하여 교습과정·내용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학원법상의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 7. 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

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 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이 사건 서당에서 관할 교육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등학생·중학생 수강생 22명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과 숙제지도 및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을 교습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당에서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가르쳐왔고 한자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한자 자체의 습득이라는 교습과정이 아니라 인성 및 예절교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당에서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등은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학생들의 부모들이 지급한 수강료는 교습과정과 학업성적향상의 대가라기보다는 숙식과 인성교육의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2011. 7. 25. 개정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중국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이나 명구, 유교사상에 기초한 도의관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교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당은 2011. 7. 25.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게 되어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5. 이후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법에서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학원법의 개정 취지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과정 및 등록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위 2011. 7. 25. 이후의 학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위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판결요지】

[1]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는 학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습 대상과 내용, 교습 시설의 설립·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5조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학원의 교육환경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유해업소[원칙적으로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의 혼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구 학교보건법 등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댄스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고, 학원법상 학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댄스 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

[2]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5조, 제6조 제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삭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4. 선고 2013누4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1 내지 11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무용) 또는 학교교과교습학원(댄스스포츠)으로 하여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의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 1 내지 4(이하 '피고 교육장들'이라 한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 5, 6, 7(이하 '피고 구청장들'이라 한다)은 원고 12 내지 20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위락시설(무도학원)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과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육장들은 상고이유로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이 추가되었으므로, 댄스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 규율되어야 할 뿐이고 학원법상 학원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구청장들은 상고이유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무도학원을 위락시설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무도학원을 위락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것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을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피고 교육장들의 상고이유)

가. (1) 학원법은 학원의 개념, 종류와 종류별 교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뜻한다(제2조 제1호).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된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제2조의2 제1항 제1호)을 가리킨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같은 항 제2호)을 가리킨다.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는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무용'을 규정하는 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댄스'를 열거하면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에서 운영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학교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6)은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을 전문교과의 하나로 편제하고 '무용' 등과 함께 '댄스스포츠'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 도블레, 자이브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말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에서 규율하는 학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 1 내지 11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무용)' 또는 '학교교과교습학원(댄스스포츠)'으로 하고, 교습과정을 '무용(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또는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교육장들이 학원법상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의 요건을 심사하지도 않은 채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을 들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은 비록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갖추고 이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학원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결 이유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학원법상 학원등록 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 교육장들은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을 한 근거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원고들이 등록 신청한 학교교과교습학원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유로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평생직업교육학원에 관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과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법상 학원의 관계(피고 구청장들의 상고이유)

가.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등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건축허가 요건을 따로 정함과 아울러 용도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은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인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②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의 일종인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③ '무도학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무도학원'은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및 카지노영업소와 함께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규율 대상인 풍속영업의 범위에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무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위락시설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시설에도 해당한다.

건축법은 학원과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용도를 고려하여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학원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학원과 무도학원은 건축물에서 나오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비 등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건축법은 무도학원만을 건축허가 요건이나 용도변경이 더 엄격한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은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물 자체의 안전이나 기능 등의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시설의 규모·구조, 위락 기능의 다과, 이용 형태와 이용자의 수 등에서 무도학원과 위락시설에 속하는 다른 건축물 사이에 유사성이 크지 않다.

위에서 본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습 대상과 내용, 교습 시설의 설립·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원법 제5조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학원의 교육환경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유해업소(원칙적으로 구 학교보건법에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의 혼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은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 구 학교보건법 등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댄스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고, 학원법상 학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댄스 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댄스스포츠학원들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 또는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그 규모나 시설 등에 비추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그 설립·운영자들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교육장들이 잘못된 전제에서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댄스스포츠학원들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 또는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료로 무도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더라도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은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사교댄스인 '지터벅'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학원을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인 반면, 이 사건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 또는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것이어서, 두 사건의 사안이 다름을 밝혀둔다).

그러므로 원심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의 의미를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으로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댄스스포츠학원들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학원업무편람

감 수

김은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총 괄

한윤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학원공익법인담당 사무관

기획·편집

성유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주무관
김종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주무관
김욱진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주무관
박새미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주무관
최한성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주무관
김정길 경기도 늘푸른중학교 행정실장
유현영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팀장
이재덕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팀장
장재진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팀장
박준형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주무관
박상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주무관
김용환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주무관
김현경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무관
곽인경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주무관
이산하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주무관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학원 업무 편람

2024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